^{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차 례]

1장 2012년 개정세법 3

2장 개인기업 결산

01.수동결산-12월31일 일반전표입력 32 02.자동결산-1월에서 12월, 결산자료입력 36 03.제조원가명세서 40 04.손익계산서 40 05.재무상태표 41 06.결산부속명세서 41 07.현금예금조정 41 08.영수증수취명세서 및 송금명세서 43

3장 개인조정

01.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46 02.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47 03. 기초정보관리 49 04.표준재무제표 52 05.수입금액조정 54 06.감가상각비조정 59 07.과목별세무조정 64 08.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계산 77 09.종합소득세신고서 85 10.간편장부/기준경비율 99 11.성실신고확인제도 103 12. 전자신고 112 13.미등록사업자의 신고 114 14.공동사업자의 신고서작성 115 15.타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117 16.최저한세 118 기타-1.원클릭택스 사용법 122



1장 2012년 개정세법

I.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가. 개정취지

전세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를 3년
 간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세보증금 과세	
○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 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주택 중 기 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 시 제외('13.12.31.까지 한시 적용)
○ (과세방법) 3억원 초과분 60%의 이 자 상당액 과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0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가. 개정취지

-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소득 대상 추가)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 어업 : 어로어업(연근해 · 내수면 어업, 원양어업), 양식어업(현재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농가부업 가축 규모) 한.미 FTA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감안, 소.젖소, 돼지의 공 제 두수를 확대
-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금액) 현행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200만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비과세 범위 확대
 > 농가부업소득 범위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 산·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 래의 소득 	 ○ 어업소득 추가 - 축산·양어 등 → 어로어업(연근 해·내수면 어업) 추가
○ 부업 가축 규모 - 소·젖소 30마리 - 돼지 500마리	○ 부업 가축규모 확대 - 소·젖소 30 → 50마리 - 돼지 500 → 700마리
○ 부업 소득금액 - 부업 가축 규모 이외의 소득으로서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	○ 부업 소득금액 인상 - 연 1,800 → 연 2,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3 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을 7.5억원으로 일원화
-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 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 서비스업)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30억 원	○ (좌 동) ○ (좌 동)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업, 금융보험업 등 :15억원	○ (좌 동)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 : 7.5억원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기준금액은 7.5 억원으로 일원화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통관업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 1. 1.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0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 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 법정기부금 : 3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5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 조정 (소득세법 제65조제2항)

가. 개정취지

 중간예납 분할납부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09년 개정)됨에 따라 중간예납 분할 납부 세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급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15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고지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신고납부 기한 조정

(소득세법 제7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월 중간에 도래하여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 될 우려가 있고,
 - ·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신고기한으로 하고 있으므로('08년 개정^{*}) 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이에 맞추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2012. 1. 1.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





가. 개정취지

 결손금 소급공제로 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나중에 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밝 혀진 경우 관련 추징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발생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추징(환급세액과 이자 상당액)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 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신 설>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08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4항)

가. 개정취지

 면세사업자처럼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1년에 한번 사업용계좌 변경.추가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나업용계좌 변경·추가신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연간 2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만 신고 - 과·면세사업자 구분 없이 연간 1회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고 (연간 1회)	로 통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9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및 발급기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의 자진발급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진발급을 유도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좌 동)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 <신 설>	 의무 발급 대상 이외의 현금 거래*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발급 가능 * 전문직사업자, 예식장·장례식장 등 의무 발급 업종: 30만원 미만 거래 * 의무 발급 업종 이외의 업종:모든 현금 거래
 사업자는 거래 당일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함 	□ 발급기한 연장(거래 당일→5일 이 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가. 개정취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회를 확대하고 과표양성화 효과 증대를 위하여 신고기 한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신고기한	□ 신고기한 연장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 특정 국외지역 지출,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에 대해서

는 적격증빙서류 수취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만원 초과 접대비(경조사비 20만원) 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필요 경비 산입 	
 특정 국외지역 지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좌 동)
<신 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추가 - 송금명세서 제출 의무 부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가. 개정취지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될 경우

-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로 보는 예규, 심판 결정 등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 등 양도·대여 관련 기타소득: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좌 동)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상여금 등):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좌 동)
<신 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
○ 그 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소득세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
 설

나. 개정내용

	<u>柔</u>	전		개 정	
□ '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	간 신설	
	쾨세포즈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과제표군	'11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좌동)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33%	3억원 초과	38%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Ⅱ.소득세법(원천세분야)

01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

가. 개정취지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2012년부터 35% → 33%) 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방안 환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12년부터)			공제율 축소 환원		
	총 급 여	공제 율		총 급 여	공제 율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4,500만원 초과	5%
	8,000~10,000만원 이하('12년부터)	3%			
	10,000만원 초과('12년부터)	1%			
				공제한도 축소 환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0	(좌 동)		
○ 공제한도 : 50만원 * 공제율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종 전			7]]	
- 공제한도 축소('12년부터)		- <삭	제>	
총 급 여	공제율			
8,000만원 이하	50만원			
8,000~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10,000만원 이하	10만원			
10,000만원 초과	0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활동비 비과세	□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 담요원 	- (좌 동)
<추 가>	-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의 연구전담요원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연구전 담요원 등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적용대상 확대
 적용요건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무주택자인 근로자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 5천만원 - <삭 제> - (좌 동) - (좌 동)
 공제금액: 월세 지급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1. 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 또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
 용



04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 월 150만원 	□ 비과세한도 확대 ○ 월 150만원 → 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M=4=12

05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가. 개정취지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 성을 제고하되

-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학자격' 요건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 적용대상 확대
 대상자:「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학생, 외국에서 자녀와 1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 공제한도: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국내와 동일) 	 대상자 고등학생·대학생:유학자격 요건 삭제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현행 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 자에 한함
 대상기관 : 우리나라「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 혜대상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요건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 (적용대상)	□ 적용요건 추가 ○ (적용대상)
- (급여) 철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급여) 직전년도 종급여가 2,000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인 자
 -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공장·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등 	- (좌 동)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 이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차등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이상 : 연 1,500만원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이상 연 1,500만원 1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 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 단,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2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 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연 500만원 : 기타 대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2. 1. 1. 이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분
 부터 적용



08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2조)

가. 개정취지

○ 장애아동 재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대상기관 확대
○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등 <추 가>	 대상기관 (좌 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 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동법 시행('12.8.5.)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포함
- 공제한도 : 없음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9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소득세법 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어
 - 실질상 이자.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해 과세를 회피하는 신종 금융상품의 과
 세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과세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결합:이자소 득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결합:배당소 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가. 개정취지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므로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적용대상 : 채권등 이자·할인액을 지급 받는 경우 등 	○ (좌 동)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포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이 포 함됨을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가. 개정취지

 이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의 범위	□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 명예퇴직수당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국민연금 중 일시금 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 ①~⑤와 유사한 일시금 	①~⑥(좌 동)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①~⑥)의 합계 <단서 신설>	 (좌 동)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임원의 범위 : 법령 §20 ①4 준용



종 전	개 정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의 범위 퇴직소득금액 - '11. 12. 31. 중간정산해당액 임원퇴직소득 한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3 * 퇴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12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2002년「건설근로자고용법」 제17조가 삭제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정비

 * 건설 일용근로자가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부금을 퇴직금으로 보는 규정 삭제 → 사업주는 공제부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상용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원칙]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근 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소득세 비과세	(좌 동)
[특례] 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 시 해당 사업주가 부담한 공제부금 은 퇴직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과세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문정리 사항



1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8항)

가. 개정취지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와 통합하여 과세이연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 과를 달성하고, 제출서식도 간소화

*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기재사항은 동일한 내용이 많아 통합 관리함이 효율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소령 §203⑧)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 삭제
 ○ 퇴직소득 환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내역을 제출 * 미제출가산세 ⇒ 없음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에
□ 퇴직소득지급명세서(소법 §164 ①)	통합
 퇴직소득 지급자는 다음해 3.1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 = 2%(지연제출 1%) × 미제출·불명분 지급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가. 개정취지

○ IRA계좌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절차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 퇴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퇴직자가 IRA계좌 개설 후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 	
○ <신 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는 국세청에 환급 신청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 2. 2.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2장. 개인기업 결산

수동결산(일반전표)->자동결산(결산자료입력)->제조원가명세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1. 실제 매출과 장부상의 매출회계처리 확인

매출액이 매출환입 및 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차감한 순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야 하며 연중의 회계처리 내용중에서 실제매출과 장부상의 매출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매출의 확인은 일반적으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에 반영된다.

2. 재무상태표일 시점의 실물자산과 장부상 내용을 비교확인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은 계정과목별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의 내용과 장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고속의 현금을 확인하고, 예금이 나 단기금융상품은 통장잔액이 장부상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마이너스통 장을 잘 확인한다.

3. 현금과부족 정리

(1) 실재(금고) 현금잔액 < 장부(현금출납장)상 현금잔액
 장부상 현금잔액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나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현금과부족을 잡손실로 대체한다.

기중분개	(차)현금과부족 ×××	(대)현금 ×××
12월 31일	(차)잡손실 ×××	(대)현금과부족 ×××

(2) 실재(금고) 현금잔액 > 장부(현금출납장)상 현금잔액 장부상 현금잔액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은 경우로 결산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과부족을 잡이익으로 대체한다.

기중분개 (차)현금 × × × (대)현금과부족 × × × 12월 31일 (차)현금과부족 × × × (대)잡이익 × × ×

4. 미사용 소모품의 계상

(1)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소모품의 구입시에 비용인 소모품비계정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미사용 잔액을 자산 계정인 소모품계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A12 42 2

[사례1]

- ①소모품 500,000원 현금 구입시
 (차) 소모품비 500,000원
 (대) 현 금 500,000원
- ②기말 소모품 재고액이 200,000원 인 경우
 (차) 소모품 200,000원 (대) 소모품비 200,000원

(2)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소모품의 구입시에 소모품계정인 자산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사용액을 비용 계정인 소모품비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사례2]

- 소모품 500,000원 현금 구입시
 (차) 소모품 500,000원
 (대) 현 금 500,000원
- ②기말 소모품 재고액이 200,000원 인 경우
 (차) 소모품비 300,000원 (대) 소모품 300,000원

5. 단기매매증권 취득분개 및 평가

(1)취득시 취득부대비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한다.
 (차)단기매매증권(취득원가)
 (대)현금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부대비용
 (2)상승시의 회계처리(공정가액>취득원가)

(차)단기매매증권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또는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3)하락시의 회계처리(공정가액<취득원가)

(차)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또는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대)단기매매증권

6. 재고자산의 감모 및 평가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등은 재고자산수불부를 통하여 기초의 금액과 입고, 출고 된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의 기말잔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 에서 원가계산이나 매출원가대체의 분개가 함께 발생한다.

(1)(상품재고액 > 실제재고액)

(차)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 × × × (대)상 품(8.타계정대체) × × ×

(2)(취득원가 > 시가(순실현가치))

(차)재고자산평가손실(또는 매출원가) × × × (대)상품평가충당금 × × 960.재고자산평가손실, 구분 : 4.평가손실, 관계 : 146(상품) 173.상품평가충당금, 구분 : 6.평가충당금, 관계 : 146(상품) 173번.사용자설정계정과목을 이름바꿔 사용





7. 당좌차월 처리

(1)2/1 상품	500,000원을	매입하고,	수표발항	! 지급/	시(당	· 좌예	금잔액	300,000원	길)
(차) 상	품	500,000원	(대)	당 좌	예	금	300,00	0원	
				당 좌	차	월	200,00	0원	
(2)3/2 현금 (차) 당 조	100,000원을 해 차 월	당좌예입시 100,000원	(대)	현		П	100,0	00원	
(3)12/31 결신	·····································				- I		000 00	0.01	
(사)영좌	사결 2	JU,UUU권	(LH)	ゴ기사업	김금		200,00	∪セ	

8. 유동성대체

유동성장기부채의 계정이 재무상태표일 현재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차)장기차입금 (대)유동성장기부채

9. 비용의 이연(선급비용)

이미 지급한 비용 중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해당 비용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차감하고, 자 산계정인 선급비용계정 차변에 기입하여 차기로 이연한다.

[사례]

당기 7월 1일에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고 1년분 보험료 24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차) 보험료 240,000원
 (대) 현 금 240,000원

결산일(12/31)자 수정전잔액시산표에는 보험료가 240,000원으로 계상된다. 보험기간은 당기 7월 1일부터 다음년도 6월 30일인데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2011년에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비용의 과대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가 필요하다.(차) 선급비용 120,000원 (대) 보험료 120,000원

10. 수익의 이연(선수수익)

당기에 받은 수익 중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해당 수익계정 차변에 기입하여 차감하고, 부채 계정인 선수수익계정 대변에 기입하여 차기로 이연한다.





[사례]

당기 10월 1일에 임대계약을 맺고 1년분 임대료 600,000원을 미리 받았다.

(차) 현 금 600,000원 (대) 임대료 600,000원

결산일(12/31)자 수정전잔액시산표에는 임대료수익 600,000원이 계상된다. 이 중 450,000원(=600,000*9/12)은 차기의 수익으로서 다음 연도에 인식해야 한다.

	당기수익		선수액	
	150,000문	2	450,000원	
┣				
10월	1일	12월 31일	9월	30일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가 필요하다.(차) 임대료 450,000원 (대) 선수수익 450,000원

11. 비용의 예상(미지급비용)

당기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기일미도래분 해당 비용계정 차변에 기입하여 가산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비용계정으로 처리한다.

[사례]

12월 1일에 만기가 6 개월, 연 이자율 6%의 이자후급지급조건으로 10,000,000원을 신한은 행에서 차입하였다. 결산일(12/31) 현재 발생한 이자비용은

결산일(12/31)에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차)이자비용 50.000원 (대)미지급비용 50.000원

12. 수익의 예상(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으로서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은 해당 수익계정 대변에 기입하여 가산하고, 자산계정인 미수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미수수익은 미지급비용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1.감가상각비

고정자산등록(반드시 연말결산으로 재계산)을 한 비유동자산항목을 불러오기 하여 자동월할 계산 반영한다.

[자동계산, F7, 감가상각]

고 1 기 전 과 목 2 · ·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	F				
2202000 건물 판관 5,250,000 5,250,000 5,250,000 20,765,500 20,760,760,760,760,76	코드	계정과목명	경비구분	고정자산등록 갑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X(조회기간월 수/내용월수)	결산반영금액
2120500 김계찰치 제조 20,765,500,765,500 20,765,500 20,765,500 20,765,500 20,765,5	002020	건물	판관	5,250,000	5,250,000	5,250,000
감가상각비(제조)할게 20,765.500 20,765.500 20,765.500 20,765.500 20,765.500 20,765.500 20,765.500 20,765.500 20,765.500 5,250,0000 5,25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0000	20600	기계장치	제조	20,765,500	20,765,500	20,765,500
감가상각비(판관)함계 5,250,000 5,250,000 5,250,000		감가상각비(제	비조)합계	20,765,500	20,765,500	20,765,500
		감가상각비(표	판관)합계	5,250,000	5,250,000	5,250,000
			1			
Consider and the second s					I management I was	and I are the

2. 대손충당금(보충법)설정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채권잔액을 조회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매출채권잔액 × 대손예상률) - 대손충당금잔액 = (+)상각, (-)환입

상각분 → 결산자료입력란에 입력 (차)대손상각비(매출채권) (대)대손충당금 기타의대손상각비(기타의 채권)

환입분 → 일반전표입력에서 수동결산 (차)대손충당금 (차)대손충당금환입(판) -

[자동계산 F8, 대손상각]

24	山空道(な)	1,00					
-		7.04		설정전 충당금	잔맥	추기(서저애(겨시바여)	
12.5-	계상파폭명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	[(금액자대손물)-실칭원통랑금잔액]	주렴
0108	외상매출금	246,735,892	0109	대손총당금	832,652	1,634,707	판관
0110	받을어음	166,505,000	0111	대손충당금	500,000	1,165,050	판관
0246	부도어음과수표	1,320,000	0247	대손충당금			판관
0114	단기대여금	60,500,000	0115	대손충당금			영업외
0120	미수금	40,150,000	0121	대손충당금			영업외
0131	선급금	43,761,716	0132	대손충당금			영업외
	대손상각비 합계	10				2,799,757	관관

대손상각을 클릭하여 대손율을 입력후 자동반영이 가능하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도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분개를 할 수 있다. 퇴직급여(설정액) = 퇴직급여 추계액 - 설정전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계액은 당기말에 전임직원이 퇴사시 지급되어야 될 퇴직금의 합계이다.

근로의 제공은 회사의 수익창출에 간접적인 공헌을 한다. 따라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기간경과에 따른 퇴직금증 가분을 매 회계연도에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이 퇴직급여충당부 채와 퇴직급여이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대표자에 대한 퇴직급여설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정과목	계	정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	 → 장래의 퇴직시에 지급해야 할 의무
퇴직급여	비용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

[자동계산 CTRL+ F8, 퇴직충당]

			설정전 잔액		초기서 꺼애(거시비여)	122		
15	계정과목명	퇴직급여주계액	기초금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잔액	· (퇴직급여추계액-설정전잔액)	유형
0508	퇴직급여	140,000,000	120,000,000			120,000,000	20,000,000	제조
)806	퇴직급여	60,500,000	50,000,000		1	50,000,000	10,500,000	판관
_								
		_						

퇴직충당을 클릭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입력한후 자동으로 결산에 반영가능하다.

4. 원가계산(당기제품제조원가)

기업실무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원가계산과정을 통하여 재공품과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 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비용 - 기말재공품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는 감모손실을 반영한후 다음 **재고실사액**을 입력한다. 기말원재료 실사액입력 기말재공품 실사액입력 기말제품, 상품 실사액입력



[결산자료입력 화면]

설정 · 종료 F1 · 간 201 코드 · · · · · · · · · · · · · · · · · · ·	도움 F2 코드 F3 전표추가 F4 원가서 1 년 이 및 월 ~ 2011 년 12 및 월 과 목 매출약	철정 (1997) 결산분개삭제 (186) 전 자동 결산분 개 원로 결산분개금법	관액조회 F7 감가상각	다 〒8 대손상각 ●F8 Ctri	메뉴텝 실행메뉴 스] 퇴직충당 [F9] 인쇄 [F12
· 종료 F1 기 간 201 코드 0404 가 2.	도움 F2 코드 F3 전표추가 F4 원가 1년 DT 및 월~2011년 12 및 월 과 목 매출액	철정 · 한 결산분개식제 F6 전 자동 결산분개 원로 결산분개금법	한액조회 F7 감가상각	FB 대손상각 ●F E Ctri)퇴직충당 F9 인쇄 F12
기 간 201 코드 1. 0404 기 2.	1 년 <mark>이 <mark>√</mark> 월 ~ 2011 년 12 <mark>√</mark> 월 [과 목 매출액</mark>	자동 결산분개 원로 결산분개금백			
코드 1. 0404 기 2.	과 목 매출액	결산분개금백			
0404 2.	매출액	ECC//UN	견사저근애	견사바여근애	견사승군애
0404 ; 2.			5 119 960 000	200304	5 119 960 00
2.	해품매출 🥢		5,119,960,000		5,119,960.00
	매출원가 ㅋㅋㅋㅋㅋㅋㅋㅋ	2,865,470,260	3,185,470,260		2,865,470,26
0455 🧳	_{╣著매출원가} 사장내세군기	1 2,865,470,260			2,865,470,26
	1)원재료비 차 기 모 저 이 다	2 1 12 245,652,260	2,595,652,260		2,245,652,26
0501	원재료비	2,245,652,260	2,595,652,260		2,245,652,26
0153	① 기초 원재료 재고액		67,000,000		67,000,00
0153	② 당기 원재료 매입액		2,528,652,260		2,528,652,26
0153	⑩ 기말 원재료 재고액			350,000,0	ac 350,000,00
	3)노 무 비	198,000,000	168,000,000	+ 30,000,0	oc = 198,000,00
	1). 임금 외	168,000,000	168,000,000		168,000,00
0504	임금	150,000,000	150,000,000		150,000,00
0507	잡급	18,000,000	18,000,000		18,000,00
0508	2). 퇴직급여(전입액)	30,000,000		30,000,0	ad 30,000,00
0550	3).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7)경 비	352,818,000	352,818,000		352,818,00
	1). 복리후생비 외	339, 318, 000	339, 318, 000		339, 318, 00
0511	복리후생비	32,473,000	32, 473, 000		32, 473, 00
0517	세금과공과금	18,000,000	18,000,000		18,000,00
0524	운반비	43, 500, 000	43,500,000		43,500,00
0530	소모품비	60, 345, 000	60, 345, 000		60,345,00
0533	외주가공비	185,000,000	185,000,000		185,000,00
0518	2). 일반감가상각비	13,500,000	13,500,000		13,500,00
0202	건물	1			-
0206	기계장치				
	매출액:[5,119,	960,000] 당기순이익:[1,399,	679,060] 소득평율:2	27,34%	

전(前)에 입력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전(前)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오(<u>N</u>) 예(Y)

위 그림에서 "예(Y)"를 선택하면 결산자료입력에서 입력한 데이터와 전표입력에서 갱신 한 데이터를 불러와 표시한다. "아니오(N) "선택시 전표입력에서 갱신한 데이터만 불러와 표시한다.

5. 매출원가의 인식

기중에 매출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 매건 별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말에 기말재고자산을 실사하여 매출원가를 확정하게 된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또는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고(실사액) (차)상품매출원가(또는 제품매출원가)×× (대)상품(또는 제품)××

6. 소득세비용 인식(결산자료입력에서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 동시입력가능)

(1)소득세비용 인식

(차) 소득세비용(소득세등) × ×

(대)선납세금×× (대)미지급세금××

<u>कि</u>भन्दू2

(2) 소득세 등의 중간예납

사업년도가 6월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사업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라 면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한다.

모두 입력이 끝나면 툴바의 F3(전표추가)를 클릭하여 일반전표입력에 결산분개를 발생시켜 준다. 결산분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TRL+F5를 클릭하여 대체된 분개를 삭제후에 다시 전표를 발생시켜 준다.

[결산절차 요약]

(1) 수동결산내용 → 일반전표입력(12월31일)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소모품, 현금과부족, 소득세 선납세금의 정 리, 부가가치세계정의 정리, 대손충당금환입, 유가증권의 평가, 외화환산손익 재고자산 평가손실(계정과목및적요등록에 재고자산관계코드 입력시 자동분개가능)와 감모손실계상 등

② 자동결산내용 → 결산자료입력

제조업 : 455.제품매출원가 - 500번대 경비선택

기말 실지재고금액을 입력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입력-감가상각(F7)이용하여 자동입력 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입력-퇴직충당(CTRL+F8)을 이용하여 자동입력 대손상각비의 입력 - 대손상각(F8)을 이용하여 자동입력 · 무형자산의 상각액 입력

- · 소득세비용등의 입력 (선납세금과 소득세등을 동시에 자동결산도 가능)
- ☑ 위의 사항을 일반전표입력에 직접입력하여도 무방
- ☞ 대손상각비란 입력시 주의(보충법): 합계잔액시산표 채권잔액
 (매출채권잔액 × 대손예상률) 대손충당금잔액 = (+)면 상각, (-)면 환입 상각분 → 결산자료입력란에 입력
 환입분 → 일반전표입력에서 수동결산 (차)대손충당금 (대)대손충당금환입(판)
- 소득세등 입력시 추산액에서 선납세금을 차감 후 미지급액만 입력하거나
 선납세금계정에 계상된 경우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을 결산자료입력에서 자동결산을
 통해서 자동분개도 가능하다.
- ③ 입력종료후 → 반드시 "전표추가" 아이콘 클릭

결산분개를 일반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 예(Y)

- ④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조회 (조회를 하지 않아도 당기순이익 산출가능)
- ⑤ 손익계산서 조회

편집된 데이타가 있습니다 편집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 아니오(N) 전표추가 아이콘 클릭하여 손익을 자본금에 대체한다. 일반전표에 대체분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 예(Y)

- ⑥ 재무상태표 조회
- ※ 결산의 오류수정 : 일반전표입력 결산월(12월)에서 Shift#5를 눌러 조회 후 해당 내용을 선택한후 삭제하고 다시 분개 발생시킨다.



03 제조원가명세서

기초분의 타계정대체와 당기제품제조원가 확인하여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당기제품제조** 원가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체크한다. 제조원가명세서 조회는 선택사항이므로 바로 손익계산 서로 이동가능하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용과 표준용을 조회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여 준다.

04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의 당기제품제조원가가 정확히 반영되었으면, 주식수를 입력한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다. 중단손익이 있으면 툴바 F8을 눌러 중단사업손익을 입력한후 다음 과 같은 분개를 일반전표입력 12월31일(결산일)자로 분개를 추가한다.

(차)자산(현금,미수금) × × (대)손익 × ×

(대) 부채(차입금등) ×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용과 표준용을 조회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여 준다.

1. 손익대체

🔗 🛈 🖗 🐺 🖨 强 🔻 손익계산서		[2048]개인기	업 11기 2011년 01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 _ =
· 설정				메뉴탭 실행메뉴 스테
Esc 종료 [F3] 유형 [F4] 통합계정 [F6] 원경	강조회 F7 주식수 F9 인쇄 F11 계정코	E <mark>역F5</mark> 전표추가 [F12] 조회 <mark>♣F7</mark> 분류표시 →	문 59 영어계정 _ 만드 법인서
기간 : 2011년 12 🗑 월		_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고 모	제 11(당)기 2011년1월1일 ~ 2011년1	2월37일 제 1	0(전)기 2010년1월1일	~ 2010년12월31일
	금액	1	금액	
Ⅰ.매출액	5,	9,960,000		4,009,488,460
제품매출	5,119,960,000		4,009,488,460	
비.매출원가		365, 470, 260		3,049,277,450
제품매출원가	2,	365, 470, 260		3,049,277,450
기초제품재고액	54,000,000		75,082,450	
당기제품제조원가			3,028,195,000	
기말제품재고액			54,000,000	COMPANY CONTRACTOR OF
Ⅲ.매출총이익		추가되었습니다.		960,211,010
₩.판매비와관리비				815, 793, 975
급여			251,126,000	
상여금	환이		38,500,000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51,827,300		63,902,960	
여비교통비	32,269,400		39,104,900	
접대비	50, 980, 900		38,650,000	
통신비	19,643,950		11,631,680	
수도광열비	7,500,000		7,500,000	
전력비			12,500,000	
세금과공과금	11,634,990		10,397,000	
감가상각비	10,500,000		8,950,000	
임차료	56,200,000		36,000,000	
수선비	2,800,000		2,500,000	
보험료	20,380,000		35, 889, 250	

수익비용계정의 마감과 마찬가지로 손익대체도 전산회계시스템에서 자동전표생성으로 회계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결산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분개로서 손익대체의 분개가 존재한다.



(차) 손익×× (대) 자본금××

상기 손익대체 분개를 함으로써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회계처리가 마무리된다. 손익 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에 반영**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실 무상으로 대부분의 전산회계프로그램은 자동전표에 의하여 손익대체 분개를 한다. 상기 결 산정리분개의 내용이 수정후시산표에 반영되고, 그 결과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재 무상태표 등의 서식이 작성되는 것이다.

모두 입력이 끝나면 툴바의 F6(전표추가)를 클릭하여 일반전표입력에 손익대체분개를 발생 시켜준다. 다시 전표추가 하고자 하면 일반전표입력에서 SHIFT+F5를 눌러 삭제한후 실행한 다.

2. 인출금정리

기중에 대표자가 사용한 자금을 인출금에 차기하고 차후에 자본금과 상계한다. (1)기중 인출금 발생시 (차)인출금 ×× (대)현금×× (2)기말 결산시 (차)자본금 ×× (대)인출금××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에 합산되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용과 표준용**을 조회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여 준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중의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변동관계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명세서이다.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명세서와 경영자의 분석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금잔액증명서,부채증명서,대출금이자계산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자동차보험관리 대장,화재보험대장,재고조사표,부동산임대차계약서,외상매출금(매입금)잔액명세서등)



1. 현금 일괄 조정

(1)검토월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한다. (2)계정과목 분개시 현금의 상대 계정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개인은 2.인출금을 사업자은 1.가지급금, 가수금을 선택한다. (3)조정금액 최소잔액 : 각 일자별 최소한 보유하고자 하는 현금금액을 입력한다. 최대잔액 : 각 일자별 최대한 보유하고자 하는 현금금액을 입력한다. 조정단위 : 현재 검토전 현금 잔액에서 남기고자 하는 현금 금액까지 변경단위를 입력한다. (4) 수정전금액 각 일자별 전표의 현금 잔액을 반영한다. (5)직전조정반영 수정전 금액 현재 일자 전일까지 조정된 수정 후 금액을 반영한다. (6) 주정액 최대 잔액 혹은 최소 잔액 까지 보유하기 까지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다. 2.현금 직접 조정

(1)검토월

확인하고자 하는 월을 입력한다.

(2)구분

1.출금 또는 2.입금 또는 3.차변 또는 4.대변을 입력한다.

(3) 차변 또는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선택한다.

1.가지급금 또는 2.가수금 또는 3.인출금 또는 4.현금을 입력한다.

(4) 수정후 금액

수정전 금액에서 수정분개 내역을 반영한 금액이 수정후 금액이 된다.

3.당좌 예금 조정등

(1)검토월 확인하고자 하는 월을 입력한다. (2)금융기관 확인하고자 하는 당좌계좌의 금융기관 코드를 입력한다. (3)당좌예금 입출금 현황 금융기간별 당좌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 예입금액에 반영한다. 수정분개내역에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일자에 예입금액 또는 출금금액에 반영한다. 수정분개내역에서 1.출금의 금액은 예입금액에 반영된다. 2.입금의 금액은 출금금액에 반영된다.



08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송금명세서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 증세금계산서·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단, 현금영수증보관의무는 폐지되었음)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없다.※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①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②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가.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나.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
(2)현금영수증
(3)세금계산서
(4)계산서
(5)원천징수영수증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

2.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빙서류

(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3)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

3.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1)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M34222

(1)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다.

(예) 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나. 사업자가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다.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 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② 사업자의 범위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제외 예)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이 아니다.

(1)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2)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3)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주의]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1)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⑦ 택시운송용역 을 제공받은 경우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옥
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기
제출하는 경우
⑨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⑩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①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업
이 부담하는 경우
③ 재화공급계약·용역공급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
하는 경우
④ 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1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3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5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6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7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8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의 경우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7.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사업자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가산세 적용 제외 사업자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 ②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2)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은 사업자의 경비 등으로 인정된다.

※ 소득세는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 1%









구 분	법인세법	소득세법
1 대표자의 인건비 및		필요경비불산입,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손금인정	인정한다, 추계액에서도 제거한다.단, 직접종사자 가족이 거으 이제
2 가사관려경비	규정없음	필요경비불산입
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	채권불분명이자 비실명채권이자 건설이자(특정+일반) - 업무무관자산이자	채권자불분명이자 없음(개인은 채권발행안됨) 건설이자(특정) 초과인출금이자 업무무관자산이자
4.대손충당금	대여금과 고정자산미수금을 설정대상채권	설정제외 금융기관 (2%)없음
5.일시상각충당금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합병분할교환차익을 신고조정으로도 설정가능	국고보조금과 보험차익만 결산조정으로 가능
6.조특법상 준비금	이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결산조정만 가능
7.이월결손금공세 8.양도자산의 해당연도 가기사가비	각사업년도소득금액에서 공세 시부인대상에서 제외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공세 시부인대상(월할계산)
9.시설개체,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폐기손실	1,000원을 제외하고 손금	필요경비불산입 단, 폐기처분시 필요경비
10.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추인	소멸
11.접대비기준금액	법인별로 계산	사업장별로 계산하고사업장별 통산없으며, 중소기업여부는 주업종코드로 판단하여 적용
12.광고선전목적 비용	광고선전목적의 컵,부채등을 특정인에게 지출시 건당 10,000원이하, 연간 3만원한도내서 비용인정	광고선전목적의 컵,부채등을 특정인에게 지출시 건당 5천원이하, 연간 3만원한도내서 비용인정
13.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소득금액에 포함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과세
14.보험차익	소득금액에 포함	저축성보험이 단기면 이자소득, 장기면 과세제외 보장성보험이 자산멸실등으로 인한것이면 과세,그외는 제외
15.유가증권처분손익	소득금액에 포함	과세제외(특정주식은 양도소득)



구 분	법인세법	소득세법
16.고정자산처분손익	소득금액에 포함	과세제외(양도소득)
17.자산의 평가차익	법률에 의한 것만 익금산입	제외
18.자산수증이익과	이그하모	사업과 관련한것만 총수입금액에
채무면제이익		포함, 관련없으면 증여세과세
		인출금으로 보고 계산안함
19.가지급금인정이자	인정이자계산	단,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은 적용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20.간주임대료	차입금과다법인, 단, 추계인	모든 부동산임대업자
	경우에는 모든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상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해
21.장기할부판매	인도기준인식한경우에도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가능	
	중소기업의 경우 1년미만시	
22.건설계약등 용역배줄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원직은 인노기준,결산에 반영한
(단기용역매출등)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가능	경우 진행기준가능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23.접대비	추가시 송금명세서 제출하면	2013년부터 적용
	적격증방인정	
24.기부금	손금처리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25.용어구분	익금산입, 손금산입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산입
	유보발생	유보
	유보감소	추인(발생한 유보 감소)
	배당	- (주주없어 배당없음)
26.소득처분	상여	상여
	기타소득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기타(잉여금)	인출(잉여금 없음)
27.유보의 사후관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유보소득조정명세서
28.영수증수취명세서	어으	
미제출가산세		
	주주총회통해 확정된 이익처분이	
기타)이익처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주주가 없고, 이익처분도 없음
	이익처분사항 표시	

[참고]법인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차이를 파악하면 쉽게 개인조정에 접근가능함



03 기초정보관리

기초정보관리
회사등록
환경등록
계정과목및적요등록
조정과목등록
세무조정계산서표지
세무조정총괄표
결산보고서표지
세무조정계산서일괄출력
일괄출력PDF문서보기

1.회사등록

회사등록사항은 각종서식에 반영되므로 가장먼저 사업자등록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1.회계연도

작업할 회사의 기수와 회계연도를 입력한다. 회사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계산하기 위 하여 1 년 이내의 일정기간을 설정하는데, 이를 회계연도 또는 회계기간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 우 매년 1.1 ~ 12.31까지를 1회계연도로 정하고 있다.

(2) 2.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일정규칙에 의해 부여된 번호이므로, 정확히 입력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내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체크 기능이 있어 오류입력의 경우 빨간 색 BOX로 표시된다.

(3) 4.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입력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대표자 1명만을 입력하고 그 밖의 대 표자는 '외 몇 명'(에 홍길동외1)으로 입력한다. 그리고 대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 소를 둔 거주이면 대표자구분을 거주자로 체크한다.

(4) 5.대표자주민번호

대표자의 주민번호을 입력한다. 대표자 주민번호가 다른 사업장의 대표자로 있어 중복된 경우에는 중복 에 체크하여야 하며, 법인, 외국인, 종중단체인 경우에도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7.자택주소

소득세는 주소지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택주소를 정확히 입력한다.

(6) 12.공동사업장여부



여러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고 대표공동사 업자명의로 신고서가 작성되므로 정확히 입력한다.

[참고]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과세하고 있으나, 거주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와 같이 특 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특수관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그것도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 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 1명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친족을 말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8) 13.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사업소득이면 30.부동산임대, 순수한 사업소득이면 40.사업소득을 입력한다.

[참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구분경리하고, 소득금액 계산방법,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공제방법, 각종 공제 등 사업소득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현행 유지. 다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허용한다.

(9) 16.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 / 월 / 일을 입력한다.

영업(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세법용어로서 사업개시일과 같은 뜻이다. 세법에서는 제조업 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 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 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 난후 20일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22.주업종코드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의 기준경비율코드를 입력한다.

[기장의무]

1)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간편장부대상자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	기준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 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 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미만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단, 의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등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부동산소득(30)과 사업소득(40)을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겸영시]

각각 회사등록을 하고 소득구분도 소득종류에 따라 각각 입력한다.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회사등록과 소득구분을 일치시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2.환경등록



(1)의제상각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나 면제받은 업체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체크한다.

(2)감가상각시부인방법

감가상각 조정시 자산갯수가 많아 계정과목별로 합하여 시부인 할경우에는 1.계정과목별시



부인을 체크하고, 자산 건건히 시부인할려면 2.자산별시부인(세법상 방법)을 체크한다.

(3)소득금액조정합계표조정등록방법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서 미리 등록된 조정과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조정과목사 용으로 체크하고, 직접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직접등록을 선택한다.

04	표준재무제표
Commence	-
표준재무	제표
표준대차	바대조표
표준손익	계산서
표준원가	·명세서
표준합계	잔액시산표

이 표준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 하여야 한다. 이것은 회계관리의 재무제표의 표준용을 조회하고 와야 자동작성가능하다.

1.표준대차대조표

Esc 종료 F5 삭제 ФF5 전체 삭제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한테 Ctr	5] 편집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유동자산	01	3,115,212,170	Ⅰ. 유동부채	27	957,143,036
1. 당좌자산	02	2,360,090,780	1. 매입채무	28	475,161,236
가. 현금과 예금	03	918, 542, 731	2. 지급어음	29	
나. 매출채권	04	879,800,991	3. 단기차입금	30	10,000,000
다. 받을어음	05	216,360,105	4. 미지급금	31	4,095,800
라. 기타	06	345, 386, 953	5. 선수금	32	8,300,000
2. 재고자산	07	755,121,390	6. 기타	33	459, 586, 000
가. 상품과 제품	08	392,000,000	Ⅱ. 비유동부채	34	450,000,000
나. 반제품 및 재공품	09	45,000,000	1. 장기차입금	35	350,000,000
다. 재료	10	318,121,390	2. 임대보증금	36	
라, 기타	11		3. 퇴직급여충당부채	37	100,000,000
Ⅱ. 비유동자산	12	1,319,590,166	4. 제준비금	38	
1.투자자산	13	434,200,000	5. 기타충당부채	39	
2. 유형자산	14	545,390,166	6.기 타	40	
가, 토지	15	320,000,000	부채총계(+)	41	1,407,143,036
나, 건물	16	53,000,000	Ⅲ. 자본금	42	1,627,980,240
다. 기계장치	17	57,408,633	Ⅳ. 당기순이익	43	1,399,679,060
라. 선박	18		자본 총계(Ⅲ+Ⅳ)	44	3,027,659,300
마. 공구·기구	19	26,914,806	부채 및 자본총계(Ⅰ+Ⅱ+Ⅲ+Ⅳ)	45	4,434,802,336
바. 차량운반구	20	61,340,011			
사, 기타	21	26,726,716			
3. 무형자산	22	40,000,000			
4.기타비유동자산	23	300,000,000			
가. 임차보증금	24	300,000,000			
나.기 타	25				
자산 총계(++++)	26	4,434,802,336			

(1)사업장별, 소득별(사업, 부동산)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2)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계정과목에 기재할 금액이 없는 때에는 금액란에 "0"으로 기재한다.

(4)의료업자의 의료기구 또는 의료시설은 "마. 공구・기구" 란에 적어야 한다.



2.표준손익계산서

Esc 종료 F5 삭제 안F5 전체삭제 F9 인쇄	Fil 저장	F12 불러오기 (Ctrl	편집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매출액	01	5,119,960,000	15. 지급수수료	24	12,506,000
Ⅱ, 매출원가(1+2-3)	02	2,765,367,620	16. 판매수수료	25	
1. 기초상품(제품)재고액	03	54,000,000	17. 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	26	12,000,000
2. 당기매입액또는제조원가	04	3,103,367,620	18. 소모품비	27	11,929,780
3. 기말상품(제품)재고액	05	392,000,000	19. 인적용역비	28	
Ⅲ. 매출총이익(Ⅰ-Ⅱ)	06	2,354,592,380	20. 기타	29	172,999,950
IV, 판매비 및 관리비	07	1,003,128,320	Ⅴ. 영업손익(Ⅲ-Ⅳ)	30	1,351,464,060
1. 급여와 임금·제수당	08	480,000,000	N. 영업외수익	31	87,750,000
2.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09	25,000,000	1. 고정자산처분이익	32	
3. 의약품비	10		2. 이자수익	33	50,000,000
4. 복리후생비	11	51,827,300	3. 판매장려금	34	
5. 여비교통비	12	32,269,400	4. 국고보조금	35	
6. 세금과공과	13	11,634,990	5. 제준비금환입액	36	
7. 입차료	14	56,200,000	6. 기타	37	37,750,000
8. 보험료	15	20,380,000	₩. 영업외비용	38	39,535,000
9. 감가상각비	16	10,500,000	1. 고정자산처분손실	39	2,000,000
10. 수선비	17	2,800,000	2. 이자비용	40	5,000,000
11. 접대비	18	50,980,900	3. 기부금	41	4,500,000
가,해외접대비	19		4. 재해손실	42	
나.국내접대비	20	50,980,900	5. 제준비금전입액	43	
12. 광고선전비	21	30,000,000	6. 기타	44	28,035,000
13. 운반비	22				
14. 차량유지비	23	22,100,000	Ⅷ. 당기순손익(∀+∀I-∀Ⅱ)	45	1,399,679,060

(1) "의약품비" 란은 의료업자만 기재한다(치과에서 지출하는 기공료 포함).

(2) 퇴직연금납입액 등은 코드번호 "09" 란에 적어야 한다.

(3) 인적용역비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수수료)를 기재한

다.(학원강사,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등)

(4) 그밖의 사항은 표준대차대조표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3.표준원가명세서

Esc 종료 F4 전기서식 F5 삭제 ΦF5 전체삭제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안F8 편집
계 정 과 목	코드	금액
1.당기제조비용(1+2+3)	01	3,133,367,620
1,재료비	02	2,277,530,870
가.기초재료재고액	03	67,000,000
나.당기재료매입액	04	2,528,652,260
다.기말재료재고액	05	318,121,390
2.노무비	06	385,000,000
가.급료 및 임금·제수당	07	360,000,000
나.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08	25,000,000
3.경비	09	470, 836, 750
가.전력·가스·수도비	10	
나.운임	11	43, 500, 000
다.감가상각비	12	131,518,750
라.수선비	13	
마.소모품비	14	60,345,000
바.세금과공과	15	18,000,000
사.임차료	16	
아.보험료	17	
자.복리후생비	18	32,473,000
차.여비교통비	19	
카.접대비	20	
타.차량유지비	21	
파.외주가공비	22	185,000,000
하.기타	23	
II.기초재공품재고액	24	15,000,000
.합계(+)	25	3,148,367,620
↓♥.기말재공품원가	26	45,000,000

(1) 대상자 : 제조, 광업, 채석업, 건설업 그 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
(2) 그 밖의 사항은 표준대차대조표 작성요령과 동일



4.표준합계잔액시산표

Esc 종료 F5 삭제 @F5 전	1체삭제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Ctrl) 편집		
차	변	계정고모	대	변
잔액	합계	71345	합계	잔액
3,115,212,170	17,030,437,654	<유동자산>	13,915,225,484	
2,360,090,780	8,129,050,154	<당좌자산>	5, 768, 959, 374	
918, 542, 731	5,612,978,661	현금과 예금	4,694,435,930	
879, 800, 991	1,652,044,270	매출채권	772,243,279	
216, 360, 105	463,805,270	받을어음	247, 445, 165	
345, 386, 953	400, 221, 953	기타	54,835,000	
755, 121, 390	8,901,387,500	<재고자산>	8,146,266,110	
392,000,000	3,157,367,620	상품과 제품	2,765,367,620	
45,000,000	3,148,367,620	반제품 및 재공품	3,103,367,620	
318, 121, 390	2,595,652,260	재료	2,277,530,870	
	0. (() 0.	기타		
1,319,590,166	1,843,513,069	<비유동자산>	523, 922, 903	
434,200,000	434,200,000	<투자자산>		
545, 390, 166	1,069,313,069	<유형자산>	523, 922, 903	
320,000,000	320,000,000	토지		
53,000,000	100,000,000	건물	47,000,000	
57,408,633	392,169,744	기계장치	334,761,111	
		선박		
26,914,806	30,085,273	공구 기구	3,170,467	
61,340,011	134, 239, 208	차량운반구	72,899,197	
26,726,716	92,818,844	기타	66,092,128	
40,000,000	40,000,000	<무형자산>		
300,000,000	300,000,000	<기타비유동자산>		
300,000,000	300,000,000	임차보증금		
		기타		

소득세법은 합계잔액시산표를 근거로 표준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니 유의하 여야 한다.





1.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1)수입금액 조정계산(총괄)

계정과목별로 매출액을 기재하며, 조정가산란에는 수입금액 중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을 기재하고, 조정차감란에는 결산서상 수입금액 중 전기 과세분 등 당기에 총수입금액에 불 산입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기재한다. 대응원가란의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옮겨 기재한다.

(2)수입금액 조정명세

작업진행률에서 도급금액란은 총도급금액을 기재하고, 건설 등의 필요경비총예정액란은 해



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설업회계기준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추정한 원가를 기재한다.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한다.

기타 수입금액은 상기외의 영업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며, 구분란에는 위탁판매, 임대료수입 등을 기재한다.

(3)총수입금액 산입항목예시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거 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 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①·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②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

③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 채의 감소액(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④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⑤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⑥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총수입금액불산입

①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환급금

②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③전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

④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 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⑤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 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⑥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업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⑦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 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

Me Arzy 2

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 ⑧국세,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예제]사업자의 매출액은 5,119,960,000원이며 매출누락이 30,000,000원이 있다.

4 계전과목 5	j.결산성상	조	정	- 210	8.조절,순입금액	9 11 7
4./1844	수입금액	6.가 산	7.차	감	(5+6-7)	0.01 11
제품매출	5,119,960,000	30,000,000			5,149,960,000	
계	5,119,960,000	30,000,000			5,149,960,000	
1	0,110,000,000	00,000,000			0,110,000,000	
이 소이 귀에, 포케더네						
2,구입금액 소성경제 - 자아지캐루에 이런 소이구!	DH I					
직접선행률에 의한 구합금	레스아그에					
이기일무판매상품 중에 내	한 수입금액					
기타 수입금액 계		30,000	,000			
		30,000				

기타수입금액에서 누락액 30,000,000원을 처리한후 다음과 같은 조정등록을 한다. [총수입금액산입]매출누락 30,000,000원 (유보)

2.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1)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업태, 종목, 업종코드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 순)경비율의 업태, 종목 및 코드번호를 적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적으 며, 종목 수가 9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합계로 기재한다. 총수입금액계란은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의 조정후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된다. 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 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재한다.





[예제]총수입금액에는 장려금이 25,600,000원만큼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과표와 차이가 발생한다.

							총 수 입	금액		
1.업 태	2.종	- 목	코드	※3.업종코드	4	. 73	내 수 :	판 매	7 X Ž	
					4.71(5+6	+7)	5.국내생산품	6.수입상품	(.수 물	
해조	전자제품		01	292203	5,149,9	60,000	5,149,960,000	stately contentions		
			02							
			03							
			04							
			05							
			06							
			07							
			08							
			09							
.111)기 티			10							
(11	2)합 계		99		5,149,9	60,000	5,149,960,000			
·	그 보	과 종수입금액	지역 ·	김도 총수입금액조 그 애	정명세서상 수	입금액 기	비: 5,149,960, 초스이그아	<u>- </u> 2000 차액 (4-15) 1 조제내여	177시세 신고 네먹 1	
	1 2	N HF		4 204 360 000			고 모	그애	저 ㅇ	
부가가치세과	세표준 이 여	글 · · · · · · · · · · · · · · · · · · ·		120,000,000		자려금		25 600 000		
The Part of the Part	10	계 (8 + 9)		4 324 360 000	16.증 가	0.0.10		20,000,000		
11.면 세	사업수입	금액		800,000,000		계		25,600,000		
12 함께 (10 + 11)		11.)		5,124,360,000			과 목	금액	적 요	
12, 8/4	13.	중 가		25,600,000	10.01					
14,입계	총수입금액조정 14				17.김 소					
·····································	14.	15 ㅈ저ㅎ초ㅅ이그애(12+13-14=4)					2224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과세(일반), 과세(영세율)란과 면세사업수입금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 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분을 포함함)과 면세사업수입금액을 기재 한다. 총수입금액 조정내역란의 증가란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 입금액의 합계액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공제세액, 관세환급금, 장려금, 보조금 등 사유별 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수입금액 조정 증가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감소란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 고정자산매각액, 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직매장공급 등 사유 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수입금액 조정 감소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3.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명세서(1.2)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것 제외)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전 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보증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 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 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규 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함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달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4%)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월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 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한다.





Esc	종료	F1 5	i움 F2	코드 F3	조정등록	F5 삭제 6F5 전체삭제	F7 원장조회 F	9 인쇄 F11	저장 F12 불	물러오기			
$\int $	부동	산(주택제	11외)임대	보증금총수입금	음액(2)	부동산(주택제외)임대보증금;	홍수입금액(1)	루동산(주택)일	대보증금총수업	J금액(3)	1		
1.임	내브	년 중금 등	의 총수	입금액 조정							보증금적식	수계산 일수 수정	
	4.	보증금등 적	₽ ₽	5.건설비성 적	상당액 수	6.보증금잔액 [(4-5)/(365,윤년366)]	7.이자율 (%)	8.총수입 (6	금액상당액 X 7)	상당액 9.보증금운용 10.총수입 수 입 금액(6			
	109	9,800,0	00,000	91,500	000,000	50,000,000	4		2,000,000		1,500,000	500,000	
5	2	.임대보	중금등의	적수계산									
	11	.일 자		01708		임대보증금누계	71001	-il	13.일	수	14.조	역 수 (12X13)	
1	0	1 01		입금액 300,1	000,000	반완덕	전맥주· 30	91 10,000,000		366		109, 800, 000, 000	
					합계		30	0,000,000		366		109,800,000,000	
6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15	i.일 자		16.적 요		16.적 요 17.건설비		17.건설비성	상당액	당액 18.일 수		19.건설비	상당액적수(17X18)
1 2	0	1 01	전기이	월			25	50,000,000		366		91,500,000,000	
-					합계		25	50,000,000		366		91,500,000,000	

[총수입금액산입]간주임대료 500,000 (기타사외유출)

06	감가상각비조장
감가상각	비조정
고정자산	·등록
· 미영덕군 양도자산	감가상각계산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양도자신 감가상각	비조정 <mark>명세서합계표</mark>
특례미상	각자산감가상각조정
특례양도	자산감가상각조정명
감가상각	특례자산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신고서및감가상각방

1.고정자산등록

전표입력에서 간편등록을 사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툴바의 F4.일괄계산을 클릭하여 재계산 을 하여 준후 다음을 입력한다. 당기 중 취득자산의 입력은 다음과 같다.

[주요등록사항] - **당기에 취득한 경우**





자산계정과목 : 0206 🝚 기계장치	미상각분 감가상각계산	
■ 자산코드/명 취득년월일 상각방법	기본등록사항 추가등록사항	
[000001 분쇄기 2012-02-01 정률법 [] [] [] [] [] [] [] [] [] []	1.기초가액 / 성실 기초가액 2.전기말상각누계액(-) / 성실 전기말상각누계액 3.전기말장부가액 / 성실 전기말장부가액	
	4.당기중 취득 및 당기증가(+)	225,000,000
	5.당기감소(일부양도·매각·폐기)(-) 전기말상각누계액(당기감소분)(+) 6.저기만자본적지층액느계(+)(정액변마)	
	7.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8.전기말부인누계액(+) (정률만 상각대상에 가산)	
	9.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0. 상각대상금액	225,000,000
	11.내용면수/상각률(월수)	5 😔 0.451 (11)
	정실경과내용면수/자감면수(정실장각률)	/ () 기준내용년수도품표
	12. 상각범위액(한도액)(10.상각률)	93,018,750
	13.21/M/2020(12)-(7)	93,018,750 사용사구성
	14.경미구문	03.010.750
	19. 8기골입기8억구계곡	131 001 250
F	17 다기이제사가비	131, 301, 230
		· · · · · · · · · · · · · · · · · · ·
E.	18.전체양도일자	
In	19.전체폐기일자	
	20.업종	13 💽 제조업

(1) 고정자산 계정과목

대상물건의 계정과목코드를 조회하여 입력한다.

(2) 자산코드/명코드 6자리, 자산명은 한글은 10자, 영문은 20자 이내로 구체적인 자산 품목명을 입력한다.

(3) 취득연월일
해당자산을 취득한 년, 월, 일은 세법상 해당자산의 사용년, 월, 일을 입력하면 된다.
주의)세법은 사용일부터 감가상각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일을 입력한다.

(4) 상각방법 1.정률법 , 2.정액법중 해당번호를 선택한다.

단, 건물, 구축물의 경우 세법상 정액법만 가능하다.

(5) 기초가액

전기말 현재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을 포함)을 입력한다. 단, 당기중의 취득한 금액은 등록 사항의 당기증가액에 넣어주어야 조정서식이 제대로 작성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경우의 재무상태표가액이 상각후의 금액이다. 단,무형자산의 경우 미상각 잔액이 표시된다는점을 주의한다.

(6) 전기말상각누계액전기말 현재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입력한다.

(7) 전기말장부가액



기초가액에서 전기말 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자동계산한다.

(8) 당기중취득 및 당기증가 당기중에 취득이 있거나, 자본적지출에 대해 회사가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처리시 자본 적지출액을 입력한다.

(9) 당기감소(일부양도, 매각, 폐기)
 일부자산의 매각, 폐기등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재한다. 자동으로 전기말상각누계액은 감소
 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계산되어 감소한다.

(10) 전기말자본적지출액누계(정액법만)전기말까지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입력한다.

(11)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 상각분)자본적 지출액중 비용처리한 금액을 입력한다.

(12) 전기말부인누계액(정류만 상각대상에 가산)전기말까지 세법상 부인(한도초과액)된 금액이 있으면 입력한다.

(13) 전기말의제액전기말 현재의 의제상각누계액을 입력한다.

(14) 상각대상금액감가상각대상인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자동계산 되어진다.

(15) 내용년수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를 입력하면 상각률이 자동표기 된다. 내용년수를 기준내용년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서 회사가 선택하여 신고내용년수로 할 수 있 다.

(16) 경비구분

고정자산의 용도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경비를 구분하며, 선택할 수 있는 번호는 판관비면 6.800번대, 제조경비에 해당하면 1.500번대(제조경비)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17) 당기의제상각비

조특법에 의해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세법이 정하는 상각범위액까지는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미계상했거나 적게 상각을 한 경우에 세법은 감가상 각 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연도 이후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조정하게 된다. 그 조정금액이 의 제상각비가 된다.

(18) 당기말상각누계액



전기말 상각누계액과 당기상각비의 합계액이 자동표기 된다.

(19) 당기말 장부가액

기초가액에서 당기말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표시 된다.

(20) 양도일자

전체자산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일자를 기재하여 다음연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의)일부자산의 양도가 있으면 당기감소란에 기재한다.

(21) 폐기일자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입력한다.

(22) 업종

내용년수별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분이며 도움키를 이용하여 선택하여 입력한다.

[추가등록사항] 자산변동처리는 자산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비망사항으로 보여준다. 다른 메뉴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영되지는 않는다.

2.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고정자산등록에서 불러오기를 하여 시부인한다. 조정등록은 자산별과 계정과목별 시부인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법상 원칙은 자산 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산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계정과목별로 시부인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다. 조정하고자 하는 것을 환 경등록의 감가상각 시부인방법에서 선택하여 저장한후 조정을 한다.

각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 시부인]

(1)시인부족액

필요경비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필 요경비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2)상각부인액

필요경비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 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필요경비 추인하며,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 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 기에 필요경비 추인한다.

[감가상각의 의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면제·감면 받 은 경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로서 감가상각비 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주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감가상 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을 고정자산처분손익계산시 반영하 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 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다.

[즉시상각의 의제]

(1)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필요경비 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2)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 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필 요경비에 산입한다.

①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②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3)다음의 수선비 지출액을 사업에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 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4)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영화필름, 공구(금형 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 기,측정기기, 간판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 인 것
 ④전화기(휴대전화기 포함), 개인용컴퓨터(주변기기 포함)

(5)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하며, 당해자산처분시 필요경비산입한다.

M=+2+2

(6)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사업자 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 비를 인정한다.

07	과목별세무조정	6

과목별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1,2)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등필요경 <mark>비산입</mark> 명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

1.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은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 1년간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5%

② 퇴직급여 추계액 × 20%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퇴직금전환금 : 1999.3.31 이전 납부 잔액

* 퇴직급여 추계액 :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이 전원 퇴직할 경우 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추계액

(2) 충당금의 상계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한다.

- 65 -

(1)퇴직연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신고조정) 필요경비에

[필요경비산입] 퇴직연금 320,000,000(유보발생)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3 조정등록 🐓F5 전	체삭제 F7 원장조회 F1	3 잔액조회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리	러오기		
※ 2.이미 필요경비에 산업	입한 부담금의 계산						
■나.기말 퇴직연금 예치	금 등의 계산						
22.기초 퇴직연금예치금	23.기중 등 수	퇴직연금예치금 등 령 및 해약액	24.기 퇴직연금예치금 납입액		25.퇴직연금예치금 등 7 (22 - 23 + 24)		1
	320,000,000 퇴직연금운용	자산기초잔액		20,000,000		340,	000,000
😢 가.필요경비 산입 대성	· 보험료 등 계산	J.					
16.퇴직연금예치금 계 (25)	17.기초퇴직연금 충 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 에 따른 필요경비산입액	18.퇴직연금 충당금 필요경비 부인 누계액	19.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23) 20.이미 필. 퇴직연· (17 -		경비 산입한 부담금 3 - 19)	21.필요경비 산 퇴직연금 부달 (16 - 20)	김대상 참금
340,000,000	20,000,000			20,000,000		320,	300,000
1.퇴직보험 등의 보험	료 조정		EIXI	그에츠다그ㅈ저	며네서사이 브	0108	
4.당기말 현재		당기말 현재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5.장부상 기말잔액	6.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7.부인 누계액	8.末 (5 - 6	감액 i - 7)	필요경비산! 누적한도액 (4 - 8)	1
700,000,000	100,000,000		8,000,000		92,000,000	608,	300,000
10.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담금 (20)	11.당기 필요경비 손금한도액 (9 - 10)	12.필요경비산입 대상부담금 (21)	13.당기 필요경비산입 범위액 (11과 12중 작은 금액)	4.본인 필요	경비 계상액 로 필요경비사	15.조정금역 (13 - 14) 2 7 눈액	4
20,000,000	588,000,000	320,000,000	320, 000, 000	C.12.4 0 3	C STO-IC	320,1	000,000

2.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필요경비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8,000,000(유보)

계정과목명	17.書	급여액	18.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 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아 19.토 백 는 1	19.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역		되 20.2 박	되 20.기말 현재 전종업원 시 퇴직급여추계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	원	금액	9	기원	금액	
0504.임금(제)	50	360,000,000			Ì.	50	360,000,0)OC	69	700,000,000	
3801.급여(판)	19	480,000,000	0.1		0	19	480,000,0	000			
합계	69	840,000,000				69	840,000,0	000	69	700,000,000	
3 1.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른 하도액	1 종업원	.퇴직급여 지급대 현에게 지급한 총	해상이 되는 급여액(19의 :	계) 2.설정률			3.한도액 (1 * 2)		비고		
(급여기준한도)		8				5 / 100			42,000,000		
『소득세법 시행령』	4.장부상 충딩 기초잔액	·금 5.확정기여 종업원의 퇴	형 퇴직연금 직급여충당금	6.연도 중 환입	· 충당금 액	총당금 7.기초충당; 부인누계액		당금 8.연도 중 예액 지급		9.차감액 (4-5-6-7-8)	
제57조제2항에	50,000,	000								50,000,0	
따른 한도액 (ㄴ저애 기즈하드)	10.추계액 {(20 * 2	대비 설정액 20 / 100)}	11.퇴직금 전환금 ^{12.}		12.설정률 하는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용 하는 금액 MAX(9-10-11,		를 제외 0)	·제외 13.누적한도역)) (10-9+11+12		
(무역적 기관한도)		140,000,000								90,000,0	
한도초과액	(3고)	14.한도액 13중 작은 금액)	15.필요경비 계상액					16.한도초 (15-14	.과액 l)	
ALAF		50,000,000			8,000.0						





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수령한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 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당해 퇴직연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3)퇴직연금의 해약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사업자가 결산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연금을 해약하고 퇴직연금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약액은 총수입금액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증 가액은 당시 설정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후 한도액을 계산한다.

Esc	종료 FI	도움	F2 코드 F	3 조정등록	F5 삭제 @F5 Ctrl	전체삭제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호	4 F9 인	쇄 F11 저장 F12	불러오	7	
1	2. 대손금	⊦조정											크 게
	20.일지	F 계3	털과목 22	2,채권내역	23.대손사유	R., .	24.대손금액	25. 충당	금상계액	26.필요경비계·	상액 2	27.필요경비불산업	입액
1	12.31	받을	거음 1.마	출채권	5.부도(6개월:	경고	1,000,000		1,000	999	9,000	1,	000
2		_									/		
										/			
				계			1 000 000		1	1 990	2 000 5	1	000
2 0	개출채권	등의 총	5액 잔액	× u			1,000,000				5,000	0	크 게
	14.계경	성과목	15.장부기	가액	16.기말현재 전 기	대손금 !	부인 누계 당 기	17.합 (15+1)	계 5)	18.충당금설정제5	리채권	19. 충당금설정 대상채권	1
1	외상매 (출금	892,	473,400				892,	473,400			892, 473,	400
2	받을어	8	216,	293,000			1,000	216,	294,000			216,294,	000
3	선급금		17,	750,000				17.	750,000			17,750,	000
4													
	7		1,126,	516,400			1,000	1,126,	.517,400			1,126,517,	400
3 1	,대손충	당금조정	ļ					-	기말대손충	당금잔액이 필요경	비계상액	으로 기재	
필	요경비	4.충딩	금 설정대상 (19)	채권	5.설정률		6.한도 (4×5	객)	7,필.	요경비 계상액		8.한도초과액 (7-6)	
산입	액소성		1,126,5	517,400	1/100	j l		11,265,174		21,605,30	4	10,340	0,130
총수	-입금핵	9. <i>ž</i>	등당금 기초잔	액	10.해당 과세기 대손금상계액(2	간 5)	11.환입할 (9-10	금액)	12.	환입한 금액		13.과소환입 (11-12)	
완법	을 소성		3.6	05.304 부	인액 차감후 금액	1,000		3,604,304				3,604	4,304

3.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필요경비불산입]대손금부인 1,000(유보)

[필요경비불산입]대손충당금한도초과 10,340,130(유보)

[총수입금액산압]대손충당금과소환입 3,604,304(추인)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필 요경비에 산입한다.

(1)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 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대손충당금 한도액 = 기말채권잔액 × 설정률



*설정률 :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것

*대손실적률=당해과세기간의대손금 ÷ 직전과세기간 종료일현재의 채권잔액

(2) 대손충당금의 환입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다음 연도에 실제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실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연도말에 전부 환입한다.

(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①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대가의 미수액
②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당해 사업장에 적용
되는 규칙 제50조 제1항 각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은 제외

4.접대비조정명세서

1	전대비	두 내역				
1 .754	an est est	④ 계정과목	합계	접대비(판관)		
		⑤ 계정금액	50,980,900	50, 980, 900		
(<u>) 신용카</u> 드 국외지역	드 등 사용금액 (현금접대비 포함)	50,605,000	50,605,000		
	실용카드 미사용 금액	(2)[만원 초과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368, 300	368, 300		
비		⑧1만원 이하	7,600	7,600		
		③현물접대비				
Ę		⑩계(⑦+⑧+⑨)	375, 900	375,900		
0	D계(©+0	0)	50, 980, 900	50, 980, 900		
	◎신용카 <u>-</u>	드등 미사용분(⑦)	368, 300	368, 300		
] [1] [1] [1] [1] [1] [1] [1] [1] [1] [1						
		(b) 368,3		368,300		
®3	5정대상	접대비 해당금액(⑩-⑭)	50,612,600	50, 612, 600		

「접대비」는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향응·위안·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을 말한다.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계산 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1)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

(?)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당해 과세기간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20%)
월수의 계산 :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수입금액별 적용률]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00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3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한도액 을 계산하여야 한다.

[각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 (당해 과세기간 월수/12) ×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합산액)
②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 적용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업종)에 의하여 판단하며, 2개이상의 사업장 중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과세기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개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 는 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 액 합산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 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 니한다.

(2) 문화접대비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

내국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추가 손비 인 정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인정]



추가 손비인정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접대비 지출 총액 × 3%)
- ② 일반 접대비 한도액 × 10%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3 조정등록 F4	복수사	업장 재계산 F5 삭제	●F5 전체삭제 F9 인쇄 F	표 저장 F12 불러오기		
1.접대비 입력 (1) 2.접대	비 조정 (2)						
2. 기준수입금액 내역		3 3.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중소	기업				
(19) 총수입금액 [(17)+(18)]	5,149,960,000			74		704	
(18)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		G 10.0	oo ooo (⊼ x ≂l0d xo ooo	下正) (조소기연 10,000,000) V 왕소(10) / 10			
(17) 일반수입금액	5,149,960,000	(4) 12,0	00,000 (중소기업 18,000	1,000) X 월구(12) / 12		18,000,000	
			초스이그애	100억원 이하의 금액 X 20 / 1		10,299,920	
		수인	0,807	100억원 조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X 10 / 10,000		
The second secon		1.8	기준	500억원 조과 금액 X 3 / 10,0	00		
복수 사업장	의 기준한도 재계산			×	·	10,299,920	
					000	10,299,920	
2개 이상:	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취	취계결정 및 공동사업·	장 제외)	액 X 10 / 10,000		
전대비	하도액 계산시	1.20094	원 (중소기업은 1.80)	1만원)은 1인 사업자가	1		
적요바	느 그애 이 리네 저희	1,000	산 (8호카랍산 1,66 산이 스이크애레니 다	의 티어자이 스마그에이		10,299,920	
462	는 금격으로서 신제	1 1123	3의 구립급극에서 당(게 사업장의 우립금격이			
차지하	는 비율로 안문되(거야 합L	니다.(소득령 제85조]	(함)			
					액	50,612,600	
당해 시	·업장을 제외한 티	사업장	의 총수입금액의 합계		(@ X 3 / 100)}		
						28,299,920	
				확인(Tab)	X 10 / 100) 중 적은 금액)		
						28, 299, 920	
		(@) 조전	대산 전대비 해당금액 [명	[네서(1)이 66]		50 612 600	
		(B) 전(H)	비하도초과액(砲-砲)	2 T T T OT		22 312 680	
		(16) 필	- · 근 포 프 · · · · · · · · · · · · · · · · · ·	비미지축애(@마 @ 주 저요 구애)	22,012,000	
		(10) <u>a</u>	표정에 근접 전도 에 합니			20,299,920	

[필요경비불산입]신용카드미사용접대비 368,300(기타사외유출)

[필요경비불산입]접대비한도초과 22,312,680 (기타사외유출)

[문화접대비의 내용]

①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
②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③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④비디오물 또는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⑤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⑥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⑦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구입
⑧여수박람회 입장권 구입



5.지급이자조정명세서

(1)사업용자산명세

사업과 관련된 것이 분명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을 기재한다. 투자부동산, 선박, 고정자산미수금, 대여금, 작업진행률미수금, 가지급금, 임의평가차익은 제외하며, 업무관련 건설공제조합증권, 국공 채등은 기재한다.

200	🔍 🗶 🔒 📳 🔹 지급	이자조정명세서(1,2)		[2048]개민기	1업 11기 2011년 01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 _ =
🎽 설정						메뉴탭 실행메뉴 스티
Esc 종료 F	1 도움 F2 코드 F3	조정등록 F4 계정코드	F5 삭제 255 전체식	제 F6 연일수 F7 정	[렬 F9 인쇄 F11 저장	
1.7	급이자조정명세서(2)	2.이자율별 차입금	금적수 등 3.업무택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5	
1.8	1업용 자산명세	2.부채명세	3.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4.초고	바인출금의 적수	
계정과목	1	2	3	4	5 🕨	- 0
(월별)	토지(20100)	건물(20200)	기계장치(20600)	차량운반구(20800)	비품(21200)	<i>A</i> I
1월	270,000,000	80,000,000	161,927,383	66, 340, 011	30, 226, 716	608,494,110
2월	270,000,000	80,000,000	161,927,383	66, 340, 011	30,226,716	608, 494, 110
3월	270,000,000	80,000,000	161,927,383	66, 340, 011	30, 226, 716	608,494,110
4월	270,000,000	80,000,000	161,927,383	66, 340, 011	30, 226, 716	608,494,110
5월	270,000,000	80,000,000	161,927,383	66, 340, 011	30, 226, 716	608,494,110
6월	320,000,000	80,000,000	161,927,383	66, 340, 011	30, 226, 716	658, 494, 110
7월	320,000,000	80,000,000	161,927,383	66, 340, 011	30, 226, 716	658, 494, 110
8월	320,000,000	80,000,000	161,927,383	66, 340, 011	30, 226, 716	658,494,110
9월	320,000,000	80,000,000	161,927,383	66, 340, 011	30, 226, 716	658, 494, 110
10월	320,000,000	80,000,000	161,927,383	66, 340, 011	30, 226, 716	658,494,110
11월	320,000,000	80,000,000	161,927,383	66,340,011	30, 226, 716	658,494,110
12월	320,000,000	78,000,000	150, 427, 383	61,340,011	26, 726, 716	636,494,110
계	3,590,000,000	958,000,000	1,931,628,596	791,080,132	359, 220, 592	7,629,929,320

(2)부채명세

부채의 합계란에는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를 기재하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과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및 건설 자금에 사용된 차입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	👽 🗶 🔒 🖪 🔻 Nह	라이자조정명세서(1,2)		[2048]개인기	업 11기 2011년 01월 0	1일 ~ 2011년 12월 31일 💷 😑 🗙					
실정						메뉴탭 실행메뉴 스타일 *					
Esc 종료 F	1 도움 F2 코드 F3	조정등록 F4 계정묘드	F5 삭제 ^{6,65} 전체식	7세 F6 연일수 F7 정률	[F9 인쇄 F11 저	장					
1.8	급이자조정명세서(2)	2.이자율별 차입금	금 잭수 등 3.업무택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등	5						
1.4	1.사업용 자산명세 2.부채명세 3.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4.초과인출금의 적수										
계정과목	1	2	3	4	5	-					
(월별)	외상매입금(25100)	미지급금(25300)	단기차입금(26000)	장기차입금(29300)		71					
1월	204, 222, 130	8,177,900	10,000,000	500,000,000		722, 400, 030					
2월	210,677,030	7,504,700	10,000,000	500,000,000		728, 181, 730					
3월	209,677,030	4,095,800	10,000,000	462,500,000		686, 272, 830					
4월	354,677,030	4,095,800	10,000,000	425,000,000		793, 772, 830					
5월	354,677,030	4,095,800	10,000,000	425,000,000		793, 772, 830					
6월	369,177,030	4,095,800	10,000,000	425,000,000		808, 272, 830					
7월	369,177,030	4,095,800	10,000,000	425,000,000		808, 272, 830					
8월	369, 177, 030	4,095,800	10,000,000	425,000,000		808, 272, 830					
9월	390, 527, 030	4,095,800	10,000,000	387, 500, 000		792, 122, 830					
10월	475, 161, 236	4,095,800	10,000,000	387,500,000		876, 757, 036					
11월	475, 161, 236	4,095,800	10,000,000	387, 500, 000		876, 757, 036					
12월	475, 161, 236	4,095,800	10,000,000	350,000,000		839, 257, 036					
계	4,257,472,078	56,640,600	120,000,000	5,100,000,000		9, 534, 112, 678					



(3)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임이 분명하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도 분명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	🗢 🗙 🔒 🖪 🔹 지급이	자조정명세서(1,2)		[2048]개인기업	11기 2011년 01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 _ =
 설정 						메뉴탭 실행메뉴 스타
Esc 종료 F1	. 도움 F2 코드 F3 조	정등록 [F4] 계정코드	F5 삭제 *F5 전체삭	제 F6 연일수 F7 정렬	F9 인쇄 F11 저장	
1.지;	급이자조정명세서(2)	2.이자율별 차입	금 적수 등 3.업무득	P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등	1	
1.4	업용 자산명세	2.부채명세	3.업무와 관련없는 :	자산의 적수 4.초과인	출금의 적수	
계적과목	1	2	3			전수
(월별)	투자부동산(18300)			계	일수	(계x일수)
1월	94,000,000			94,000,000	31	2,914,000,000
2월	94,000,000			94,000,000	29	2, 726, 000, 000
3월	94,000,000			94,000,000	31	2,914,000,000
4월	94,000,000			94,000,000	30	2,820,000,000
5월	94,000,000			94,000,000	31	2,914,000,000
6월	94,000,000			94,000,000	30	2,820,000,000
7월	94,000,000			94,000,000	31	2,914,000,000
8월	94,000,000			94,000,000	31	2,914,000,000
9월	94,000,000			94,000,000	30	2,820,000,000
10월	94,000,000			94,000,000	31	2,914,000,000
11월	94,000,000			94,000,000	30	2,820,000,000
12월	94,000,000			94,000,000	31	2,914,000,000
계	1,128,000,000			1,128,000,000		34, 404, 000, 000

(4)초과인출금의 적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 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본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 (당해과세기간중 초과인출금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 초과인줄금 = 부채의 합계액 - 사업용자산의 [긴줄금 = 부재	의 합계액 -	사업용사산의	합계액
------------------------------	----------	---------	--------	-----

200	👳 🗶 🔒 🖪 🕴 🎫 지급이자조	정명세서(1,2)	[2048]	개인기업 11기 2011년 01월 01	일 ~ 2011년 12월 31일 _ ㄹ >
✓ 설정 Esc 종료 F1	. 도움 F2 코드 F3 조정등	록 [F4]계정코드 [F5] 삭제	●F5 전체삭제 F6 연일수	F7 정렬 F9 인쇄 F11 저	메뉴탭 실행메뉴 스타일 장
1.ম	급이자조정명세서(2)	2.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등	3.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금	급이자 등	
1,사	업용 자산명세	2.부채명세 3.업무외	바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4.초과인출금의 적수	
월별	⑤부채의 합계	⑥사업용자산의 합계	⑦초과인출금 (⑤-⑥)	⑧일수	③적수 (⑦x◎)
1월	722, 400, 030	608, 494, 110	113,905,920	31	3, 531, 083, 520
2월	728,181,730	608, 494, 110	119,687,620	29	3, 470, 940, 980
3월	686, 272, 830	608, 494, 110	77, 778, 720	31	2,411,140,320
4월	793, 772, 830	608, 494, 110	185, 278, 720	30	5,558,361,600
5월	793, 772, 830	608, 494, 110	185, 278, 720	31	5,743,640,320
6월	808, 272, 830	658, 494, 110	149, 778, 720	30	4, 493, 361, 600
7월	808, 272, 830	658, 494, 110	149, 778, 720	31	4,643,140,320
8월	808, 272, 830	658,494,110	149, 778, 720	31	4,643,140,320
9월	792, 122, 830	658, 494, 110	133,628,720	30	4,008,861,600
10월	876, 757, 036	658, 494, 110	218, 262, 926	31	6, 766, 150, 706
11월	876, 757, 036	658, 494, 110	218, 262, 926	30	6,547,887,780
12월	839, 257, 036	636, 494, 110	202, 762, 926	31	6,285,650,706
계	9,534,112,678	7,629,929,320	1,904,183,358		58,103,359,772



(5)이자율별차입금 적수등

Esc 종료	F1 도움 F2 코	드 🖪 조정등록 🌘	F4 계정코드 F5	삭제 Ctrl 전체식자	l F6 연일수 F	/ 정렬 F9 인쇄	F11 저장				
1.지물	급이자조정명세서(2)	2.지급이자조정명세	서(1)								
0	자율별 차입금 적수	등 업무무관 :	자산에 대한 지급이지	15							
2 1.7	해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④지급	급이자 총액	⑥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비 이자	⑥건설자금의 이	자 (⑦지급이자(④-⑤	-©)			
4,500,000 500,000 1,800,000 2,200,000											
4.2	지급이자 및 차입금	금 적수 계산				※이자율정렬	[(F7) 일 수	: 366일			
1.000			채권자 불분명	한 차입금이자	건설자금	금 이자	초과인출	금 이자			
(18) 이자율 (%)	(19)지급이자	(20)차입금 적수	(21)지급 이자	(22)차입금 적수	(23)지급 이자	(24)차입금 적수	(25)지급 이자	(26)차입금 적수 (
8.6000	1,500,000	6,383,720,930	500,000	2,127,906,976			1,000,000	4,255,813,954			
7.0000	3,000,000	15,685,714,285			1,800,000	9,411,428,571	1,200,000	6,274,285,714			
	-										
합 계	4, 500, 000	22,069,435,215	500,000	2,127,906,976	1,800,000	9,411,428,571	2,200,000	10, 530, 099, 668			
								>			

[필요경비불산입]채권자불분명이자 500,000(상여) [필요경비불산입]건설자금이자 1,800,000(유보) [필요경비불산입]초과인출금이자 2,200,000(인출)

①지급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의 이자, 초과인출에 대한 지급이 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순으로 조정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다 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 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기재한다.

③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보다 클 때 그 초과하는 부분과, 업무와 관련 없 는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보다 클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6.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3 조점등록 F4	·카로축소 F5 삭제 🕵	· 전체삭제 F7	원장조회 F8 잔액:	조회 [F9] 인쇄 [표 저장					
1. 재고자산 평가방법	검토					기타자산명입	벽하기				
4.자산별	5.신고일	6.신고방법	7.5	평가방법	8.비고						
제 품 및 상 품	2010-05-31	선입선출법	선	입선출법							
반제품및재공품	2010-05-31	선입선출법	선1	입선출법							
원 재 료	2010-05-31	총 평 균법	杏	평 균법							
저 장 품											
2 8 평가조정 계산											
0.718					본인계·	살맥		조정계신	난금액		20.조정액
9.44	10.품명	11.규격	12.단위	13.수량	14. EF74	15. 15.	신고병	1월 - 고아비	선입	선충법	(17과 19충 큰 금액)-15
1 0146 상품				1.000	392,000	392,000,000	16.단가 392.000	392,000,000	18.단가	19.금액	
2 0150 제품				63, 624, 278	5	318, 121, 390	5	318,121,390			
3 0169 재공품				15,000,000	3	45,000,000	3	45,000,000			
4											
		_									
		계				755, 121, 390		755,121,390			

- (1)재고자산 평가방법 검토의 경우, 신고방법란은 본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 법을 기재하고, 평가방법란은 본인이 실제로 평가한 방법을 기재한다.
- (2)평가조정계산의 경우, 과목란 및 품명란은 자산별로 기재하고, 규격란 및 단위란은 재고 자산수불부상의 내용에 의하여 기재한다.
- (3)본인계상액난의 금액은 결산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4)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하여 단가란과 금액란을 기재한다.
- (5)조정액란은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신고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 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과 본인계상액난의 금액과의 차액을 기재하되, 조정액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6)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합계액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품목별 계산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비치하고, 과목별 자산별 합계액으로 작성할 수 있다.

7.선급비용조정명세서

[불러오기]

료드 계정과목명 코드 구분등록명 ^{기간계산원식} 금액한영 1821 보험료 2 선급 보험료 양편산입 지급액 1951 이자비용 1 미경과 이자 한편산입 지급액	7	예정과목	계	정구분등록			
D821 보험료 2 선급 보험료 양편산입 지급액 D951 이자비용 1 미경과 이자 한편산입 지급액	코드	계정과목명	코드	구분등록명	기간계산원식	금액반영	
0951 이자비용 1 미경과 이자 한편산입 지급액	0821	보험료	2	선급 보험료	양편산입	지급액	
	0951	이자비용	1	미경과 이자	한편산입	지급액	

계정과목: 불러오고자 하는 계정과목을 선택(비용, 선급비용등) 계정구분등록: 불러와서 계정구분에 세팅하고자 하는 계정과목을 선택(선급보험료, 미경과



이자, 선급임차료)

기간계산원칙: 초일과 말일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선택한다.(보험료만 초일과 말일 모두 산 입한다)

금액반영: 메뉴의 지출액 또는 선급비용란에 반영여부를 선택한다.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3] 조정	등록 <u>F4</u>	계정극	P분등록 F5	삭제 Ctrl 전	체삭제 🕞 단수치	러 🚽 🔽 원장조회	F9 인쇄 F11	저장 [F12] 볼러오기
계정구분	일자		거래내됟	<u>}</u>	거래기	4	대상 시작일	기간 종료일	지급액	선급비용	회사계상액	필요경비불산입액
미경과 이자	02-19	차	입금이자	지급	국민은행		2012-07-01	2013-06-30	1,500,000	745,879	745, 879	
선급 보험료	03-01	건님	물화재보험	보료	화재보험		2012-07-01	2013-06-30	1,380,000	684,328	684,328	
선급 보험료	03-25	보	증보험료	납부			2012-07-01	2013-06-30	3,500,000	1,735,616	1,735,616	
미경과 이자	04-19	차	입금이자	지급	국민은행		2012-05-01	2013-04-30	1,500,000	494,505	494,505	
선급 보험료	04-20	차	량보험료				2012-10-01	2013-09-30	3,500,000	2,617,808	2,617,808	
선급 보험료	05-11	호)기	해보험료	납부			2012-10-01	2013-09-30	2,000,000	1,495,890	1,495,890	
미경과 이자	06-19	차	입금이자	지급	국민은행		2012-10-01	2013-09-30	1,500,000	1,125,000	1,125,000	
선급 보험료	07-11	호!기	내보험료	납부			2012-10-01	2013-09-30	2,000,000	1,495,890	1,495,890	
선급 보험료	09-11	화7	새보험료	납부			2012-10-01	2013-09-30	2,000,000	1,495,890	1,495,890	
미경과 이자	09-19	<u>۲</u>		~ 1. 1	20.040				=00.000	375,000	375,000	
선급 보험료	10-11	호	물러오기							1,495,890	1,495,890	
선급 보험료	11-11	호		비전고	1.2	- 11	저그너드로	T		1,495,890	1,495,890	
선급 보험료	12-11	호	코드	11:31 계	·ㅋ 정과목명	코드	구분등록명	기간계산원	칙 금액반영	1,495,890	1,300,000	195,890
			0821	보험	험료	2	선급 보험료	양편산입	지급액			
			0951	0 2	자비용	1	미경과 이자	· 한편산입	지급액			
·			TIP계정교 코드도움(목코! F2)	드를 입력하k 삭제(F5)	∥ଛ. (F	2-코드도움)	확인	!(TAB) 취소(ES	2)		
				합	계				25, 380, 000	16, 753, 476	16,557,586	195,890

[필요경비불산입] 선급비용 195,890(유보)

(1)계정구분란 :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미경과 지급이자,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등으로 기재한다.

(2)적요란(서식) : 총지급액 및 지급기간 등 계산근거를 기재한다.

8.외환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이 서식은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평가차손익이 발생한 사업자가 작성한다.

외화의 종류별로 평가차손익을 계산하되, 장부가액 기장시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장부가액(기초)은 외화자산·부채별로 직전 과세기 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재한다. 장부가액(기말)은 외 화자산·부채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재한다.

평가차손익조정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산입, 외화부채는 필요경비산입하고, 음수(-)인 경우 외화자산은 총수입금액불산입, 외화부채는 필요경비불산 입한다.



	· · · · · · · · · · · · · · · · · · ·	A이히그애	장부가?	색(기초)	장부가역	백(기말)	⑩평가손익
	영피와공슈(사산)	@피작드크	ⓒ적용환율	⑦원화금액	③적용환율	③원화금액	자 산(⑦-⑨)
1		10,000	1,100	11,000,000	1,150	11,500,000	-500,000
	합 계	10,000		11,000,000		11,500,000	-500,000
	· · · · · · · · · · · · · · · · · · ·	@ 이 ㅎ! 그 아!	장부가?	백(기초)	장부가역	백(기말)	⑩평가손익
	④피와금규(구세)	· · · · · · · · · · · · · · · · · · ·	ⓒ적용환율	⑦원화금액	③적용환율	③원화금액	부 채(⑦-⑨)
1	USD	8,000	1,020	8,160,000	1,150	9,200,000	-1,040,000
2							
	한 계	8,000		8,160,000		9,200,000	-1.040.000

[총수입금액산입]외화평가이익 540,000(유보)

8.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나, 사업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래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사업소득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소득세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해당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공동 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②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u>m</u>ayzyz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i)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ii) 거주자의 직계비속(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중에 출산한 자 포함)과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iii)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iv)「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v)「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1.기부금명세서

조특법상의 기부금은 2011년 6월30일까지이고, 그 이후는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니 유의 하여야 한다.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	3 조정등록 F5	삭제 ♥F5 전체삭	제 F7 원장조회	F8 전	반액조회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리	범오기	
1.기부금 1	입력	2.기부금 조정	1								
1.해당연도	기부 명	세							구분만 별도 입력	하기	유형별 정렬
구분		07		7 2	부처	1		12.기부지	ł		13.기부내역
7.유형	8.코드	9.2	구네공	10.상호(법인명)	11.사업자번호등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금액
지정	40	금전		좋은단체	123-81-21350	거주지	ł(본민)	한성민	780523-2112420	1	4,500,000
	1	1			공제대실	기부금				T	고파파이기보고
기부자구분	-	통 계	법정기부금 (10)	정치자금기 (20)	부금 종교단/ 기부:	해외지정 금(40)	R10	교단체지정 기부금(41)	우리사주조 기부금(42)	합	공제제되기구급 (50)
합 계		4,500,000				4,500,0	100				
본 인		4,500,000				4,500,0	000				
배우자											
지계조소				-			-			-	
형제자매										1	
그 외											
2.기부금 조	정 명세										크 게
기부금코	2⊆	기부연도	14.기부금액	15.전년까지 공제된 금역	16.공제대 역 (14-1	상금액 5)	해당연	도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 소멸금액	정제받	지 못한 금액 이월금액
40		2012	4, 500, 000)	4,	500,000		4,500,000			
	계		4,500.00)	4.	500.00N		4.500.000			



2.조정명세서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3 조정등록 F5	삭제 🗧 🗗 전체삭제 📑	7 원장조회 F8 잔액	『조회 F9 인쇄	F11 저장 F	12] 불러오기		
1.기부금 입력 2.기부금 조정							
1.소득금액확정					수	ਬ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 총수입금액산입	3.총수입금액불산입	4.국가등,지정기	부금 5.이원	벌결손금	6.소득금액계(1+2-	3+4-5)	
1,399,679,060 108,197,304	400,000,0	000 4,50	00,000		1,112,	376,364	
2 2.법정기부금 등 필요경비산입한도액 계산				코드10 법	정 코드20 정	末	
11.기준소득	1,112,376,3641	5.소득세법 제34조제	비2항 기부금이월?	백 중 필요경	비산		
12.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 해당금액	1	입액[(12-13) <17]인	경우 MIN[17-(12	2-13),61합계	액]		
13.조특법 제76조 기부금 해당금액	1	6.소득금액 차감 잔	액 (11-14-15)		1,112,3	376,364	
[14.필요경비산입액 [MIN(12+13),11]	1	7.법정기부금 등 한.	도초과액 (12+13-	-11)			
3.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필요	경비산입한도액 계산	경비산입한도액 계산 코드30 조특법73조					
21.조특법 제73조 기부금 해당금액		24.조특법 제73조 기 경비산입액(21 〈22)인	부금이월액 중 필 빈 경우 MIN[(22-2	요 21),61합계액	1		
22.한도액 (16X50%)	556,188,182	25.소득금액 차감 잔	액 (16-23-24)		1,112,5	376,364	
23.필요경비산입액 [MIN(21,22)]	2	26.한도초과액 (21-2	2)				
4 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	부금 필요경비산입한5	E액 계산			코드42 우리	사주	
31.조특법 제88조의4 기부금 해당금액	0	34.소득금액 차감 잔	액 (25-33)		1,112,3	376,364	
32.한도액 (25X30%)	333,712,909						
33.필요경비산입액 MIN(31,32)							
5 5.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한도액 계산				코드40 지	정 코드41 종	ī.	
41.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해당금액	4,500,0004	15.필요경비산입액 [MIN(43,44)]		4,5	500,000	
42.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해당금액	4	16.지정기부금 한도최	토과액 (43-44)				
43.지정기부금 해당금액 (41+42)	4,500,0004	17.지정기부금이윌액	중 필요경비산입	액	21	100 000	
44.지정기부금 한도액 (ㄱ 또는 ㄴ)	333,712,909 (.43 (44)인 경우 MIN	[(44-43), 61합겨	[액]			
ㄱ.종교단체에 기부금액 있는 경우 34×10%+ [MIN(34×20%, 종교단체외에 지급한금액]							
ㄴ.종교단체에 기부 금액이 없는 경우(34×30%)	333, 712, 909						
6 6.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액							
51.기부금 합계 (12+13+21+31+43) 52	.필요경비산입 합계 (14+23+33+45)	53.한도초과역	백 합계 (51-	52)=(17+26+35+46)		
4,500,000		4,500,000					
7 7.기부금 이월액 명세 (15, 24, 47란에 필요?	경비로 산입할 기부금이	이월액을 과세기간별	· 기부금 종류별회	린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과세기간 여 월 일 ~ 여 월 일	기부금종류	61.이윌액잔역	62.해당 백 필요경	과세기간 비산입액	63.다음 과세기간 (61-62)	이월액	
2011 01 01 ~ 2011 12 31 종교	단체외지정기부금	2,000	0,000	2,000,000			

08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계산



소득금액및과세표준계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조정계산서 소득구분계산서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계...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1.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소득금액조정에 대한 방법을 조정과목사용, 직접등록중에 선택하여 조정한다.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3]조정등록 F4 조정코드	F5 삭제 F6	6 <mark>직접입력</mark> F7 원	원장조회 F8 잔익	백조회 F9 인쇄	F11 저장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및 총수입금	액불산입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소득세등	25,835,000	기타사외유출	퇴직연금납영	입		320,000,000	유보
간주임대료	500,000	기타사외유출	이자수익			50,000,000	기타사외유출
제품매출누락	30,000,000	유보	배당금수익			30,000,000	기타사외유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8,000,000	유보					
대손부인액 😐	1,000	<u>○</u> 日		자사간소 보채이	주가시 필요경비사	인민초수인금	대봉사인처리
대손충당금한도초과	10,340,130	유보			officienci ic	Exerec	
대손충당금과소환입액	3,604,304	추인		L	1]
신용카드등미사용액	368,300	기타사외유출					
접대비한도초과	22,312,680	기타사외유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500,000	상여					
건설자금이자	1,800,000	유보					
초과인출금이자	2,200,000	인출					
선급비용과소계상	195,890	유보					
외화평가손익	540,000	유보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유보					
자산증가, 부채감소시 총수입금	액산입및필요경비불산입	처리					
합 계	108, 197, 304			합 계		400,000,000	
소득명세 5							

(1)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조정사항과 기타 총수입금
 액 및 필요경비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
 거를 첨부한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조정계산서에서 직접기
 재)하고 당기순이익과 소득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산입 유형을 요약 하여 기재한다.

(3)처분란은 배당, 상여, 유보, 추인,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인출로 구분하여 기재한 다.

(4)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합계와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합계는 조정계산서에 각각 옮겨 기재한다.

(5)소득명세(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는 다.

2.유보소득조정명세서

(1)이 서식은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중 당기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산입(필요경비 불산입)사항 또는 필요경비 산입(총수입금액 불산입)사항의 증감내역을 기재한다.

(2)기초 잔액란 : 전년도말 현재의 기말잔액을 기재한다. 기초잔액에 대손충당금한도초과, 재고자산평가감·증, 선급비용, 미수수익등이 있으면 자동추인을 고려한다.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4 조정코드 F5 삭제 ●F5	5 전체삭제 F6 행 아래	삽입 F7 원장조회	F8 잔액조회 F9 인쇄	FIL] 저장 F12 불러오기
\geq	세무조정유보소득 계산					
	①과목 또는 사항	@기초잔액	당기중	중감 @주가	⑤기말잔액 (=②-③+④)	비고
1	대손부인액		08 1	1,000	1,000	
2	대손충당금과소환입액	3,605,304	3,604,304	195,890	196,890	
3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8,000,000	8,000,000	
4	건설자금이자			1,800,000	1,800,000	
5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2,000,000	
6	건설자금이자			1,800,000	1,800,000	
7	외화자산평가이익			540,000	540,000	
8	매출누락			30,000,000	30,000,000	
9	선급비용과소			195,890	195,890	
10	퇴직연금	-320,000,000		-320,000,000	-640,000,000	
11						
	합 계	-316, 394, 696	3,604,304	-275,467,220	-595, 466, 220	

(3)당기 중 감소란 : 전년도말 현재의 유보금액 중 해당연도 중에 필요경비산입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재한다.

(4)당기 중 증가란 : 해당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유보로 처분된 금액을 기재한다.
(5)기말 잔액란 : 기초잔액에서 당기 중 증감란을 차가감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될 유보소득 을 기재한다.

3.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3)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4)주업종 코드: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한다.

(5)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을 기재한다.

(6)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및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란: 소득금 액조정합계표상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에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 득 구 분 40 30	. 부동산	임대업이	배서 발상	생한소득 4). 부동산임대	업외의 사업소득	성실	실사업자 0	0.부 1.여
대리구분 1	기장	2, +	신고	3. 자기조정					
구			ŧ	£			금	액	
10. 결 (난서 상	당 기	순이	의					1,399,679,060
사트지저그애	11.	총수입금	금액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108, 197, 304
소득소성금식	12,	필요경비	비산입 달	및 총수입금액	불산입				400,000,000
13. 차 3	가 감 :	소 득	(10+11-	-12)					1,107,876,364
14. 71	부금	한 도	초 과	액					
15. 기부	금이월액	중 필요	2경비산	입액					2,000,000
16. 해당	과세 기	간 소득	(13+14-	-15)					1,105,876,364
세무대리 구분	1		ы	. 세 무 디	리인		2. 타세무대리	(세무/회계법인	!)인 등록
17. 성 명			김잘난		18.	전 화 번 호	0:	2 - 3270 - 629	92
19. 관리번호	U		2269	- 8	20.	조정반 번호	서울청	=	2269
무/회계법인 구성원작성분		0. 부		1. 여	사업	자 등록번호		107-86-09515	

(7)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상의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4.소득구분계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 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사업자는 이 표를 작성한다.

(1)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한후 불러오기하여 내용을 반영한다. 그런 다음에 매출액과 매 출원가를 합계란에 입력후 다시 감면분과 기타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판관비,영업 외손익, 이월결손금,비과세, 소득공제등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이경우는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상의 금액이 반영되기전의 순수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2	상면분 또는 준비	<u> 금</u> 해당분				
④과목	표준손익계산서	⑥구분	©합계	서울사업장(면세)	명	칭은 직접 입력				기타분	
				· ⑦금액	⑧비율	⑦금액	⑧비율		⑧비율	③금액	@비율
l 매출액	5,119,960,000		5,119,960,000	3,000,000,000	58,59					2,119,960,000	41.4
Ⅱ 매출원가	2,765,367,620		2,765,367,620	1,200,000,000	43.39					1,565,367,620	56.6
Ⅲ매출총손익 { - }	2,354,592,380		2,354,592,380								
		개별분	420,000,000	250,000,000	59.52					170,000,000	40.48
IV판매비와 관리비	1,003,128,320	공통분	583,128,320		P						
		계	1,003,128,320		매출액	, 매출원가, 개	별분				
∀영업손익 {Ⅲ-I¥}	1,351,464,060	1	1,351,464,060		이월결	손금,소득공제	는 직접입	4			
		개별분	40,000,000	30,000,000	75.00					10,000,000	25.00
VI영업외 수익	87,750,000	공통분	47,750,000								
		계	87,750,000								
		개별분	15,000,000	7,000,000	46.67					8,000,000	53.33
VII영업외 비용	39,535,000	공통분	24,535,000								
		계	39,535,000						0		
V⊪ 초 정 소 득 { V +V[-V⊪}	1,399,679,060		1,399,679,060								
IX이윌결손금			5,000,000	5,000,000	100.00						
X조특법상 소득공제	신고서상의 금액		3,000,000	2,000,000	66.67					1,000,000	33.33
X 차감후 소득금액 (VW-IX-X)	1,399,679,060		1,391,679,060		8						

(2)세무조정소득구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세무조정사항을 불러와 표준손익계산서 항목에 반영하여 정확 한 세무상 금액으로 조정하는 절차이다. 주의할 것은 세무조정상의 성격이 매출액인 지, 판관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한후 조정한 항목이 감면과

기타의 공통분인지, 아니면 감면에서만 발생한것인지를 선택하여 반영한다.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S 삭제 Ctrl	전체삭제	F6 재계신	· F7 원경	당조회	F8 2	·액조회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0	.표준손익계산서구분경리	2.세무조정소득구분	3.공통손역	니의 안분기	준 4.표준 (솔익/세5	루조정 -	구분명세조회	5.소득구분계산서
2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	경비불산입	1	소득시	네동은 영업	외비용	으로 처	2	과목해제
	과목명	금액	과목선택	구분선택	감면선택	종류		소득처분	유보발생
8	신용카드등미사용액	368,30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9	접대비한도초과	22,312,68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10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500,000	영업외비·	공통분	해당없음			소득내용	
11	건설자금이자	1,800,000	영업외비·	공통분	해당없음				
12	초과인출금이자	2,200,000	영업외비·	공통분	해당없음				
13	선급비용과소계상	195,890	판매비와	공통분	해당없음			과목선택	1:매출액, 2매출원가, 3:판매비와관리비,
14	외화평가손익	540,000	영업외수	공통분	해당없음				4.영업지수익, 5.영업지미용, 5.여영없습
-15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영업외비	공통분	해당없음		-	구문선택	1:개말문, 2:공동문, 3:해당없음
16						추가		김번선택	1:2면문1, 2:감면문2, 3:감면문3, 기타분, 5:해당없음
								/	
2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	금액불산입						1.5	ミ그애ㅈ저하게고에 기계하지 아그 지저
	과목명	금액	과목선택	구분선택	감면선택	종류		소문체 조장	
1	퇴직연금납입	320,000,000	판매비와	개별분	감면분1			과목	록추가하여 기재(한도초과는 상단,이월손금산입은 하단)
2	이자수익	50,000,000	영업외수	공통분	해당없음				
3	배당금수익	30,000,000	영업외수	공통분	해당없음			소득내용	
4	기부금이월손금산입	2,000,000	영업외비·	공통분	해당없음	추가			
5						추가			
								과목선택	1:매출액, 2:매출원가, 3:판매비와관리비, 4:영업외수익, 5:영업외비용, 6:해당없음
-								구분선택	1:개별분, 2:공통분, 3:해당없음
								감면선택	1:감면분1, 2:감면분2, 3:감면분3, 4:기타분, 5:해당없음



(3)공통손익의 안분기준



세무조정소득구분에서 공통의 체크한 사항을 세 번상 안분기준에 의해 감면과 기타분 으로 나눠주는 난이다.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4)표준손익/세무조정구분명세조회

앞에서 조정한대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조회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메뉴이다.



(A) LP	그브	074	্রিকা সা	니우니어자(머네)	2	J면분 또는 준	비금해당분			기타분	
연파력	ΤĽ	WTE	011	· · · · · · · · · · · · · · · · · · ·	©HI क	ന ാ വം	ା ଆ କ	の二つり	ଭାମାଳ	<u>କ</u> =୦୩	MH B
I매출액	표준손잌계산서		5,119,960,000	3.000.000.000	58 59		0012	~ ~		2,119,960,000	41 4
	세무조절		30,000,000	30,000,000	100.00						
	л <u>1</u>	-	5,149,960,000	3.030.000.000	100.00					2,119,960,000	
II 매출원가	표준손익계산서		2,765,367,620	1,200,000,000	43.39					1,565,367,620	56.6
	세무조정										
	계		2,765,367,620	1,200,000,000						1.565.367.620	
	표준손익계산서		2,354,592,380	1,800,000,000						554,592,380	l.
Ⅲ매쯀총손익	세무조정		30,000,000	30,000,000							
{ - }	Л		2,384,592,380	1,830,000,000						554,592,380	
IV판매비와 관리비	표준손익계산서	개별분	420,000,000	250,000,000	59,52					170,000,000	40.48
		공통분	583,128,320	294,363,176	50.48					288,765,144	49.5
		계	1,003,128,320	544,363,176						458,765,144	
	세무조정	개별분	320,000,000	320,000,000							
		공통분	-44,822,304	-22,626,299	50.48					-22,196,005	49.52
		계	275,177,696	297,373,701	0000000					-22,196,005	
	표준손익계산서		1,351,464,060	1,255,636,824						95,827,236	
¥ 8컵폰팩	세무조정		-245,177,696	-267,373,701						22,196,005	
{ - ¥ }	계		1,106,286,364	988,263,123						118,023,241	
VI영업외 수익	표준손익계산서	개별분	40,000,000	30,000,000	01					10,000,000	
		공통분	47,750,000	28,096,100	58.84					19,653,900	41.16
		계	87,750,000	58,096,100						29,653,900	
	세무조정	개별분			0						
	94 (47 - 462 6	공통분	-78,960,000	-46,460,064	58.84					-32,499,936	41.16
		계	-78,960,000	-46,460,064						-32,499,936	
VII영업외 비용	표준손익계산서	개별분	15,000,000	7,000,000						8,000,000	
		공통분	24,535,000	12,385,268	50.48					12,149,732	49.52
		계	39,535,000	19,385,268						20,149,732	
	세무조정	개별분									
		공통분	-30,335,000	-15,313,108	50.48					-15,021,892	49.52
		계	-30,335,000	-15,313,108						-15,021,892	
에 초 전 소 드	표준손익계산서		1,399,679,060	1,294,347,656						105,331,404	
	세무조정		-293,802,696	-298,520,657						4,717,961	_
{ y + y1 - YII }	계		1,105,876,364	995,826,999						110,049,365	-
IX이윌결손금			5,000,000	5,000,000	조정계신	·서상의 16.8	당과세기간	소득과 일치해이	ᆙ 함		
X 조특법상소득공제			3,000,000	2,000,000		mand the second	and the second second	and the second		1,000,000	
X 차감후 소득금액 {VIII-IX-X}			1,097,876,364	988,826,999						109,049,365	

(5)소득구분계산서

최종적으로 확인후에 인쇄하는 메뉴이며 이서식의 차감후소득금액이 조정계산서의 해 당과세기간소득과 불일치하면 합계의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편집이 가능**하다. 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기재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 서를 첨부한다.

1.표준손익계산	서구분경리	2.세무조정소득구분	8.공통손익의	안분기준	4.표준손익/	세무조청 구분	문명세조회 5	.소득구분계	산서				
								앞의	의 과정없이 직접 성하고자 하는 경	우 클릭	편집		
				2	招분 또는 준	비금해당분					-		
④과목	⑤구분	⑤구분	⑤구분	⑥합계	서울사업장(면세)						기타분		비고
		-	⑦금액	⑧비율	⑦금액	⑧비율	⑦금액	⑧비율	· ③금액	()비율			
l 매출액		5,149,960,000	3,030,000,000	58.84			10-10-10 A 10-00		2,119,960,000	41.16			
Ⅱ 매출원가		2,765,367,620	1,200,000,000	43.39					1,565,367,620	56.61			



5.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

		1.44	9171946	1/ 11 01)				ша		104 00 1105	(Ling		1000		000.00	
2	동 종 나업장	1.8오	서운 도	시작답기 대부구 시설!	S 700	4	사업사공목	인오		104-03-1125		4.、 11 不	/11 김 달 :어조ㅋㄷ	2	2002-03-	
F	비표고로	5.선명	하셨민		8 100	F	: 즈미동로:	Нö		780523-21124	20	8 7	비하버우	1	-	-
5	사업 장	7.주소	서울 동	대문구 장안!	동 52						13.1	과세기간	2012-01-	-01 -	2012-12-31	
9.	소득구분	40 30.부동산	40.사업	10.전환정비	사업조합원등	2 1	12.신고유혈	코드 12	11.자	기조정 12.외	조정 13.성실님	14	4.성실신고 20.	간편장부	31.기준	율 32.단순월
\$	수입금액	14.직전과세기	간 15.해' 5,	당과세기간 149,960,000	16.필요경비	4,044,083,636 ^{17,소득} (15-1			금액 16) 1,105,876,364 주민(4 주민등록번호 ◀ ┃	중복	록 중복체크 차액		형 출자7	지분율 자릿수
		공동사업자		20 부배						소득금액 등 분배;			분율이 큰 시	업자에거	로 차액	이 자동배분
	18.성	명 19.주민용	등록번호	비율(%)	21.수입금역	뫡	필요경비		22.	소득금액	23. 가산세		24.소득시	원천징수 득세 2		특세
1	한성민 기고도	780523-3	2112420	58.00 42.00	2,986,976,	800	300 2,345,568 200 1 698 515		6- /1	41,408,292			6,496,000 4 704 000			
3				분배율을 소득금역 역산된다	을 입력하면 신 백이 자동배분5 나.	고서: 티며,	상의 수입금 필요경비는	금액과 = 둘과의	차이로				394.04 			
							27-213-24									
		합 계		100.00	5,149,960,	UUO	4,044,0	J83,636	1,1	U5,8/6,364			11,200	1,000		
	공동사업 공동사업	총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1,105,87	76,364 50,000	출지 출지	사지분 차여 사지분 차여	21 21			0.00 0.00	소득 수입·	금액 차액 금액 차액			

(1)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30)"에, 그 밖의 사업소득은
"(40)"에 "○"표시를 한다.

(2)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주택 법」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 1"에 "○"표시를 한다.

(3)신고유형코드: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시를 한다.

자기조정(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3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13
 관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4)과세기간: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 산서상의 과세기간개시일과 과세기간종료일을 기재한다.

(5)총수입금액 :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한다.

(6)필요경비: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기재한다.

(7)소득금액: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 해당 연도 필요경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 재한다.

(8)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지급명세서미제출・지연제출가산세)・계산서 관련 가산

세·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공동사 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 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에 따른 가산세액을 기재한다.

종합소득세신	고서		
신고서			
교지 산고서 사고서(단수경비율))			
으고지(근근증비를기 영명세서 프제제액화극시청서			
산서 년(소득공제용)			
객계산서 라리			
 루서 랔부서			
	왕 압 소 득 세 신 실고서 신고서 신고서(단순경비율) 영명세서 공제세액환급신청서 산서 네(소득공제용) 객계산서 관리 부서 납부서	종 압 소 득 세 신 고 서 ¹ 고서 신고서 신고서(단순경비율) 영명세서 광제세액환급신청서 산서 (소득공제용) 객계산서 란리 부서	종 압 소 득 세 진 고 서 ¹ 고서 신고서 신고서(단순경비율) 영명세서 광제세액환급신청서 산서 (소득공제용) ^객 계산서 란리 부서

1.소득공제신고서

161	먹,조득중세 [2금 덕공제항목(유의사형	서국공세 산 : 부양:	· · · · · · · · · · · · · · · · · · ·	·세미 독일 각 소득공제탭	물공제 에 입력된 지출	특별공세 II 1억을 재진기	비 하셔야 한	합니다.)	세력공		직접인	력	
-	여막과계	1 0.0000	선명	내/외국인 주	민(외국민)버호	기본공제	세대주구통	루 부녀자	견로우대	잔애인	축사인얀	6세이하	다자녀
I	.본인		한성민	1.내국인 7	80523-2112420	1.본인	1.세대주	0	0			S 11 1 1	- Alexandre
2	.배우자		김성수	1.내국인 7	50522-1538331	2.배우자	and the second sec						
2	,직계비속(자녀·입	양자)	김태기	1.내국인 07	81124-3333311	3.20세이ㅎ						0	
X.													
						ti:		2	_				
			합 계 [명]			3	1	1				L.	
지	출액명세									지클	· 화액반영 자	(출액반영	년 활용:
	소득공제항목		소득공제별] 구분	7	세청자료		7 E	다료			합계	
	1.보험료	1.일반5	코장성보험			65	50,000		360),000	/	1,0	D10,000
	2,의료비	1.본인.	65세이상자. 장	했인 의료비		34,00	JO, OOO		120	,000		34,1	120,000
1													
-								/					
							/	X 7	출액반영	클릭시	지출액명세	의 항목이	하단의
1						/		-	82=51	18국에	만영컨니.		
	통소득공제항목												
각		and the second s	301.0000	100000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각		성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 (선불 학	원비지로	현금영	수증	전통시장/	나용	기부금
각 ㅈ	F료구문 모델		34,000,000	1									
각자	F료구문 모활 국세청	650,000	34,000,000										
자	F료구분 모환 국세청 기타	650,000 360,000	120,000										
각 자 ·	F료구문 모 국세청 기타 국세청	650, 000 360, 000 350, 000	120,000	3,200,0	00								



보	월 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포함하여 기재한 다.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한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u>_</u>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한다.
료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및 공제	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금액	나. 치료・요양을 위하여「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한다) 및 의료기기(「의료기 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여야 한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 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е н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 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학교 수강료(초・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국외교육비 등을 말한다.
112	UI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한다.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한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 금액은 월세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 자금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한다.
	장기주택 저당차입 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한다)을 기재한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 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וכ	미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기재한다. 1. 법정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종합소득금액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 부금) × 30% 3.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 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연금저축공	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의 400만원까지입니다. 해당 공제를	백(「소득서 신청 시(네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에는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택마련저를 제	축공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인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이 서식	년 12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된다. 계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기업・소성	상공									
~ 공제부금소득 제	특공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	300만원 등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한다.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리	사 중소기업	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한다.						
투자조합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줄사공세	공제	2008년 이전 출자・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9년 이후 출자・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30%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	발급한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 사용금액을 말한다]을 기재한다. - 고객회의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2. 다른 거주자의 기존경제를 적 포함된다. 다만, 연간소득금의	평일지 이 법이 100만	니안 매우자와 정계를 짙이하는 적계끈미족의 사용음액도 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						
시요카드		 공제금액: ①+②+③-④에 해5 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 추가 공제한다) 	당하는 금 는 경우 현	액(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0	①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ē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30%						
10,4		②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	시장사용违	른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③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20%	등사용금역	깩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선불카드사용분)×						
		④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	l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2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용카드사용분)× 30%	25%) > 신	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20% + (최저사용금액-신						
우리사주출(소득공제	견금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	소득공제한다.						
장기주식형기 소득공제	더축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상의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현	작성방법 한다.	및 안내사항 참조.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 연금·저축 등						
고용유지중: 업 근로자 : 공제	소기 소득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 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하는 상시 금액을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	제	①외국납부세액과 ②산출세액에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국외원천: 금액	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부정치자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에 따라 ? = 그 기부	청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참고1]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공제

①보험료공제 ②의료비공제 ③교육비공제 ④주택자금공제
⑤신용카드공제 ⑥주택마련저축공제(조특법상공제)

[참고2]근로제공기간 이전 또는 이후것도 공제가능한 소득공제 - 월할공제안함

①기부금공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개인연금저축공제 ④연금저축소득공제
⑤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⑥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⑦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2.종합소득세신고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한 다)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한다)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 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 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 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 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금액명세

Esc 종료 F2 코드 F3 마감 F	4] 정렬 F5 삭제 👯 전체	비삭제 F6 추가입력 F7	미납일수 [F8] 무기장가산/	세 (대) 성실미제출가산세 (F9 인쇄 F11 저장 F12 조희
1.소득금액명세 2.이월결	[손및공제] 3.원천장수.준	비금 4.소득공제명세서	5.가산세명세서 6.4	주택매매등계산 7.금융소득	특계산 8.종합소득계산
신고유형: 2 1.자기조정 2 외	부조정 3.성실납세 4.간편	장부 5.추계-기준 6.추기	예-단순 7.비사업자 8.성	실신고 대리구분: 1 1.	기장 2.조정 3.신고 4.확인
기장의무: 1 1.복식부거의무	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이신고열	자,거주지국등의 입력은	F6-추가입력에서 합니다.	근로필요경비내역
이자소득 50,000,000	배당소득 33,300),000 공동배당	근로소득		
부동산 463,106,439	사업소득 641,408	3,292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	소득 1,187,814,731
	1	2	3	4	5
1.소득구분코드 -일련번호	11 - 1	21 - 1	30 - 1	40 - 1	
2.신 고 유 형 코 드			12.외부조정	12.외부조정	1
3. << 관련회사코드 >>			3000	2048	
4.상 호 or 법인명	이자잘주는은행	배당잘하는기업	(주)부동산	개인기업(사업)	
5.사업자 등록 번호	412-81-54106	105-87-32394	105-87-32394	104-03-11251	
6.주 민 등 록 번 호					
7.주 업 종 코 드			519910	292203	
8.총수입금액(이자, 배당)	50,000,000	30,000,000	500,000,000	2,986,976,800	
9.필요경비 (배당대상액)		30,000,000	36,893,561	2,345,568,508	
10.배당가산액=대상액X11%		3,300,000	2012 19 20 2012	211 112 222	8
11.소득 금 액(이사, 배당)	50,000,000	33, 300, 000	463,106,439	641,408,292	
12.원전상수세액 - 소득세	7,000,000	4,200,000			
13.원전상수세액 - 동독세					
14.이월철온금공세 여 루					
10. 중 중 사 입 경 여 구			1 뒷고승니/저요	1.554103	
17 고 네 가 가 나 자 아			2012-01-01	2012-01-01	
10 교세기간 조금이			2012-01-01	2012-01-01	
시 제 지 시 지 지			서울 여드포그 여드포5	서울 도대무그 시성도	
19 사업장 국내 여부			1 군내	1 군내	
수재지국코드			[KB]하국	[KR] 하국	
20.전 화 번 호			02-3270-6200		1
성명				한성민	
대표공동사업자 납세자 구분				1.정상	
주민등록번호				780523-2112420	

(1)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31·40·41)를 코드순으로 기재한다.
①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②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③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④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2)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 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한다.

(3)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기재한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 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4)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 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 분하여 기재한다.

①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된다): 11
②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된다): 12
③성실납세: 13 라. 성실신고확인: 14(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한 경우)
④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⑤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⑥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5)주업종코드 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기재한다.

(6)총수입금액란 및 소득금액란 :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기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 경비 란에 기재한다.

(7)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필요경비계란의 금 액을 기재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8)소득금액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 한 추계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기재한다.

(9)과세기간개시일·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기재한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 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기재한 다.(사업년도와 구분 필요)

(10)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한다.

(11)특수관계인 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가 있는 경우로 서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2)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3)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4)소득세·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 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한다. 지방소득세는 3쪽 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는다.

[2]이월결손및공제

Esc	종료	F2	RE.	F3	0	감 [F4	정	H (F5 삭제 *F5 전체	네삭지	에 F6 추가입력	F7 미납일수 F	8] 무기장기	·산세 F	9 인쇄 FIL 자	장 [F12] 불러오기
1	1.소	특금액	경제	7 2	.01	월결손 <u>:</u>	맃공저	U.C.	3.원천징수.준비금	r	4.소득공제명세서 🍸	5.가산세명세서	6.주택	매매등계신	7.금융소득계	산 8.종합소득계산
1 0	월급	a손금망	방제/	Ч												
1					0	월결련	는금	발생	내역		○ 거 기 기 기 기 기 기 이 비		당기공	제액		(R) 7108
동			Q	D발생	과	세기간	H		②발생금액	ĵ.	3년기까지 중세 빅	④당기공제액	⑤소급·	공제액	⑥그밖의공제역	4 024
산 소	1			부 : 공7	동신 데ㅎ	난임대0 가지 아	네서 (니한)	발생(다.	한 이월결손금은 다	른 :	소득에서					
					계											
11	1	2009	1	1	~	2009	12	31	5,000,0	00		5,000,000				
업	2					0.200100.00										
소																
号 40					241				5 000 0	nn		5 000 000	1			
2 3	동합스	~득금?	비및	결손	금	• 이울	결손	금공	응제명세서			공네가능한 시	·업소득이	월결손금	보기	
7	i.					ŧ	ŧ	(1))소득별소득금액	(2	2)사업소득결손공제	(3)사업소득공	미월결손금 중제금액	· 공제금액 (4)부동	산공제금액	(5)공제후소득금액
0	2	나 =	소	특	ĩ	금 약	4		50,000,000							50,000,000
비	Ş	날 :	소	득	i	금 약	4		33, 300, 000							33, 300, 000
출	자공	동사업	자의	비배딩	강소	-득금?	4						20			
부	동신	임대업	의	사입	법소	-득금?	4									
부	동신	임대업	외의	1 사업	법소	:득금?	4		1,176,496,060			5,	000,000			1,171,496,060
긑	-	로 :	<u>ት</u>	=	1	d °	4			-						
<u>연</u>	1	= =	<u>ት</u>	=	1		4									
- /	5	: (종	î. 	=	- 7		-		1 050 700 000	-		-	000.000			1 054 705 050
<u></u> ଥ	 A 	(8	- C	2 =	7 7	a 94	2		1,259,796,060			5,	000,000			1,254,796,Ub

(1)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①이자소득금액란: 이자소득명세서의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② 배당소득금액란: 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③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④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란: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소득금액란의 합계액.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 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기재한 다.

⑤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40'과 '41' 인 소득의 ⑩소득금액란의 합계액 ⑥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근로 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결 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 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 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결 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 액은 납세자가 결정한다.

(3)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이 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여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 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 로 공제한다.

(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기재한다.

(5)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산정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 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기재한다.

(6)발생과세기간 · 발생금액란: 직전 10개 과세기간(2008년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 손금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대 로 기재한다.

(7)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8)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소득세법」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 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을 말한다]을 기재한다.

(9)그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한다.

Esc 종료 F2 코드 F3 마감 F4 정렬 F5 삭제 🗱 전체삭제 F6 추가입력 F7 미납일수 F8 무기장가산체 (CGR 성실미제출가산세 F9 인쇄 F11 저장 F12) 1.소득금액명세 2.이월결손및공제 3.원천징수.준비금 4.소득공제명세서 5.가산세명세서 6.주택매매등계산 7.금융소득계산 8.종합소득계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17-1.사업자등록번호 17-2.주민등록번호 16.상호(성명) 인력구분 18.소득세 19.농어촌특별세 0.사업자등록번호 11,200,000 412-81-54106 영업잡하는기업 1 2 11,200,000 계 2 준비금명세서 준비금 손금산인액 준비금 환입액 1.코드 2.조세특례제한법 조문 7.사업자등록번호 5.당기환입액 6.환입액누계 1.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 2.문화사업준비금 계

[3]원천징수및준비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1)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소득세·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 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한다. 지방소득세는 별 도 계산하므로 적지 않는다.

[준비금명세서]

(1)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 (제목)을 기재한다[예 :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연도란 및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기재한다.

(3)당기 환입액 및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 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기재한다.

(4)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소득공제명세서

Esc	§星 F2] 코드 F3 마감 F4 칭	5월 [F5] 수	제 #F5 (Ctrl)	전체삭제	F6	추가입	력 F7	미납일수 F8 무기장가산세 F9 인쇄 F11 저장 F12 불러오기
1	1.소득금9	백명세 2.이월결손및공	제 3.원천	현장수.준비	日 4.3	신득공제	비명세/	d 5	가산세명세서 6.주택매매등계산 7.금융소득계산 8.종합소득계산
1 소	득세법실	†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김	(1) 본 인 공 제	여부	। 여		1,8	500,0	JO 고제	(13) 퇴직연금소득공제 1,000,000
인	호	(2) 배 우 자 공 제	여부	1 여		1,8	500,0	JO 811	(14)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비용 공 제
	제	(3)부 양 기	· 주	1 명		1,1	500,0	20	(15) 보 험 료 공 제
적	추	(4) / 에 세 이 상	인사	9				=	
	가	(5) 심 매	인	9 M			-00 0		
공	공	(7) 6 세 이 치 (에 두 🔜	1 며		1 (300,0 300,0	- UU - DC	
	제	(1) 하 제 이 이 .	으 자 양 자			194	500,0		(10) T T A 8 N 600 000
제	(9)	다 자 녀 추 가	공 제	B				मा	(21)특별 근로소들이있는자(15~19or20)
	(10)	인적공제계	(1~9의	합계)		6.0	0.00		공제합계 근로소득이없는자(19 + 20) 600,000
연금	+ (11)	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000000000000	(20	· · · · · · · · · · · · · · · · · · ·
보험	료 (12)	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28	오 득 종 제 힙 계 (10~14+21+27) 10,600,000
2 2	적공제대	남상자 명세					3 3	세특례기	비한법상 소득공제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	록번호			코드	3.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25.금액 26.사업자번호
1	0.본인	한성민	1.내국인	780523-	2112420		1	113 9	년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3,000,000 108-81-71297
2	3.배우지	H 김성수	1.내국인	750522-	1538331		2		
3	4.직계비	H 김태기	1.내국인	081124-	3333110				
4									
74	AL	C Dall Di ultra di X (171-1	20					-	
0 선지 소득	· 전고시 조 공제신고	·국공세경세서 가족사항 수 · <mark>서의 가족사항</mark> 을 수록합	복근 니다.					27, 조사	I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3,000,000
재종] 전	*	본인이 여성	넣으로서	부양가족	이 있	는 세	대주이7	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여(50만원공제)



[5]가산세명세서

Esc 종료 F2 코5	王 F3 마감 F4	정렬 F5 삭제 🕻	5 전체삭제 F6 추	추가입력 F7 미납일수 F8 5	루기장가산세 (Ctrl) 성	실미제출가산세 [F9] 인쇄	F11 저장 F12
1.소득금액명	세 2.이월결손들	빛공제 3.원천징	수.준비금 4.소득	흑공제명세서 5.가산세명세/	서 6.주택매매등	계산 7.금융소득계산	8.종합소득계산
🚺 가산세명세서			무신고와 무	기장,성실미제출 비교 및 경	설리	F6-가산세감면?	률입력
구	. 분 및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비다		산 출세액		40/100		
		- 2 1	수입 금액		14/10,000		
			산 출세액		20/100		
	2 2 7	- 21 12	수입 금액		7/10,000		
	님 다 지		미달 세액		40/100		
②과 소 신 고	- 8 m	रू रा म	수입 금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달 세액		10/100		
· 이나 브 (화·	근) 북 서 신	미 납	일 수	()	3/10.000		
		미 납 부 (환	한급)세 액		0, 10,000		
	지근며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면 제출 금액		1/100		
	제 사 사	미발급(위장)	공 급 가 액		2/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④보 고 불성실	게사서하게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개인재럽제표	지 연 제 출	지연 제출 금액		0.5/100		
	매입처별세금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계산서합계표	지 연 제 출	지연 제출 금액		0.5/100		
	소		계				
요주비 부비		는 취	미 수취 금액		2/100		
000 2 U	허 위	수 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명순증_순.췬	미 저	비 출	미 제출 금액		1/100		
명세서미제줄	불	명	불명 금액		1/100		
⑦사업장 현 황	무 신	고 고	수입 금액		0.5/100		
(16) 합			계				

추가입력사항	×
내외국인: 🚺 1.대국인 2.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2 1.여 2.부	
신고구분: 1 1.정기신고 2.수정신고 3.경정청구 4.기한후신고 5.추가신고	
거주지국: KR 💿 한국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년월일: 2013년 5월 31일	
성실사업자여부: 21.여2.부(근로소득이 없을때 표순공제액 1:여-1백만원 2:부-60만원)	
무기장자동계산여부: 2 1.여 2.부	
가산세감면: 0 0.없음 1.50% 2.20% 3.10%	
○ <mark>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mark> 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선택합니다.	
o 수정신고 감면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하십시오.	
ㅇ1개월이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50%를 적용하십시오.	
ㅇ그외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는 감면이 안되므로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o감면적용여부를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	
확인(Tab, Esc)	

(1) 무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 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재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 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 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2)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3/10,000을 적용한다.

(3)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기 재한다.

(4)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 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 을 기재한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5)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내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0.2/100를 적용한다.

(6)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0.2/100를 적용한다.

(7) 보고불성실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
 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주택등매매업자용 산출세액계산 및 비교

 (1)이 서식은「소득세법」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 함한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 는 거주자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2)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 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3)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 이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Esc 🕾	료 F2 코드 F3	마감 [F4] 정렬 [F5] 식	제 ^{◆F5} 전체삭제 F6] 추가입력 [F7] 미닙	[일수 F8] 무가장가산세	●F8 (Ctrl) 성실미제출가	산세 [F9] 연	년쇄 F11 저장 F12 조
	·소득금액명세 :	2.이월결손및공제 3.8 축제애계사 미 비고	원천징수.준비금 4.	소득공제명세서	5.가산세명세서 6.주	택매매등계산 7.금	금융소득계산	8.종합소득계산
<u> </u>	작중에에 입자중 전	물제국계한 및 비교					1	
	구분	③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④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공제 (양 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 에서율	@산출세액
0	종 합 소 득 금 액 합 계	3, 570, 276, 800	2,387,462,069	1,182,814,731	10,600,000	1,172,214,731	38%	421,541,597
비교	②합 계	3, 570, 276, 800	2,387,462,069	1,182,814,731	10,600,000	1,172,214,731		421,541,597
산출 세액	③주택등 매매 차익외종합소득	3,570,276,800	2,387,462,069	1,182,814,731	10,600,000	1,172,214,731	38%	421,541,597
계산	④주택등매매차 익합계(⑤+~+⑪)							
⑤누	진세율적용자산							
⑥누	-진 + 10% 세율 적용자산							
@40]%세율적용자산							
®45	5%세율적용자산							
950)%세율적용자산							
@60)%세율적용자산							
@70)%세율적용자산							

[7]금융소득계산

Est 종료 F2 코드 F3 마감 F4 정렬 F5 삭제 @F5	전체삭제 🕞 추가입력 [F7 미납일수 F8 무기장가산세 (Ceff) 성실미제출가산세 (F9 인쇄 F11 저장 F12 조회
1.소득금액명세 2.이월결손및공제 3.원천징수.	준비금 4.소득공제명세	서 5.가산세명세서 6.주택매매동계산 7.금융소득	계산 8.종합소득계산
🚺 금융소득 명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비영업대금이익	50,000,000	(6)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30,000,000
(2)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7)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3)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8)위 (6).(7)외의 배당소득	
(4)위 (1),(2),(3) 외의 이자소득		(9)배달소득 한계(6+7+8)	30,000,000
(5)이자소득 합계(1+2+3+4)	50,000,000		00,000,000
김 금융소득금액(4+8)이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4,00	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액직접입력 이자소득 2004년 이전 발생(귀속)	분 있을서 직접입력합니다
(10)금융소득금액(5+9)	80,000,000	(26)소득공제	10,600,000
(11)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27)과세표준(25-26)	1,088,914,731
(12)기준초과금액(10-11)	40,000,000	(28)기본세율	38 %
(13)배당가산액	3,300,000	(29)산출세액	389, 887, 597
(1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1,099,514,731	(30)비교산출세액 계(22+24+29)	406, 587, 597
(15)종합소득금액(12+13+14)	1,142,814,731	(31)종합소득산출세액(21와30 중 큰 금액)	411,941,597
(16)소득공제	10,600,000		
(17)과세표순(15-16)	1,132,214,731		
(18)기본세율	38 %		
(19)산술세액	406,341,597		
(20)[11X(14/100,15/100)]	5,500,000		
(21)미교산물세막계(19+20) (29)비여여태그십이((1,2) × 25/100]	411,941,597		
(22)비영어대그에이 이이 그의사트(10-1-2)	12,000,000		
(23) 9 8 6 9 6 9 4 1 - 6 8 2 4 (10 ⁻¹⁻³) (24) [23Y (14/100 15/100)]	JU, UUU, UUU / 200_000		
(25) 그유太도 있어 다른 조하太도(17)	1 000 517 731		
1000823 44 92 8823(14)	1,033,014,(01		
4 배당세액공제			
(40) [13와 (31-30) 중 작은 금액]	3,300,000		

※ 개인별 금융소득이「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 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 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Ang way 2

(1)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다.

①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한다.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 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한다.

(2)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 드· '26' 코드 "⑤배당액"란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3)⑦ 위 ⑤·⑥ 외의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 드'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 대상금액")을 기재한다.(3)⑫배당가산액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 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가산율)을 기재한다.

(4) ⑬·㉒·㉓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 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 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기재한다.

(5) ֎·鄧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 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つ, ⓒ중 큰 금액을 기재한다.

- ⑦(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 제]× 기본세율

(6) ⑮ · 您 · 왜 소득공제란: ❶소득공제명세서의 ⑳소득공제 합계를 기재한다.

(7) ^① · ^② · ^③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다만, ^③ 세액란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25/100의 세율을 기재한다.

(8) 4 배당세액공제: 39 란은 ⑫와 [(30 - 29) 중 작은 금액]을 기재한다.





[8]종합소득계산

Esc 종료 F2 코드 F3 마감	F4 정렬 F5 삭제	●F5 전체삭제 F6 추 Ctrl	가입력 [7] 미납일	÷ F8] 공제 [남면 조화	회 <u>@F8</u> 성실미제출	기산세 F9 인쇄	FIL] 저장 [FI2] 조회
1.소득금액명세 2.이윌	결손및공제 3.원천	징수,준비금 4.소득	공제명세서 5.7	·산세명	세서	6.3	주택매매등계산	7.금융소득계산 8	.종합소득계산
1 세액의 계산				2 >	네액감!	면			
구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1	코드	①해	당법조문(제목)	③금액	④사업자번호
21.종 합 소 득 금액	1,182,814,731			1				11	
22.소 득 공 제 계	10,600,000								
23.과 세 표 준(21-22)	1,172,214,731	187,742,957		-					
24.세 율		10 %		-		<u>.</u>	계		
25.산 출 세 액	411,941,597	18,774,295			108 71-	-it i	공제	받는 사업장의 사업	자등록번호 기재
26.세 액 감 면	금융소득과 부	동산매매차익이 존재	시 세율기재 안함		비핵공/	4		1 0. STORES	
27.세 액 공 제	224, 198, 640			1	202	배당	세액공제	3,300,0	104-03-1125
28.결 정 세 액(25-26-27)	187,742,957			2	244	신사	신고 세역공세 기어트지 내애고	2U, L	
29.가 산 세				1	221	동포	시민구사 세국의	241 220,070,0	104-03-1123
30.추 가 납 부 세 액						<u>.</u>	계	224,198,6	640
31.합 계(28+29+30)	187,742,957			1	기나님.	네애며	4 841		
32.기 납 부 세 액	22,400,000	2,240,000			1977	N - c	100 11	1 = 11	노이초트립니
33.납부(환급)할 총세액	165, 342, 957	16,534,295		1 3	는 군돈	예	군 난 세 앤	소득세	동어준축별제
· 34.분납할세액(2개월내)	50, 459, 912			2.5	지등미	바매차	익예정신고납부		
^감 35.기한이내 납부할세액	114,883,045	16,534,295		3.5	지등미	바매차	익예정고지세액		
				4.4	= 시	부	_ 관 _ 세 _ 액		
국세환급금계좌				워기	헤진수/	પાઓ	5. 이사소득	7,000,000	
예입처 코드 😪		은행	본,지점				7 사업소득	4,200,000	
예금종류			예 금	및	납세2	산합	8.근로소득	11,200,000	
계좌번호				7	당수세?	액	9.연금소득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0.기타소득		
				11.,	가 납	· 부	세 액 합계	22,400,000	

(1) ②종합소득금액란: ③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 소득금액)를 옮겨 기재한다.

(2) ㉒소득공제란: ❶소득공제명세서의 ⑳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기재한다.

(3)24세율·25산출세액란: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 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 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중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 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한다.

(4) ⑩세액감면· ⑰세액공제란: ⑩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 합계 또는 鄧세액공제명세 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기재한다.

(5) 29 · ⑤ 가산세란:「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소득세법」 제81조 · 제 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기재한다. 이 경우 29가산세는 ⑤ 가산세명세서의 ⑥ 합계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6)③·⑤추가납부(환급)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 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③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50추가납부세액(농 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기재한다.

(7)逊·旸기납부세액란: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 및 20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기재한
 다.

(8)③납부(환급)할 총세액란: ③합계 금액에서 ③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기재한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한다

(9) 39분납할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 을 이 란에 기재한다.

(10)지방소득세란: ④과세표준란에는 ③종합소득세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④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④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③)-중간예납세 액(❻기납부세액명세서의①)]×10%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기재한다.

(11)농어촌특별세란: ⑤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68호서 식)의 ⑧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⑥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⑥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廢+⑤-⑥) 의 금액을 기재한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 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주의해야할 소득공제사항 예시]

- ① 기초생활수급자 :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음
- ② 6세이하자녀공제 : 위탁아동포함, 과세기간 개시일기준으로 판단,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가능, 기 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부도 공제가능
- ③ 장애인특수교육비 : 직계존속에 대한 것도 공제가능(일반교육비는 공제안됨)
- ④ 동거여부: 동거하지 않아도 되는 부양가족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주거상)
- ⑥ **지역연금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 직장에서 공제가능
- ⑦ 나이 23세인 장애인 직계비속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다자녀공제가능
- ⑧ 보험료공제 : 보험료 정산금액(4월)은 정산시 납부한 것으로 봄 보험료의 일시납도 납부한 연도의 공제대상, 태아는 보험료공제 안됨 회사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합산후 보험료공제가능
- ⑨ **교육비공제** : 직계존속은 공제 안되고, 선납분은 선납시공제, 학습지는 공제안됨
- ⑩ 중복공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중 일부는 신용카드공제와 중복공제



10 간편장부/기준경비율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기준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작성->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작성->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

1.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구 분	(부동산)-합계	(사 업)-합계	1	2	3 🛃
	10.소득구 분 코 드-일련번호			40(사 업)-1		
	회 사 코 드			2048		
	회 사 상 호			개인기업(사업)		
	08.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4-03-11251		
	05.소 재 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사 업 장	법 정 동 코 드			A0301003		
	06.업 태			제조,도.소매 및 무역		
	종목			전자제품		
	09.과 세 기 간 (시작)			2012-01-01		
	과 세 기 간 (종료)			2012-12-31		
	07.주 업 종 코 드			292203		
	11.매 출 액		5,119,960,000	5,119,960,000		
장부상 수입	12.기 타					
	13.수 입 금 액 합 계(11+12)		5,119,960,000	5,119,960,000		
	14.기 초 재 고 액		54,000,000	54,000,000		
매충원가	15.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 비용(24)		2,811,470,260	2,811,470,260		
	16.기 말 재 고 액					
	17.매 출 원 가(14+15-16)		2,865,470,260	2,865,470,260		
	18.기 초 재 고 액					
제조 재료비	19.당 기 매 입 액					
1	20.기 말 재 고 액					
	21.당 기 재 료 비(18+19-20)					
제조 노무비	22.노 무 비					
제조경비	23.경 비					
제조비용	24.당 기 제 조 비 용(21+22+23)					

(1)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 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 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 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2)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한다.

(3)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한다.

①부동산임대소득 : 30

②사업소득 : 40

(4)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된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한다.

(5)재료비용란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6)⑩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한다.

(7)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1)·(2)를 첨부하여야 한다.

(8)기부금란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 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간편장부소득금액명세서

Esc 종료	F1 도움 F2 코드 F5 삭제 ⁰ F5 전체삭제 F6 세	무대리인 등록 [F7]	합계보기 [F9] 인쇄 [F11] 저장	장 F12 불러오기 한12 회사별 새로불러오기
-	구 분 (부동산)-합계	(사 업)-합계	1 불러오기로 총	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에서 불러와 표시가능
	10.소 득 구 분 코 드-일 련 번 호		40(사 업)-1	
	회 사 코 드		2048	
	회 사 상 호		개인기업(사업)	
	8.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4-03-11251	
	5.소 재 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 1 3	6.업 태		제조,도,소매 및 무역	
	종목		전자제품	
	9.과 세 기 간 (시작)		2012-01-01	
	과 세 기 간 (종료)		2012-12-31	
	07.주 업 종 코 드		292203	
	11.장 부 상 수 입 금 액	5,119,960,000	5,119,960,000	
	12.수 입 금 액에서 제외할 금 액			
	13.수 입 금 액에 가 산 할 금 액			
	14.세무조정후 수입금액(11-12+13)	5,119,960,000	5,119,960,000	
	15.장 부 상 필 요 경 비	3,731,280,940	3, 731, 280, 940	
	16.필 요 경 비에서 제외할 금 액			
	17.필 요 경 비 에 가 산 할 금 액			
	18.세무조정후 필요경비(15-16+17)	3,731,280,940	3,731,280,940	
19.차 가	감 소 득 금 액(14-18)	1,388,679,060	1,388,679,060	
20.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21.기부금	이 윌 액 중 필 요 경 비 산 입 액			
22.해 당	연 도 소 득 금 액(19+20-21)	1,388,679,060	1,388,679,060	
			1h	
	대 리 구 :	E: <u>1 1.21</u>	웹 2. 전 _ 과 3. 사기소성	~세무/회계법인의 구성원 작성분>
	신고 년월	일: 2013 년 05 월	[31 일 💽	
전자	30:부동산소득 40:사업소득	L.		

(1)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 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 내 사업소득과 부동 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 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첨부한다.



(2)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한다.

(3)소득종류란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 : 30

② 사업소득 : 40

(4)장부상 수입금액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⑬수입금액 합계와 같다.

(5)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국고 보조금,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한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 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2)를 첨부하여야 한다.

(6)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 [7]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⑧총수입금액 또는 별 지 제40호의3서식의 ⑩총수입금액과 같다.

(7)장부상 필요경비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의 필요경비 합계와 같다.

(8) ⑫·⑮·⑰란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 여 각 란에 기재한다.

(9)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한다.

(10)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한다.



1	사업자등 104-03	루번호 2 1251 사업	소득구분 개인	성 [기업(사업)	<u>상호</u>	성명 한성민	·····································	:록번호 -2112420
	-	거래일자	주요경비	지출명세 제출대	상 거래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품목	거래금액	매수
_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1	임자료 메이미요	2012-06-30	부명부공산	노군시 이지유	130-81-50950	임자료 저지님프	4,500,000	1
4 9	매입미용	2012-01-02	나하문사	지나여	116-91-02170	신사구움 커프티브푸	3 150 000	
1	1000	2012-02-01	8220	000	110-01-02110	87978	3,130,000	3
	원징	불로오기로 표시기	가뇽					
	합계	(매입비용: 3,	375,000,입차료:	4,500,000)			7,875,000	

3.주요경비지출명세서(기준경비율)

(1)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 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 수증포함)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한다.

(2)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에 해당하는 다음 거래는 기재하지 않는다.

①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이하인 경우
②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③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④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⑤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⑥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⑦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 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봄
⑧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⑨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⑩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⑪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AND Arzy Z

⑫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가. 소득금액계산서	1	2 3 4	
	06.사업자등록번호	104-03-11251		
	01.소득구분코드	(40-1)		
	05.상호	개인기업(사업)	· · · · · · · · · · · · · · · · · · ·	러옵니다.
. =	03.사업장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득구분이 누락되 데이타는 제외됩니다.	
쓸패	법정동코드	A0301003		
계산	04.과세기간	2012/01/01~2012/12/3	물러오시겠습니까?	
	07.업태	제조,도.소매 및 무역		
	종목	전자제품	예(<u>Y</u>) 아니오(<u>N</u>)	
	08.업종코드	292203		
	09.총수입금액			
기즈	10.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u> 수</u> 요	11.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34)	7,875,000		
경비	12.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13.계(10+11-12)	7,875,000		
고준	기준경비율-적용기준	1.일반율		
경미율 계사	14.기준경비율(%)	16.30%		
	15.금액(9×14)	·		
기줄솏득	16.필요경빈계(13+15)	7,875,000		
84	17.기순소득금액계(9-16)			
다순	단순경비율-적용기순	1.일반율		
경비율	18. 단순경비율(%)	91.50%		
계산	19.금액(9×(1-18))			
	/ 기획세성부터 배슐			
20, 01 1	소득금액(19×기획세성부명 배귤) 토그에 (17 ㎡도 202주 자유그에)			
리 쇼	국금적 (17 또는 20중 식근금액)			

4.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11 성실신고확인제도



1.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 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성실신고확인제 적용시기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3.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



로 한다.

(1)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2)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 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이상

(3)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 만원 이상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대상	복식부기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기준 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	해당과세기간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 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 보험업 등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 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7억5천만원 이상

4.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5.성실신확인자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 음 연도 2월 10일까지「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6.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인센티브

(1)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 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 을 수 있다.



	성명 주민들	등록번호	공동	성실			1.코드	2.상호	3.사업자번호	4.업종코드	5.총수입금액	6.업종명	7.분류
	한성민 780523	-2112420	부	ल	1	F	2048	개인기업	104-03-11251	292203	5.149,960,000	전자응용 공	2
m					2	177	0.0078309			71000300000			0.0393
E						F							
m						m							
F						F							
何						F							
F						F							
m											5,149,960,000		
-													
(E)													
同					주የ	업종:	코드 [292203		기준금액	1,500,000,00	10	
F					주 [사:	업종: 신1 3	코드 [설명](0	292203 ×15억/30억)+5	 149.960.000+(0×	기준금액 15억/7.5억	1,500,000,00	10 In	
6 6 6					주 { [산:	업종: 식] [코드 [설명 (0	292203 ×15억/30억)+5,	960, 000+(0×	기준금액 15억/7.5억	1,500,000,00)=5,149,960,00	10 0	
					주([산:	업종: 식] 🧯	코드 설명 <mark>(</mark> 0	292203 ×15억/30억)+5, 업종	960, 000+(0×	기준금액 15억/7.5억 업종코5	1,500,000,00)=5,149,960,00 = 금	10 10 }액	기준금
					주([산:	업종: 식] 🧾	코드 [설명](0	292203 ×15억/30억)+5, 업종	960,000+(0×	기준금액 15억/7.5억 업종코5	1,500,000,00)=5,149,960,00 E	0 0 남액	기준금
					주([산: 1.놀	업종: 식] <u>《</u> 업·(코드 [설명](0 임업및 (292203 ▷15억/30억)+5, 업종 억업, 광업, 1, 부동산 배매업,	960,000+(0×	기준금액 15억/7.5억 업종코드	1,500,000,00 ()=5,149,960,00 로 클	0 0 양액	기준금 30억
·····································					주 [산: 1.농도 23	업종: 식] (4 역 및 및	코드 설명(0 임업및(실조매업 3호에 1	292203 ×15억/30억)+5, 입종 어업, 광업, 1, 부동산 매매업, 해당하지아니하는	· 49, 960, 000+(0× 사업	기준금액 15억/7.5억 업종코드	1,500,000,00)=5,149,960,00 로 클	10 0 금액	기준금 30억
					주 [[산: 1. 농도 22	업종: 식] : 대민 및	코드 [설명 (0 임업및 (실 소매업 3호에 1	292203 ×15억/30억)+5, 업종 어업, 광업, 1, 부동산 매매업 해당하지아니하는	(이) 149,960,000+(0× 사업	기준금액 15억/7.5억 업종코드 계	1,500,000,00)=5,149,960,00 로 클	0 0 3액	기준금 30억*
					주 f [산: 1.농도 23 2.젰쥐	업종: 식]	코드 [설명 (0 임업및 (3호에 (, 숙박)	292203 ▷15억/30억)+5, 업종 이업, 광업, 1, 부동산 배매업, 해당하지아니하는 및 음위 성 연 , 1,4	(G) 149,960,000+(0* 사업	기준금액 15억/7.5억 업종코드 계 292203	1,500,000,00)=5,149,960,00 E =	10 10 19백 , 960, 000	기준금 30억*
					주 [[산: 1.농도 23 2.제전 하	업종: 식] 실 업종: 입 및 조업· 기 소 의	코드 [설명 (0 임업및 (3호에 1 , 숙박 (기스 · 페기물차	292203 ×15억/30억)+5, 업종 어업, 광업, , 부동산 배배업, 해당하지아니하는 및 음식적인, 종기 및 우도시입어, 종기 및 우도시입어, 동기 및 유도시입어,	149, 960, 000+(0× 사업 확경 북원업 ,	기준금액 15억/7.5억 업종코드 계 292203	1,500,000,00 ()=5,149,960,00 E =	10 10 양액 , 960, 000	기준금 30억*
					주 ([산· 1. 동도 22 2. 제전하거처	업종: 식] 입매및 업····입개	코드 설명 (0 임업및 (0 3호메1 , 숙박 (기건 동 기가 등 차 패기물차 배발 및 관	292203 (*15억/30억)+5, 입종 개월, 평업, 배백리, , 부동산, 배백리, , 부동산, 배백리, , 부동산, 배백리, , 부동산, 태백리, , 연주, 사업 1 - 의료, 개월, 28 20, 27 20, 20 20, 20	(149, 960, 000+(0* 사업 환경북원업, 제외, 주거용	기준금액 15억/7.5억 업종코드 계 292203	1,500,000,00 1)-5,149,960,00 E	10 0 19억 1960, 000	기준금 30억 15억-
					주 [신· [신· 2. 제전하거가 명	업종: 식] 입종: 및 업·1입개로 조기수설률상	코드 설명 (0 임업및 (1 3호에 1 , 가스 물차 (비주 가스 물차 (비주 가스 물차 (비주 및 목소 방송통스	292203 (*15억/30억)+5, 업종 개업, 관업, 부동산 배매 (*17, 20억,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사업 사업 체정, 960, 000+(0* 사업 체정의, 주가용 제정의, 주가용 가공 등 등 21 등 21 등 21 등 21 등 21 등 21 등 21 등	기준금액 15억/7.5억 입종코드 계 292203 계	1,500,000,00 1)-5,149,960,00 E E E 5,149 5,149	00 0 	기준금 30억 ⁴ 15억 ⁴
					주유 [신산] 1. 동도22 2. 제전하거가, 80 프	업종: (일 입 · · · · · · · · · · · · · · · · · ·	코드 설명 (0 임업및 (1 3호에 1 , 가스 3호에 1 , 가스 3호에 1 , 가스 방송통 방송통 이 대 여	292203 (*15억/30억)+5, 입중 어업, 광업, , 부동산 배매입, , 부동산 (************************************	사업 환경북 원업, 제작업, 주거용 자 30, 주거용 가 30, 주거용 수, 13, 분환업 2, 서비스 역	기준금액 15억/7.5억 업종코드 계 292203 계	1,500,000,00)>-5,149,960,00 E E E i 5,149 5,149	10 0 	기준금 30억*

①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성실신고확인 서」를 제출할 때「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한다.

②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한다.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3)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지출 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7.성실신고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5월1일부터 7월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첨부서류]성실실고확인 결과 주요항목명세서(사업장과 사업내역현황, 수입금액검토, 필요 경비 적격증빙 검토등), 특이사항기술서, 사업자확인사항



		(년	귀속) 성	실신	신고 확 인	서	
1. 성수	실신고확인	대상사업	십자					
① 성	명				② 주민	등록번호	-	
③ 주	소							
			¢	④ 성실신고 ³	확인대상기	사업장		
번호	사업자등	록번호	상 호	소득구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소득구분
1					2			
3					4			
5					6			
7					8			
9					10			
2. 성수	실신고확인	자 (세-	루사, 공인회	계사, 세무	법인, 회그	계법인)		
⑤ 상호	호(법인명)				⑥ 사업자	등록번호 -		
⑦ 성명	병(대표자)				⑧ 관 리	번호 -		
⑨ 사업	법장소재지							
3. 확인	년내용							
위 성 계상	성실신고확인 · 등 소득금	대상사업 액에 대	넙자의 비치ㆍ 하여 「소득	기록된 장부 특세법」제70	와 즘빙서 조의2제1	류에 따라 계산한 항에 따라 성실하	수입금액 및 [*] 게 확인하였는	필요경비의 습니 <i>다</i> .
			· · · —					

8.주요항목명세서(성실신고확인결과)

(1)주요사업내역

1)주요사업내역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하나의 거래처로 보아 작성한다 [또 종료 미도움 [진코드 [미단위/천원] 전 개정설정 15 석제 整전체석제 16 참고 [미 인쇄 ~ [미 보러오기]

-	7010						
	구표사	급대학 구표규양자신/자입금					
>	1.사업질	당현황					
		건물 건물	면적				
소위	구분	2 지하층 지상층 바닥면적	연면적	임차보증금	월세	종업원수	차량
1.자	가 2.타	·가 층 1 층 60 m²	100 m²	500,000 천원	천원	20 명	10 다
5	2.주요시	h업내역		11. 11	dh dh	ku	
가)주	요매출	· 처(전체매출액 대비 5%이상 금액	의 매출처 중 상	위5개) 불러오기로 표시	시가능		
	코드	거래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1	00305	(주)명인건설	최명인	129-81-66753	1,192,760		
2	00315	(주)금영테크	유영태	104-81-00335	811,800		
3	00101	가영전자	이주명	121-13-15168	800,000		
4	00316	(주)신흥전자	이지혜	104-81-37263	524, 850		
5	00104	대신대리점	유주영	123-81-00831	335,000		
나)주	요매입	처(전체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	의 매입처 중 상	위5개) 불러오기로 표시기	능		
	코드	거래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1	00321	(주)강서정보기술	이주성	126-81-24939	782,200		
2	00316	(주)신흥전자	이지혜	104-81-37263	270,000		
3	00315	(주)금영테크	유영태	104-81-00335	235,000		
4	00324	인수물산	이수길	107-81-03699	194,020		
E	00104	대신대리점	유주영	123-81-00831	190,000		

매출처,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 입한다.



2)주요유형자산/차입금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차량운반구는 제외)과 리스자산인 경우 모두 작성하고, 자산내역란에 금융리스 여부 구분하여 작성한다. 차입금은 건별로 작성하되, 건별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 2 . ² 다)주요	"묘사업내역 수묘유 F요사업내역 유형자산 명세	형자산/차입금						
코드	계정과목		자산내역(품명)	수량	취득가?	백 연긴	리스료	취득일
320200	건물	공장건물			5	00,000		2010-01-01
320600	기계장치	분쇄기			2	25,000		2012-02-01
⊐(\+ ∩)	그 미 피그이지 하여		♥ 026000 단기차입금 ■ ■					
과)사업 코드 026000 029300 029300 029300	음 및 지급에서 확인 계정과목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차입 구영상사 한국상사 국민은행 국민은행	환인 취소		차입금액 10,000 50,000 250,000 200,000	연간지급이자	차입일 2011-01- 2012-01- 2012-02- 2012-01-	상환일 2213-02-01 03 2013-03-06 06 2014-06-30 10 2014-01-06

(2)수입금액등 검토

3.∓18445	771200							
가)수입금액신고현	황 조정우구집금액전	3세시에시 놀디오	r #4	<u>20</u>				
1 총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순 2 소계 관세부 약			문 보 며,	네트 3 사업	· 성장현황신고 4	차이금액 (1-(2+3))	
5,124,36	0 5,124,3	360 4	,204,360	120,000	800,000			
차이원인				부가가치세신고서	너에서 불러와 표시			
나)매출증빙발행현	황							
			2 매출증빙	발행 금액				
1 총수입금액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풍·선물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로	원전성수대상 사업소득	3 차이금액 (1-2)	
5,124,360	4,213,360	800,0				(10) (11) (11) (11) (11) (11) (11) (11)	111,000	
5,124,360 차이원인 다)원천징수대상 봄	4,213,360 중빙사용대상 아님 사료 신고사항 등	800,0 검토 <u>「소득</u> 서	00 대법」제127조제1항제	8호에 해당하는 봉	사료 발생 사업자	만 작성	111,00	
5,124,360 차이원인 다)원천징수대상 봄 1)원천징수대상 공급가액(공급대기 차이원인	4,213,360 즐빙사용대상 아님 (사료 신고사항 등 봉사료 신고현황) 봉사료	800, 01 검토 [도소득사 공급가역	00 비법」제127조제1항제 박(공급대가)의 20/10	8호에 해당하는 봉 0 초과 봉사료 원	사료 발생 사업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	만 작성 [고서의 봉사료지급	111,00 급액 차이금액 (4-3)	
5,124,360 차이원인 다)원천징수대상 봉 1)원천징수대상 공급가액(공급대기 차이원인 2)원천징수대상 1 원천:	4,213,360 동방사용대상 아님 자료 신고사항 등 봉사료 신고현황) 봉사료 봉사료에 대한 지 징수이행상황신고서	800,01 검토 <u>「소득서</u> 공급가역 금명세서 제출 ^한 의 봉사료지급	00 세법」제127조제1항제 배(공급대가)의 20/10 방	8호에 해당하는 봉 0 초과 봉사료 원 2 지급명세서	사료 발생 사업자(원천징수이행상황신 금액	만 작성 기고서의 봉사료지급 3 차0	111,00 급액 차이금액 (4-3) 금액 (2-1)	
5,124,360 차이원인 다)원천징수대상 본 1)원천징수대상 공급가액(공급대기 차이원인 2)원천징수대상 원천:	4,213,360 동방사용대상 아님 사료 신고사항 등 봉사료 신고현황) 봉사료 봉사료에 대한 지 징수이행상황신고서	800,0 검토 [조득서 공급가역 급명세서 제출혁 의 봉사료지급	00 세법」제127조제1항제 배(공급대가)의 20/10 방	8호에 해당하는 봉 0 초과 봉사료 원 2 지급명세서	사료 발생 사업자(원천징수이행상황신 금액	만 작성 기고서의 봉사료지급 3 차이	111,00 금액 차이금액 (4-3) 금액 (2-1)	
5,124,360 차이원인 다)원천징수대상 봉 1)원천징수대상 공급가액(공급대7 차이원인 2)원천징수대상 1 원천:	4,213,360 증빙사용대상 아님 (사료 신고사항 등 봉사료 신고현황) 봉사료 봉사료에 대한 지금 실수이행상황신고서 차이원인	800,0 검토 「소득사 공급가역 급명세서 제출현 의 봉사료지급	00 세법」제127조제1항제 배(공급대가)의 20/10 영황	8호에 해당하는 봉 0 초과 봉사료 원 2 지급명세서	사료 발생 사업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금액	만 작성 1고서의 봉사료지급 3 차이	111,00 급액 차이금액 (4-3) 금액 (2-1)	
5,124,360 차이원인 나)원천징수대상 본 1)원천징수대상 공급가액(공급대기 차이원인 2)원천징수대상 1 원천: 3)연간 부가가치 1 부가세	4,213,360 증빙사용대상 아님 사료 신고천황 등 봉사료 신고현황) 봉사료 봉사료에 대한 지급 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차이원인 네 및 개별소비세 시고 과표	800,0 검토 「소득사 공급가역 금명세서 제출한 의 봉사료지급 과세표준 비교 2 개별소	00 세법」제127조제1항제 백(공급대가)의 20/10 영황 액 (과세유흥장소만 작: 비네 신고 과표	8호에 해당하는 봉 0 초과 봉사료 원 2 지급명세서 성) 3 확산 과표	사료 발생 사업자(원천징수이행상황신 금액 = (3 = 2 x 1,13)	만 작성 고서의 봉사료지급 3 차이	111,00 금액 차이금액 (4-3) 금액 (2-1) 차이 (3-1)	
5,124,360 차이원인 나)원천징수대상 봉 1)원천징수대상 봉급가액(공급대2 차이원인 2)원천징수대상 1 원천; 3)연간 부가가치, 1 부가세 -	4,213,360 증빙사용대상 아님 사료 신고 차항 등 봉사료 신고 현황) 봉사료 봉사료에 대한 지 징수이행상황신고서 차이원인 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 과표	800,0 김토 [「소득씨 공급가역 김명세서 제출한 의 봉사료지급 관세표준 비교 2 개별소	00 비법」제127조제1항제 박(공급대가)의 20/10 영황 액 (과세유흥장소만 작: 비세 신고 과표	8호에 해당하는 봉 0 초과 봉사료 문 2 지급명세서 성) 3 환산 과표	사료 발생 사업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금액 E (3 = 2 X 1.13)	만 작성 [고서의 봉사료지급 3 차이 4	111,00 급액 차이금액 (4-3) 금액 (2-1) 차이 (3-1)	

공급가액은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 가를 기재한다. 봉사료지급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봉사료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3)필요경비등 검토

1)손익현황

Esc 종료 F1 도움 F2 코 1.주요사업내역 2.	도 F3 단위:천원 F4 계정설정 F5 삭제 한5 전체 수입금액등 검토 / 3.필요경비 등 검토 / 4.기타/사업용계	삭제 F6 참고 F9 인쇄 — F11]저장 F12 불러오기		
①손익현황	②표준손익계산서 항목 ③원가현황 ④표준	원가명세서 항목			
한목	월일 번호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구분	-
1 1.당기매입액	2012-01-12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해외출장	4,500		
2 2.의약품비	2012-01-20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20 1.	.적격증빙 수취의	
3 3.복리후생비	2012-01-30 00002 081200 여비교통비		2 1.	적격증빙 수취의	
4 4.여비교통비	2012-02-03 00003 081200 여비교통비		20 1.	.적격증빙 수취의	
5 5.임차료	2012-02-18 00002 081200 여비교통비		1 1.	.적격증빙 수취의	
6 6.보험료	2012-02-20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20 1.	.적격증빙 수취의	
7 7.수선비	2012-03-07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해외출장	6,500		
8 8.접대비	2012-03-15 00002 081200 여비교통비		3 1.	.적격증빙 수취의	
9 9.광고선전비	2012-03-27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81		
10 10.운반비	2012-04-23 00002 081200 여비교통비		3 1.	.적격증빙 수취의	-
11 11.차량유지비	2012-05-06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해외출장	4,500 2.	.적격증빙 수취의	
12 12.지급수수료	2012-05-12 00002 081200 여비교통비		2 1.	.적격증빙 수취의	
13 13.판매수수료	2012-05-15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2 1.	.적격증빙 수취의	
14 14.소모품비	2012-05-25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5 1.	.적격증빙 수취의	
15 15.인적용역비	2012-06-01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10 1.	적격증빙 수취의	
16 16.기타 판매비및관리	시 2012-06-05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20 1.	.적격증빙 수취의	
17 17.영업외비용	2012-06-13 00001 081200 여비교통비		6 1.	적격증빙 수취의	
	1)적격 빙수취의무제외_건당3만원 이하		188		
	2)적격증빙수취의무제외_기타		4,500		
	3)적격증범		0		
	4)적격증방 의 증방		0		
	5)증빙불비		0		
	합계		32,269		-1
신규	당기매입액은 ②표준손익계산서항목에서 -	구분별 직접 입력하세요			_

2)표준손익계산서 항목

① 작성대상 :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 그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

 ② 적격증빙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신 용(직불·체크·선불)카드매출전표

①손익현황	②표순손익계산서	양복 ③원가현	년왕 (④표순원	가명세서 항목			
하모	다기계사애	적격증빙 수취	적격증빙 수취의무제외		적격증방 #	≤취 의무	
87	8/1/1/8 4	건당3만원이하	기타	계	적격증빙	적격증방외증방	증빙불비
1.당기매입액	2,811,470						
2.의약품비							
3.복리후생비	51,827	442	271	40,150	40,000	15	0
4.여비교통비	32,269	188	4,500				
5.임차료	56,200		40× - 41 -	-711		4,50	0
6.보험료	20,380						
7.수선비	2,800		🚺 표줄솥입곗:	산섬와 ①손익현황이	비서 데이타를	30	0
8.접대비	50,980	2	시 시 도 놀다 곱	ㅋ니.			
9.광고선전비	30,000		💙 데이타를 불	러오시겠습니까?			
0.운반비							
1.차량유지비	22,100		(Y) 아니오(N)			
2.지급수수료	12,506						
3.판매수수료							
4.소모품비	11,929	102		4,750	4,250	50	0
5.인적용역비							
6.기타 판매비및관리	172,999	144		66,600	66,600		
7.영업외비용	20, 700			18,150	18,150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지급현황]						
항목	1 당기계실	2 비과서 약 과세대산	세외 3 :	지급명세.	서 지출금액 (여만저사) 그리.	(이요그리) 치	아이금액 (1-(2+3
급여와 임금·제수당 차이원인	3	35,000					


3)원가현황

1	①손익현황 ②3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③원가현황	④표준원가명세서	항목			
	항목	월일 번호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구분	
1	1.당기재료매입액	2012-01-20 50004 053	000 소모품비	001.01	가영전자	2,500	3.적격증빙	
2	2.운임	2012-02-03 00002 053	000 소모품비			220		
3	3. 수선비	2012-02-03 50001 053	000 소모품비	00212	(주)동대문기기	1,500	3.적격증빙	
4	4. 소모품비	2012-02-12 50001 053	000 소모품비	00110	효명상사	15,000	3.적격증빙	
5	5.임차료	2012-02-20 00003 053	000 소모품비			100		
6	6.보험료	2012-02-20 00006 053	000 소모품비			240		
7	7.복리후생비	2012-03-05 00001 053	000 소모품비			125	-	
8	8.여비교통비	2012-03-05 00003 053	00					
9	9.접대비	2012-03-05 50001 053	00				적격증방	
					이머니 소나지 소나지요			
10 1	10.차량유지비	2012-03-17 50001 053		데이타를 새로 불	불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된	SUC	적격증빙	
10 1 11 1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데이타를 새로 불 예 : 모든 아니오 : 혘쟁,	를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돕 선택된_함몬의 데이티	입니다. 라만 다시 가져옵니다.	적격증빙	
10 11 12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데이타를 새로 불 예 : 모든 아니오 : 현재 취 소 : 작업을	불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돕 선택된 항목의 데이티 을 취소합니다.	입니다. 사만 다시 가져옵니다.	적격증빙 적격증빙	
10 11 12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2012-04-27 00002 053		데이타를 새로 불 예 : 모든 아니오 : 현재 취 소 : 작업월	블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옵 선택된 항목의 데이티 을 취소합니다.	입니다. 라만 다시 가져옵니다.	적격증빙 적격증빙	
10 1 11 1 12 1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2012-04-27 00002 053 2012-05-01 50003 053		데이타를 새로 될 예 : 모든 아니오 : 현재 취 소 : 작업을	불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됩 선택된 항목의 데이터 을 취소합니다.	입니다. 유만 다시 가져옵니다.	적격증빙 적격증빙 적격증빙	
10 1 11 1 12 1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2012-04-27 00002 053 2012-05-01 50003 053 2012-05-15 50002 053		데이타를 새로 들 예 : 모든 아니오 : 현재 취 소 : 작업을 예(Y)	탈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돕 선택된 항목의 데이트 출 취소합니다.	하니다. 1만 다시 가져옵니다.	적격 증빙 적격 증빙 적격 증빙 적격 증빙 적격 증빙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2012-04-27 00002 053 2012-05-01 50002 053 2012-05-15 50002 053 2012-05-16 50004 05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데이타를 새로 예 : 모든 아니오 : 현재 취 소 : 작업을 예(ỵ)	량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옵 선택된 항목의 데이터 취소합니다. 이나요(<u>N)</u> 취소 (주)포영전자	입니다. 1만 다시 가져옵니다.	적격증방 적격증방 적격증방 적격증방 3.적격증방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2012-04-27 00002 053 2012-05-01 50003 053 2012-05-15 50002 053 2012-05-16 50004 053 2012-05-25 50003 05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조모품비	데이타를 새로 할 에 : 모든 아니오 : 현재 취 소 : 현업 예(Y) 00205	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돕 선택된 항목의 데이터 출 취소합니다. 이나오(№) 취소 (구)오영전자 (주)민선컴퓨터	입다. 1만 다시 가져옵니다. 6,500 3,500	적격증방 적격증방 적격증방 적격증방 3.적격증방 3.적격증방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2012-04-27 00002 053 2012-05-15 50003 053 2012-05-15 50002 053 2012-05-16 50004 053 2012-05-25 50003 053 1) 적격증빙수취의무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오모둠미 000 소모품비 의외-건당3만원 이	데이타를 새로 할 예 : 모든 아니오 : 현재 취 소 : 작업을 예(Y) 00206 하	담진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옵 선택된 항목의 데이터 을 취소합니다. 이나나오(N) 취소 (수)모영전자 (주)민선컴퓨터	3니다. 1만 다시 가져옵니다. 6,500 3,500 0	적격증방 적격증방 적격증방 적격증방 3.적격증방 3.적격증방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2012-05-01 50003 053 2012-05-01 50003 053 2012-05-15 50002 053 2012-05-16 50004 053 2012-05-25 50003 053 1) 적격증빙수취의무제 2) 적격증빙수취의무제	000 000 000 000 000 000 조모품비 외_건당3만원 이(외_기타	데이타를 새로 할 에 : 모든 아니오 : 현재 취 소 : 작업을 에(Y) 00206 하	달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옵 선택된 항목의 데이터 을 취소합니다. 이나니오(N) 취소 (주)모영전자 (주)민선컴퓨터	입니다. 1만 다시 가져옵니다. 	적격증방 적격증방 적격증방 적격증방 3.적격증방 3.적격증방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2012-04-15 50002 053 2012-05-01 50003 053 2012-05-15 50002 053 2012-05-16 50004 053 2012-05-25 50003 053 1) 3적측량방수취의무제 3) 좌격증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데이타를 새로 할 에 : 모든 아니오 : 현재 취 소 : 작업을 에(Y) 00205 하	달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올 선택된 항목의 데이터 을 취소합니다. 이나요(N) 취소 (주)모성전자 (주)민성컴퓨터	입니다. 1만 다시 가져옵니다. 8,500 3,500 0 0 0 58,890	적 적 증 방 적 적 증 방 적 적 증 방 적 적 증 방 3. 적 적 증 방 3. 적 적 증 방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2012-04-27 00002 053 2012-05-01 50003 053 2012-05-15 50002 053 2012-05-16 50004 053 2012-05-16 50003 053 2012-05-25 50000 050 2012-05-25 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소모품비 외_건당3만원 이(1외_기타	데이타를 새로 할 수 있는 것 이 이 아이 가 있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탈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된 선택된 항목의 데이티 실 취소합니다. 이나오(№) 취소 (주)모양전사 (주)민선컴퓨터	하나다. 1만 다시 가져옵니다. 8,500 3,500 0 0 58,890 0 0 58,890 0 0	적 적 증 방 적 적 증 방 적 적 증 방 적 적 적 증 방 3. 적 적 증 방 3. 적 적 증 방 3. 적 적 증 방	
	10.차량유지비 11.외주가공비 12.기타경비	2012-03-17 50001 053 2012-04-03 00004 053 2012-04-15 50001 053 2012-04-27 00002 053 2012-05-01 50002 053 2012-05-15 50002 053 2012-05-15 50003 053 2012-05-16 50004 053 2012-05-25 50003 053 1) 작격증방수취의무제 3) 작격증방 4) 작격증방외의 증방 5) 증방불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소모품비 외_건당3만원 이1	데이타를 새로 할 예 : 모든 아니오 : 현재 취 소 : 작업) ወሀሪሪ 00206 하	러오시겠습니까? 데이타를 다시 가져된 선택된 항목의 데이터 실 취소합니다. 이나오(№) 취소 (주)모양전사 (주)민선컴퓨터	3니다. 1만 다시 가져옵니다. 	적 적 증 방 적 격 증 방 적 격 증 방 3. 적 격 증 방 3. 적 격 증 방 3. 적 격 증 방 3. 적 격 증 방	

4)표준원가명세서 항목

	1 2 4 4 4 7 7 4 7 7 7 7 7 7 7 7 7 7 7 7 7	전계즈비스	* 0 0 10		τ., r	저겨주비 /		
항목	당기계상액	거단3만원이하	기타	24		저겨주비	F위 피구 정경준비와준비	주반불비
1.당기재료매입액		LOULEIM	14	2,	383,652	2,383,652		002-1
2.운임 3.수선비					43,500	43,500		
4.소모품비 5.임차료			이 기 뒤 하나이 나는 데 아		58,890	58,890		
6.보험료 7.복리후생비 8.여비교통비	제 제 제	문권가당세지과 좋 로불러옵니다. 이타를 불러오시겠;	글가연왕에서 데이 습니까?		13, 750	13, 750		
3. 접대비). 차량유지비 L 이 조리 고비		예(ỵ) 아니!	2(<u>N</u>)			105 000		
1.피우가용비 2.기타경비					185,000	185,000		
표준원가명세서상 급	[여지급현황]							
항목 급여와 임금·제수! 차이원인	1 당기계: 당	2 비교 삼액 과세대실	세 3 3	3계	지급명세/ 근로소득	에 지출금액 (연말정산) 근로:	산득(일용근로) ^{차0}	금액 (1-(2+3)



(4)기타/사업용계좌

5.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거래일자		계전기모		공급자				증빙불비원인
	2012-02-05	081100	복리후생비	101	가영전자	이주영	111,000	커피구입	발급거부
					-				
	-								
				-					
	1			_					
					-				
				1					

9.특이사항기술서(성실신고확인결과)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항 목	특 이 사 항	비고
사업현황		
수입금액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적격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방금액 일치 여부>	
증빙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시	
비용	적격증빙 없는 비용에 대한 내역 누락 여부>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예시)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촌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	
인선미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재학, 해외 유학 또는 구봉은 주인 자에게 지금한 인거비 	
	(예시) • 사업용 치량수를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주유비	
차량유지비	• 사업규모 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손비족 소유의 자량에 대한 주유비 (제대) · 가족·치청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동신비	· 업무와 관련 없는 동신기기에서 발생하는 동신비	
복리후생비	(예시) • 점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가족 및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접대비	(예시) • 국내관광지 및 해외 여행 시술 경미 • 업무와 과려이 없는 유홍주전 지충 경비	
	(예시)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이자비용	•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감가상간비	이사미용 (에서) • 업무와 과려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간기산각비 계상	
권자 이 이 이 기 기 다 하나 아이	(에지) ·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하는 건물의	
신굴완리미	관리비계상	
지급수수료	(예시) · 좀업원의 봉사료와 관련하여 계상된 카드수수료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수수료	
성실신고		
확인자		
종합의견		



10.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구	녂	회 안 가용	사업자확인 (예. 아니오)	비고
		패출채권의 창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창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창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_	확인합니다.(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공	사척사용 등 원안을 기채하시기 바랍니다)		
	통	시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하는 거래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동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사업용계좌외 진·인적 종엽원 등 타인 명위의 제네이 이국되 소이국에요 레네이 노란테 세세지		
ļ oji		시원에 갑금면 수갑금액을 장구에 수약한 사실이 어수요 화이하니다.		
코		(항국여산조·이미네(국어조) 3mtk의 신사 항국가방법)		
ᇜ		(전급 8구8 전국에 대한 10 전급 8구8 전급 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확		확인합니다.		
01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자급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언	(천문인척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임건에 대한		
	총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		
	별	압니다.		
		(신군인작용역) 중도원 사건에 대한 상용모두급을 차별에 노라하 시스비 어역은 헤이하니다.		
		· (이글어죽) 비너런 스이오 지금은 적인입니다. - (이글어죽) 비너런 스이오 지금수이국에서 호하		
		(나포김중) 바오면 구경을 신파구경금색에 포함 하여수는 화이하니다		
		(의료여조) 비과하고 있는 인인수인근애치계표		
		여금축난부 및 매출워창 등이 서로 일치한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기	명 또는 인)
<u> </u>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이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금액 확인(업종별)온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중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12 전자신고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마감 "후에 전자신고(정기분)메뉴에서 전자신고용 파일을 제작하 여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다.

1.신고서 변환방식 이용절차(5월2일 홈텍스 전자신고 오픈예정)

① 신고서 작성 및 파일생성(C:₩ersData)

사용 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한다.

12	1인구분	1 (1.세무대리인신고, 2.납세기	다 자진신고)	제작경로 :	C:#ErsData		
1	코드	소득자명(회사명)	주민등록번호	마감회사	회계기간	서식번호	서식명
	2048	한성민(개인기업)	780523-2112420	2048	01-12	C801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C802	이자소득명세서
I						C803	배당소득명세서
						C804	사업소득명세서
						C806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C807	이월결손금명세서
						C808	소득공제명세서
						C810	세액공제명세서
T						C813	기납부세액명세서
						C814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T						C815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F.						C816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						C81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C818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C820	조정계산서
						C821	표준대차대조표
						C822	표준손익계산서
						C823	표준원가명세서
Ť.						C824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F						C835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C839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T						C84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T						C842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C843	유보소득조정명세서
t		서택이워 1면 / 마간소·	트이워 1 며			C844	소득구분계산서

② 신고자료 변환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자료를 변환한다.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 [프로그램설치]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③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

④ 신고서 전송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전송하기] 화면에 접근한 후, 전자신고할 신고서를 선택하고 [전송]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전송한다.

註 종합소득세진자신고	- [변환대상]			_ 🗆 ×
모양 국세칭	신고자료 변환 전자신고 대상파일을 전자	신고용으로 변환하는 화면입니다.		
	신 고 세 목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	세ㆍ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기	다진납부계산서	
➡ 신고자료 변환	변환대상 파일선택			
📎 변환대상파일선택	■ [신고파일찾기]를 클릭하며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 C:♥ersData♥	!한 국세청 신고용 파일을 저장한 🕯	폴더에서 찾은 후 [변환]하시기 바	랍니다.
🖕 벼화격과 조회	20130523-801 20130523-801 .enc -			
·	반드시 암호화가 된 "년월일.xxx 변환하여야 한다.	enc파일을 선택하여		
정상자료				
	1 개의 파일이 선택되었습니다.	변환	하기 전체선택 새로:	고침
🙈 전송하러 가기	파일 변환 결과			
	 변환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이름 변환 	·대상 오류발생	정상변환 변환	라인수
응말				
개인정보보안을 위한				
PC신고자료 삭제				
				다음

⑤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 때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수증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 여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재설치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한다. 접 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네트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이 경우 에도 다시 전송해야 한다.

2.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하여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 고기한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미등록사업자의 신고

자유직업자 등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오류에서 제외한다. 기장소득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29 으로 입력한다.

업종코드	업태 · 종목	비고
522080	소매업(담배)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523984	소매업(우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523985	소매업(인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525101	전자상거래업 ※2008년5월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525200	다단계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94****	자유직업(자영예술가 등 자유직업)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701101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701103	주거용 건물 임대업(공동주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701104	주거용 건물 임대업(다가구주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730000	연구 및 개발 용역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671201	국공채매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51102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51103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703021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703022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851903	안마사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950000	가사서비스업(놀이방,보모등)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950001	가사서비스업(가사보조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950002	가사서비스업(놀이방, 어린이집등)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미등록사업(업종) 리스트



14 공동사업자의 신고서 작성

공동사업자의 비대표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회사등록을 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장의 회사등록사항과 동일하게 등록을 하면 안되고 비대표자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회사등록에서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등록에서 공동사업장 여/부에서 "여"로 선택한다.

 ③ 공동사업장은 신고자 각각의 지분율 대로 신고서에서 해당금액을 편집해 주어야 하며, 첨부서식은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만 전자신고로 수록하여야 한다.
 ② 비대표자는 신고서만 전자신고로 신고한다.

1.사례(갑은 공동사업장이고,을이 대표자, 병은 비대표자임)

(1) 갑,을,병으로 각각 회사등록을 할 경우(을,병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분	회사코드	회사등록대표자주민번호	주된소득자주민번호	신고서회사코드
갑	1001	을(대표자)주민번호	을(대표자)주민번호	신고서작성안함
olu	1002	을(대표자)주민번호	을(대표자)주민번호	1001
병	1003	병주민번호	병주민번호	1001

(2) 갑과 을이 한 회사로 회사등록을 하고, 병(비대표자)이 회사등록을 할 경우(을,병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분	회사코드	회사등록대표자주민번호	주된소득자주민번호	신고서회사코드
갑,을	1001	을(대표자)주민번호	을(대표자)주민번호	1001
的	1003	병 주민번호	병 주민번호	1001

(3) 병(비대표자)만 회사등록을 한 경우

수임업체가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만 있어서 신고서만 작성하기 위해 임의로 회사등록을 하는 경우(병만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분	회사코드	회사등록대표자주민번호	주된소득자주민번호	신고서회사코드
お	1003	병주민번호	병 주민번호	1003

2.특수관계인의 공동사업장

거주자 1 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일정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 과세한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은 그 중 1 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특수관계인들과 기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은 특수관계자 중 1 인과 기타 다른 사람들의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전산신고 수록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신고서(복수)의 소득금액계산명세 입력시 소득구분이 같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으면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계산에 관련된 서류를 전자신고에 수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와 부동산임대소득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 및 부속서류는 서식(원장)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대표자가 작성한 사본을 첨부하면 됨.)

(1)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만 있는 경우
①회사등록의 대표자명란에 비대표자 성명 입력
②대표자주민번호란에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자택주소란에는 비대표자의 주소를 입력
④주소지관할세무서란에는 비대표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를 입력
⑤주된소득자 주민등록번호란에 비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①신고서 작성 - 공동사업장 여부란에 "1.공동사업장" 선택
②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회사코드를 입력하지 않는다.(첨부서식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2)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가 다른 기장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기장소득의 회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별도로 회사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신고서의 부동산임대 및 사업소득명세서에 안분 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공동사업장여부에서 "공동사업장"을 선택,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15 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이하 부속서류)를 인계받아 취합하여 신고서를 작성 신고하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타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인계받아 신고하는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를 위해 별도로 회사등록을 하고 [조정계산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표준재무제표, 조정반 변경(지정)신청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 타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공동사업장의 공동대표자분인 경우에는 회사등록을
 하고, 위에 나열한 전자신고 수록서식을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비대표자분인 경우에는
 회사등록을 하여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비대표자 회사등록시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은 본인(신고자)것을 쓰도록 한다. (공동사업장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타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인계받아 전자신고를 위해 회사등록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입력시 반드시 [타세무대리인]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신고를 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것으로 전자신고에 수록된다.

⇒ 전자신고시 타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반 변경(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만 한다

Esc 종료 F1 도움 *F5 전체	삭제 [F9] 인쇄	FII] 저장	F12] 불러오기	ľ						
소 득 구 분 40 ;	30. 부동산임대(겁에서 발생	한소득 40). 부동산임대	#업외의 사업	소득	성실사업자	0	0. 부	1. 여
대리구분 1	1. 기장 2	. 신고 🔅	3. 자기조정							
구		Elt	<u>t</u>			금		액		
10. 결	산서 상당	기 순 이	익						1,399	9,679,060
~ 두 ㅈ 저 그 애	11.총수업	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1.08	3,197,304
소득소성금객	소득조정금액 12.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								400	0,000,000
13. 차	가 감 소 득	≒ (10+11−	12)						1,10	7,876,364
14, 7	부 금 한 5	E 초 과	액							
15. 214	부금이월액 중 필	달요경비산업	빌액						1	2,000,000
16, ōiļ ;	달 과제 기간 소	특 (13+14-	15)		2.	타세무대리인난을 더불	클릭하여 입력		1,10	5,876,364
세무대리 구분	1	1.	세 무 대	리인		2. 타세크	무대리(세무/회	계법업	인)인 등록	
17. 성 명		김잘난		18.	전 화 번 호		02 - 3270	- 62	92	
19. 관 리 번 호	U -	2269	- 8	20.	조정반 번호	서울	청 -		2269	
세무/회계법인 구성원작성분	0,	부	1. 여	사물	법자 등록번호		107-86-	09515		
세무/회계법인이 기장(조정 을기입합니다.)한 경우에는 시	업자등록번	호를 입력하	지않고, 조정	경계산서의 관	리번호는 실제로 조 신고년월	정한 세무대리? 일	인(구: 년 [0	성원)의 관 05 월 3	리번호등 11 💽 일

<타세무대리인등록>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이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세무조정 업무를 타세무대리인이 수행했을 경우 에는 조절계산서등을 타세무대리인에게 인수해야하므로 타세무 대리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타세무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예(Y) 아니오(N)



16 최저한세

1.의의

최저한세란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꼭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조세로서, 각종 조세지원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일정액 이상의 조세(최저한세)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의 산출세액의 35/100 상당세액,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산출세액에 35/10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최저한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감면후세액란은 소득세신고서에서 자동반영되므로 소득세신고서에서 산출세액까지 작성된 후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후세액란의 산출세액은

[신고서상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의 산식으로 자동계산된다. 따라서 신고서에서 자동반영되는 감면후세액란의 각 항목 금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된다.

※ 사업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이외의 소득이 있는 복수소득자의 경우 최저한세는 사업소득금액에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니, 사업소득금액만으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조특법 § 16)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소득을 포함한다.

(1)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부동산임대 존재시(신고서에서 최저한세적용체크) [예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를 15,000,000,000원을 하고, 부동산임대에서 투자조합소득공제가 3,000,000원있다고 가정하고 작성한다.

Esc 종료 F2 3	8드 [F3] 마감 [F	4] 정렬 F5] 식제 (Ctrl) 전1	비삭제 F6 추가입력 F7	미납일수 F8 무기장가산세	네 <u>@F8</u> 성실미제출가산세 [F9 인쇄 F11 저장 F12 조희
1.소득금액	경세 2.이월결	손및공제 3.원천장수.준	비금 4.소득공제명세서	5.가산세명세서 6.4	주택매매등계산 7.금융소득	계산 8.종합소득계산
신고유형: 2 1	.자기조정 2.외	부조정 3.성실납세 4.간편	· 전장부 5. 추계-기준 6. 추기	계-단순 7.비사업자 8.성	실신고 대리구분: 11.	기장 2.조정 3.신고 4.확인
기장의무: 1	1.복식부기의무	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이신고일	자,거주지국등의 입력은	F6-추가입력에서 합니다.	근로필요경비내역
이자소득	50,000,000	배당소득 33,300),000 공동배당	근로소득	1.1.1.1	
부동산	463,106,439	사업소득 641,408	3,292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	소득 1,187,814,731
		1	2	3	4	5
1.소득구분3	리드 -일련번호	11 - 1	21 - 1	30 - 1	40 - 1	
2.신 고 유	위 형 코 드		1	12.외부조정	12.외부조정	
3. << 관련	회사코드 >>			3000	2048	
4.상 호	or 법인명	이자잘주는은행	배당잘하는기업	(주)부동산	개인기업(사업)	
5.사 업 자	등록 번호	412-81-54106	105-87-32394	105-87-32394	104-03-11251	
6.주 민 등	등 록 번 호					
7.주 업	종 코 드			519910	292203	
8. 총수입금역	벽(이자, 배당)	50,000,000	30,000,000	500,000,000	2,986,976,800	-
9.필요경비	(배당대상액)		30,000,000	36,893,561	2,345,568,508	
10.배당가산역	빅=대상액X11%		3,300,000			
11.소득 금 역	빅(이자, 배당)	50,000,000	33,300,000	463,106,439	641,408,292	
12.원천징수서	네액 - 소득세	7,000,000	4,200,000			
13.원천징수서	네액 - 농특세					
14.이월결손금	금공제 여 부					
15.공 동 사	업장 여 부				1.공동사업장	
16.최저한세격	력용대상 소득			1.최저한세적용		
17.과 세 기	간 시작일			2012-01-01	2012-01-01	
18.과 세 기	간 종료일			2012-12-31	2012-12-31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9.사업장	국내 여부			1.국내	1.국내	
	소재지국코드			[KR]한국	[KR]한국	1



공제 세액 계산 당기공제세액 및 미월액 계2	<u>AF</u>		
🚺 1. 공제 세액 계산			
구분	투자금액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5,000,000,000	3%	450,000,000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탕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7%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계산내역-F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내역-F4]		

(2)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

Image: Big Tot				
· ④구분	⑥감면후금액	⑥최저한세	⑦조정감	③조정후금액
(101)결산서상당기순이익	1,484,617,427			
▲ 드 _{저 국 어} (102)총수입금액 산 입	108,197,304			
조득조성금칙 (103)필 요 경 비 산 입	400,000,000			
(104)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01+102-103)	1,192,814,731	1,192,814,731		1,192,814,731
최저한세적용대상 (105)준 비 금				
E 법 비 묘 (106)특별상각,특례상각				
- (107)소 계				
(108) 특별비용필요경비산입전소득금액(104+107)	1,192,814,731	1,192,814,731		1,192,814,731
(109)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 · · · · · · · · · · · · · · · · ·			
(11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	2,000,000	2,000,000		2,000,000
(111)이 월 결 손 금	5,000,000	5,000,000		5,000,000
(112)차 감 소 득 금 액(108+109-110-111)	1,185,814,731	1,185,814,731		1,185,814,731
(11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 득 공 제	3,000,000		3,000,000	
(114)소 득 공 제	10,600,000	10,600,000		10,600,000
(115)과 세 표 준(112-113-114)	1,172,214,731	1,175,214,731		1,175,214,731
(116)세 율				
(117) 산 출 세 액	382, 930, 515	341,229,106		341,229,106
(118)최 저 한 세 (117 X 35%)		119, 430, 187		
(119)세 액 공 제	450,000,000		228, 201, 081	221,798,919
(120)감 면 세 액	-			
(121)차 감 세 액				119,430,187
	4	부동산: 463,106,439 = 46	63,106,439(소득) - 0(차김	액)
최저한세적용대상소득금액	1,099,514,731	나 업: 636,408,292		
종 합 소 득 금 액	1,182,814,731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F6,차감입력**]

·최저한세적용대상의 부동산소득에서 결손금,미월결손금에 해당 미력하며 경소그 미월경소그 고제호 부도사소득그애을 게상해	하는 금액을
구 분	금액
(이월)결손금 차감전 최저한세적용대상 부동산금액	463,106,439
위금액중 결손금,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차감금액 (-)	
최저한세적용대상 부동산소득금액 (=)	463,106,439
최저한세적용대상 사업소득금액 (+)	636, 408, 292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금액 계 (=)	1,099,514,731
[참고]종합소득세신고서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합계	



(3)세액공제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 입력

Esc	5元 F1	도움 F2 코드	F3 가로축소 F4	계산내역 F5 삭제	Ctifl 전체삭제	F6 최저배제 F9	인쇄 FLL 저장	F12 불러모기						
/	공제 /	네약 계산	당기공제세역 및 0	휠액 계산										
2 2.	당기 공제	눼 세액 및 이월역	[계산											
	(8)	공제할	네액				당기공제대상세액				(18) 최저학세적용	(19)공제세액	(20) 스며	(21)이월액
_	과세기간	(9)당기분	(10)이월분	(11)당기분	(12)1차연도	(13)2차연도	(14)3차연도	(15)4차연도	(16)5차연도	(17)계	에따는미공세세액	(17-18)	(20)128	(9+10-19-20)
	2012	450,000,000		450, 000, 000						450,000,000	228, 201, 081	221,798,919		228,201,081
1														
9														
		450,000,000		450,000,000						450,000,000	228, 201, 081	221,798,919		228,201,081
2														
-														
-														
1	합 계	450,000,000		450,000,000						450,000,000	228, 201, 081	221,798,919		228, 201, 081
100														

(4)종합소득세신고서에 기재

[세액공제 배제후 금액입력]

Esc 종료 F2 코드 F3 마감	F4 정렬 F5 삭제	●F5 전체삭제 F6 추 Ctrl 전체삭제	가입력 [7] 미냅일	÷ F8] 공제감면	연조회 (PF8) 성실미제줄:	가산세 [F9] 인쇄 (F11 저장 F12 조희
1.소득금액명세 2.이울	결손및공제 3.원천	징수.준비금 4.소득	공제명세서 5.7	·산세명	세서	6.주택매매등계산 7	금융소득계산 8	.종합소득계산
🚺 세액의 계산				2 1	비액감면			
구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코드 ()해당법조문(제목)	③금액	④사업자번호
21.종 합 소 득 금액	1,182,814,731			1				
22.소 득 공 제 계	7,600,000				-			
23.과 세 표 준(21-22)	1,175,214,731	187,962,678						
24.세 율		10 %				계		
25.산 출세 액	413,081,597	18,796,267		1001	108 77 -01	200 7 010		
26.세 액 감 면					이 각 승지마			
27.세 액 공 제	225, 118, 919			1	202 8	배당 세액공제	3,300,00	0 104-03-11251
28.결 정 세 액(25-26-27)	187,962,678			3	244 1	<u>역사진고 세약공세</u> 5시기어트지 세애고*	20.00 al 221.709.01	U 104-03-11251
29.가 산 세				4	CC1 c		4 221,730,3	3 104 03 11231
30.추 가 납 부 세 액					1	계	225,118,9	19
31.합 계(28+29+30)	187,962,678			1	기난부세	앤면세		
32.기 납 부 세 액	22,400,000	2,240,000			18 1.59	78 78	자트네	노이초트려네
_{↑L} 33.납부(환급)할 총세액	165,562,678	16,556,267		1.7	는 군ト	~ 문 예 납 세 액	프득세	공기근국물제
^r 34.분납할세액(2개월내)	50, 459, 912			2.5	지등매대	배차익예정신고납부		
^감 35.기한이내 납부할세액	115,102,766	16,556,267		3.5	지등매대	배차익예정고지세액		
				4.4	= \	부 과 세 액	7 000 000	
5 국세환급금계좌				원Ź	*장수세*	객 6배다스트	7,000,000	
예입처 코드 😪		은행	본,지점			. 7.사업소득	11,200,000	
예금종류			예 금	빛	립세소입	8.근로소득		
계좌번호				7	실수세액	9.연금소득		
				11		10.기타소득	00 400 000	
				11	시 답	두 세 액 압계	22,400,000	

[중소기업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 적용배제]

33	진세특려	체제한법상 소득공제		
	코드	23.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25.금액	26.사업자번호
1				



(5)세액공제신청서 작성

ⓒ구분	⑦근거법 조항	③코드	③공제율(%)	⑩대상세액	(1)공제세액
(10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31	3.0%	450,000,000	221,798,919
(10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75			
(103)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3항	4M			
(10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32			
(105)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6항	34			
(106)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5항	76			
(107)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명 제21조제4항	35			
(108)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명 제22조제2항	36			
(109)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110)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111)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명 제22조의4제2항	98			
(112)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2010)	37			
(11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1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특	영 제26조2제2항	4S			
(115)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8			
(11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 4제3항	4Q			
(117)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91			
(118)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94조제4항	42			
(119)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명 제104조의2제3항	94			
(12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121)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122)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5항	1A			
(123)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3항	40			
(124)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104조의22제2항	4P			
(125)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41			
(126)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4K			
(12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	법 제104조의18제4항	4R			
(128) 세앤고제 하계		50		450,000,000	221 700 010



거래자료를 일괄 자동수집하고, 자동분개 및 자동입력 하는 자동기장 프로그램 ONECLICKTAX

 기타-1
 원클릭택스(0CT)

 스크래핑회사설정

 스크래핑내역조회

 전표미처리현황

 전표미차현황

 여세로

 사업용(화물복지)신...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여신)

 통장거래

1.원클릭택스(OCT) Process





2.메뉴별 사용 안내

(1) 스크래핑 회사설정

49		11.75										380555	Bill u	1210355	- NE
1	2.0		≂≋ िििथ⊂ सिथा	1	ANGAN	(iii	ী থক্তৰ জিনি গৱ	N. B.B.	(a) २ थे।			1.11.11.11		at 147533	
<u>n</u> .	-	100		- 1.2	1 million and	100	Janes (m)	10/5511)	1000	_					
		코드	퇴사님께	구분	사용	1	회계연도	제	9 21 201	2년 01	월 01 일	- 2012 1	년 12 월 31	- 22	
		0101	당당수직회사(예안데곱	법인	비사공	2	사업자등록번호		05-87-091	22					
-	1	2000	부가세=개인간이 보기네_개인간이	7823	E 21/10		CANTER .	214	101						
2		2001	· · · · · · · · · · · · · · · · · · ·	1221	nute	100	CPUTT AR	80	12						
	and i	2002	· 가네이이건물인(유용	HOL	till 18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신	At						
	100	2004	#7141-380(210)	7601	DITTE		국세청 e세로	彩灯	0	증서명		발급업자	종료밀자	동의	사용
7		2005	보기세-일반(경전청구	101	미사용		인증서								
	-	2006	부가세-총괄사업장(본	1191	미사용		신용카드(매입) /	현금영수	중						
á	1	2007	부가세-총괄사업장(지	변인	미사용			1	분	1 2	010101	6	일번호.	동의	사용
0	10	2008	부가세-일반(수정신고	법인	미사용			사업용	신용카드						
1	10	2009	부가세-일반	법인	미사용		ANNS DESTE	복기	니카드						
2	10	2010	부가세-개인일반(의제	78인	미사용		C. A. INCOMENTATION AND	현금	영수증						
3	1	2011	부가세-일반(조기환급	법인	미사용		신용카드(매출)								
4	100	2012	부가세-사업자단위(본	법인	미사용		여신물	38			otolci	B	일번호	동의	사용
5	1	2013	부가세-사업자단위(지-	법인	미사용		23	1							
6	1	2014	부가세-사업자단위(롱	법인	미사용		AR 141 17 18								
7	1	3000	원천장수-근로(뉴젠네	법인	미사용	*		1.1.1.1.1		-					
8	10	3001	원천징수-급여자료	법인	미사용		운영영	게와	12	イモ	ototra		미일번호	종의	사람
9	F .:	3002	원천질수~사업,이자,비	법인	미사용	12									4
0	11	3003	원천정수~이자,배당	법인	미사용	15								-	
1	10	3004	원천장수-기타.이자.비	법인	미사용	5								-	
2	10	3005	원천징수-근로(위탁)	법인	미사용	5									
3	1	3006	원천장수-근로	법인	미사용	5									
4	10	3007	원천장수-근로(위탁)	법인	미사용	15						_			
5	10	3008	원천징수~근로(위탁)	법인	미사용	10									
6	17	3011	뉴진솔루션	법인	미사용	E	-								
7	100	3012	당당주식회사(예안테스	법인	미사용	15								-	
8	1.	3013	마감후이렴	법인	미사용	E									

◉ 참고

로그인 아이디에 권한 설정된 모든 회사를 기본적으로 등록합니다. 회사정보는 세무사랑의 회사등록 사항을 반영하므로 회사등록이 수정되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스크래핑 사항 외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가. <F6 스케쥴설정>

- 스크래핑 스케쥴을 설정합니다. 설정된 스케쥴은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합니다.
- 스케쥴형식 : 0.사용안함 1.매일 2.매주 3.매월 중 선택합니다.
- 요일 : 2.매주 선택 시 추가 설정 항목입니다.
- 일자 : 3.매월 선택 시 추가 설정 항목이며, 1일 이상 입력 가능합니다.
- 시간 : 1.매일 2.매주 3.매월 선택 시 모두 설정하며, 기본 19시 00분입니다.
- 스케쥴 스크래핑 작업 후 시스템 종료 : 시스템 종료를 원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 나. <F11 인증서등록>
 - e세로 불러오기 가능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증서는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합니다.
 -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 수임업체 여부를 선택하고, 수입엄체 1.여인 경우는 세무대리인 관리번호까지 입력합 니다.
- 다. 스크래핑 항목설정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 <F11 인증서등록>에 등록된 인증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매입)/현금영수증 : [국세청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등록합니다. 기존 회사코드의 '국세청사업용(복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자
 동분개' 메뉴에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자동 반영합니다.



- 신용카드(매출) :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 계좌등록 : 기존 회사코드 '계좌등록' 메뉴에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자동 반영합니
 다. 본 메뉴에서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회사의 '계좌등록' 메뉴 데
 이터가 동시에 변경되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 동의 및 사용은 <F8 일괄등록>으로 가능하며, 전체 또는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2) e-세로

UAI: 7777 ⓒ (주) 뉴전율루선 조회기간: 2013년 03 + 월 9일 - 2013년 03 + 월 9일 구분: 1.대출 + 처리: 0.전체 + 전호간속 역시·거래체필 역시·사용 왕월 방금일자 전·출입자 유형 중목 수당 단가 공급가역 부가세 발행 공급처 표매 처리 처리일기 (50-09 2013-03-12 2013-03-13 과세 세우사당~은 500,000 등0.000 정상 00136 (무나나님과 외상 (50-09 2013-03-12 2013-03-13 과세 세우사당~은 500,000 등0.000 정상 00136 (무나나님과 외상 한 계 [2 1] 550,000 등0.000 등0.000 정상 00136 (무나나님과 외상 환 계 [2 1] 550,000 등50,000 등50,000 등50,000 관리대가(함께) 55.000 승인번호 201300094100004220690023 수정비고 기신세 인당 문송 2015년 12 2015년 14 동작으로 문송하시기 바랍니 편 제 공급적 특수가에 공급적 통족권보 [Tipl 원 해유의 가신세 인당 문양순 2015년 12, 3 호만 가신세 태양대부는 목색송으로 문양하시기 바랍니 분 제 경과목 적요 거래치 지난 원 명유의 가신세 인당 문양순 2015년 12, 3 호만 가신세 태양대부는 목색송으로 문양하시기 바랍니 분 제 경과 목 적요 가십 전 12 명터 월날 00134 (주)가 감사 55,000 5.000 10 1000 외상 2016년 13 1 Liser 입러 월날 00134 (주)가 감사 55,000 5.000] =	물질	· 전표처(의 한 자 문개인	입역	[8] 유영일	1993 -	- (1) 인터	fu	바1로 보	短212	() 사용법	3271 -	2	제임	입님 이	特督	新装制具 公司
한호간은 대시 가려체별 대시 내용 ································	٤l	1777	(٢	5)뉴젠슐루션	3	회기간: 20	3.6	03 • W	9 2	- 20	13년	03 • 월	9.21	구동	1.01@	* X	21: 0.1	전체 -
1 월일 발근입자 전용입자 유형 중유 수량 단가 공급가역 부가세 발범 관금처 21 처리 처리입자 [15:12] 2013-00-12 2013-00-13 과세 세무사람·후 50,000 50,000 경양 00134 (종)가가용색 약상 15:16 2013-00-12 2013-03-13 과세 세무사람·후 500,000 50,000 경양 00135 (종)가유색 약상 10:16 2013-03-13 과세 세무사람·후 500,000 50,000 경양 00135 (종)가유색 약상 환 계 [212] 55,000 55,000 55,000 55,000 환 계 [212] 55,000 55,000 55,000 55,000 관금대가(법개) 55,000 승인번호 20130305410000420569023 수정비고 가신색 해당여부는 국색용으로 말하사기 배었다 관리대가(법개) 55,000 승인번호 20130305410000420569023 수정비고 가신색 해당여부는 국색용으로 말하사기 배었다 변 제정과목 적으로 거래치 가색 여유금 세우사람·회계 10:8만 당녀 월날 00134 (종)가 당산 55,000 50,000 분 제 외우사람·회계 10:8만 당녀 월날 00134 (종)가 당산 55,000 50,000		전표전	8	대사,거래처벌	CH.A	841.0												
1 1 50,000 5,000 22 0034 (00,34 (00,07,94 /r) 외상 103-06 2013-00-12 2013-00-13 3+# 세 부사당-한 50,000 50,000 22 00135 (PHU+124 /r) 외상 1 </th <th>1</th> <th>말일</th> <th>발급입자</th> <th>전송일자</th> <th>유협</th> <th>춤육</th> <th>수영</th> <th>단가</th> <th>70</th> <th>급가액</th> <th></th> <th>부가세</th> <th>발행</th> <th></th> <th>공급처</th> <th>분개</th> <th>처리</th> <th>처리일자</th>	1	말일	발급입자	전송일자	유협	춤육	수영	단가	70	급가액		부가세	발행		공급처	분개	처리	처리일자
[10-08 2013-00-12 2013-00-13 관세 세우사양·문 합계 [2 1건 550,000 65,000 262 00135 메니나요^ 외감 환계 [2 1건 550,000 65,000 관리대가(한제) 55,000 순인번호 20130094100004220690023 수정비고 기신세인내 방법 제정권표 특수가해 공급적 통확권보 [[10] 분해유명 가신색 인보는 단순분과 환입니다. 참확한 가신색 반당이부는 목색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변 개정과목 적요 지유사양·원계 1056 일대 월날 00134 (야가가당수 155,000 변 25500 부가내에수금 세무사양·원계 1056* 일대 월날 00134 (야가가당수 155,000 환계 55,000 55,000 55,000	R	G-09	013-03-1	2 2013-03-13	과세	세무사령-3				50,0	00	5,000	경상	00134	(年)777784	외상		
발 계 [212] 650.000 65.000 공급대가(법계) 55.000 유인번호 20130305410000422069023 수정비고 가신세인내 매일레용전표 목수거에 공급적 통력절보 [Tipl 분 해누의 가신세 안내는 문순성고류답니다. 정확한 가신세 해당대부는 국내성으로 분약하시기 바랍니 보 제정과목 적요 거래치 가신세 안내는 문순성고류답니다. 정확한 가신세 해당대부는 국내성으로 분약하시기 바랍니 반 1000 작년/외에 승권 세무시 당·회계 108년 당대 월날 00134 (여가가당세 55.000 55.00 번 40100 상품여 술 세무시당·회계 108년 당대 월날 00134 (여가가당세 55.000 55.00	1	3-09 2	013-03-1	2 2013-03-13	과세	세무사람-	ł	_		600.0	00	60.000	경상	00135	(추)나나살사	외상		
합 계 [2]2 650,000 65,000 관금대가(합계) 55,000 승인번호 20130009410000420660023 수정비고 가산세인내 패인배용전류 복수거래 공료적 동쪽철보 [Thel 번 해누의 가산세 만남는 단순호교통입니다. 동확한 가산세 태양대부는 국세성으로 분약하시기 바랍니 본 제정과목 적으 거래 사람(金금) 대부분 인수 환자의 가산세 태양대부는 국세성으로 분약하시기 바랍니 번 1000 위상대승규는 제작시원 관계 10호만 인수 확실 00134 (여)가가 당세 번 25500 부가내에 수금 세우시원 회계 10호만 입다 확실 00134 (여)가가 당세 번 25500 부가내에 수금 세우시원 회계 10호만 입다 확실 00134 (여)가가 당세 번 25500 부가내에 수금 세우시원 회계 10호만 입다 확실 00134 (여)가가 당세 번 25500 부가내에 수금 세우시원 회계 10호만 입다 확실 00134 (여)가가 당세 번 25500 분가내에 수금 세우시원 회계 10호만 입다 확실 00134 (여)가 당세											_							
발 제 [21]건 650,000 65,000 관급대기(함께) 55,000 유인번호 201303094100004220680023 수절비고 기신세인내 배입해용전표 특수가해 공료적 동쪽정보 [Tipl 원 해누명 가신세 안당는 단순성교용입니다, 참판한 가신세 태당대부는 무세성으로 운영하시기 배랍니 분 제정과목 적 유지상 강태는 단순성교용입니다, 참판한 가신세 태당대부는 무세성으로 운영하시기 배랍니 변 10500 위가세에수급 세무사당수회제 Tuser 일대 월날 00134 (유가가능과 55,000 번 20100 상품여 등 세무사당수회제 Tuser 일대 월날 00134 (유가가능과 55,000 번 40100 상품여 등 세무사당수회제 Tuser 일대 월날 00134 (유가가능과 55,000				-							-							
함 제 [21건 650.000 65.000 관금대가(함께) 55.000 유인번호 201300064100004220680023 수정비고 가신세인내 비입파용전표 북수가려 공급처 동쪽일보 (Tipl 본 행유의 가신세 양태는 단순성고용입니다. 항확한 가신세 해당이부는 국내성으로 분약하시기 바랍니 보 제공과목 적요 가세체 차변(金급) 대부분(일급) 반 10000 4220068023 사업처 방문/화제 10134 (ควาร24) 55.000 5.00 반 10000 4220068024 20134 (ควาร24) 10134 (ควาร24) 55.000 5.00 별 20100 4250106 세무차량·회계 luser 일대 월날 00134 (ควาร24) 50.00 5.00 발 40100 4250106 전문 월 날 00134 (ควาร24) 55.000 55.000		_																
한 계 [21]건 650.000 65.000 패입비용전표 복수가에 공급적 동욕정보 [Theil Bints 가신세 만나는 단순성과들입니다. 정확한 가신세 태당여부는 국세성으로 분의하시기 바랍니 별 10000 것같애좋금 세우사업 경구 적요. 거래처 가면(좋금) 대변(인급) 번 10000 것같애좋금 세무사업 최계 1user 일대 월날 00134 (주)가가 24 55.000 번 25500 부가세에 수급 세무사업 최계 1user 일대 월날 00134 (주)가가 24 55.000 한 제 우나 감구 11 1user 일대 월날 00134 (주)가가 24 55.000 한 30134 (주)가가 24 55.000 55.00		-									-							
발 제 [21건 650,000 65,000 프급대가(엔게) 55,000 순인번호 201303094100004220680023 수정비고 가신세인내 배입며 중간표 해수가해 공급체 동생절보 [16년 명하당 가신세 안당는 단순경과용인니), 참판 가산세 태당대부는 무세정으로 말했시기 배립니 번 10800 양상매승금 세무사람-회계 108만 일대 월날 00134 (주)자가당사 155,000 번 25500 부가세에수급 세무사람-회계 108만 일대 월날 00134 (주)자가당사 55,000 번 40100 상품액을 세무사람-회계 108만 일대 월날 00134 (주)자가당사 55,000 10134 (주)자가당사 55,000 55,00																		
한 제 [212] 55000 65.000 55.000 관금대가(1합제) 55.000 응인번호 201303054100004226680023 수절비고 가산세인내 패입대용전표 특수가해 공급적 등록절보 [Thel 문 해두의 가산세 안보는 단순설과용입니다. 당한 가산세 해당에부는 국세성으로 분의하시기 바랍니 분 제정과목 적으 거래제 가색 (응급) 대생인 (비용의 가산세 한 보는 단순설과용입니다. 당한 가산세 해당에부는 국세성으로 분의하시기 바랍니 변 10500 정보/아울관 제무사원부·회제 1088만 입내 월날 00134 (용가카일씨 번 25500 부가세에 수급 세무사원·회제 1088만 입내 월날 00134 (용가카일씨 번 30100 상품여 등 세무사원·회제 1088만 입내 월날 00134 (용가카일씨 55.000 부가세에 수급 세무사원·회제 1088만 입내 월날 00134 (용가카일씨 55.000 부가세에 수급 세무사원·회제 1088만 입내 월날 00134 (용가카일씨 55.000 부가세에 수급 세무사원·회제 1088만 입내 월날 00134 (용가카일씨																		
한 계 [21건 650.000 65.000 관금대가(한계) 55.000 승인번호 201300341/0004220680023 수정비교 기산세 만30부는 국세함으로 분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일배송전표 북수가점 공급적 동욕정보 Their 참 가산세 안내는 단순감고들입니다. 장확한 가산세 배당이부는 국세함으로 분의하시기 바랍니다 번 10800 외실배송금 세무사량-회계 Tuper 일대 월날 00134 (주)가가장서 155.000 번 25500 부가세에수금 세무사량-회계 Tuper 일대 월날 00134 (주)가가장서 55.000 환계 55.000 수가세에수금 세무사량-회계 Tuper 일대 월날 00134 (주)가가장서 55.000 환계 55.000 수가세에수금 제무사량-회계 Tuper 일대 월날 00134 (주)가가장서 55.000																		
발 계 [2] 2] 2] 550,000 65,000 관급대 가(10개) 55,000 유인번호 201303094100004220660023 수정비고 가신세인내 비입해용전표 핵수가품 공급적 5특성 또 기대 문 행유적 가신세 인내는 단순성과 문입니, 정확한 가신세 태당에부는 국세성으로 운영하시기 배랍니까 분 계정과목 적요. 가세체 차변(응급) 대본(입급) 변 10000 적 2019 중급 세무사람은 회계 Tuber 일대 월날 00134 (ค) 가가 당사 55,000 변 25500 부가세에 수급 세무사람은 회계 Tuber 일대 월날 00134 (ค) 가가 당사 50,00 발 20100 상품 약 응 세무사람은 회계 Tuber 일대 월날 00134 (ค) 가가 당사 50,00 발 20100 상품 약 응 세무사람은 회계 Tuber 일대 월날 00134 (ค) 가가 당사 50,00																		
발 계 [2] 2] 650.000 65.000 관금대기(합제) 55.000 순인변호 20100004420680023 수정비교 기산세인내 배일파용전용 북수거해 공급적 통육일보 [Thi 본 해누의 가산세 만당는 단순철교통입니다. 정확한 가산세 해당대부는 국세성으로 분약하시기 바랍니 분 제정과목 적요 거래서 지난(金금) 대행인(비누의 가산세 한당) 1년 41 (승급) 대행인(인급) 변 10000 김상정마승금 세무사(당수)체 Tuser 입대 형날 00134 (ควาว 24 55.000 55.00 번 40100 삼중마승금 세무사(당수)체 Tuser 입대 형날 00134 (ควาว 24 55.000 50.00			-					1.0.100		20200		12010000						
관련대가(함께) 55.000 승인번호 20130034100004220680023 수정비고 가신세인내 배입해용전표 백수가배 공료적 등록정보 [Thel 본 해두의 가신세 안내는 단순성과 문입니다. 정확한 가신세 태당여부는 국세성으로 분의하시기 바랍니 분 제정과록 직요 거래처 차면(金금) 대변(입금) 번 10800 의상패승금 세무사당·회계 luser 일대 월날 00134 (하기가 감사 55.000 보 25500 부가세에수금 세무사당·회계 luser 일대 월날 00134 (하기가 감사 55.000 			합계					[2]2		650.0	00	65.000						
비입해용전표 특수가해 금급처 동쪽철보 (Tip 년 행뉴의 가신세 안당는 단순성고용입니다. 참판한 가신세 타당해부는 국세성으로 말의하시기 바랍니 분 분 계정과목 적요 가례처 차변(金급) 대변(입금) 번 10000 외실액 승급 세무사람은 회계 loser 입대 월날 00134 (ค)가가실사 55,000 10124 (ค)가실사 번 40100 상품에 응 세무사람은 회계 loser 입대 월날 00134 (ค)가실사 55,000 5,000 반 40100 상품에 응 세무사람은 회계 loser 입대 월날 00134 (ค)가실사 55,000 5,000	23	3cH2F(8220) [55.00	1 5	2년호 2013	03094	1000042206	80023	수경	비고				1) 3	가스타네 등	14	
분 제정과목 적요 거래치 차빈(金급) 대변(입급) 번 1000 위상마용급 새무사(왕·회계 luser 양대 활납 00134 (ค)가가 24 55.000 번 25500 부가세예수금 세무사왕·회계 luser 양대 활납 00134 (ค)가가 24 55.000 번 4100 상품여용 세무사왕·회계 luser 양대 활납 00134 (ค)가가 24 55.000 발 제 55.000 55.00		매입매	971H	해수거래	1.2	응급처 동복장:	1	Tipl B Mitt	리 가산	4 2H.H E	Béi	물고통입니다. 정	12 C	가산세 #	당여부는 국사	82R	문의하시	171 18121.101.
변 10800 외실에 옮금 새무사랑-회계 luser 일대 월날 00134 (ค)가가 2사 55.000 변 25500 부가세예수금 새무사랑-회계 luser 일대 월날 00134 (ค)가가 2사 55.000 면 40100 상품에 용 세무사랑-회계 luser 일대 월날 00134 (ค)가가 2사 55.000 10134 (ค)가가 2사 55.000	-		계전	계분			210	100 marca 100				Held I			HR(@-2)		CRIMIT	이글)
변 25500 부가내에수금 세우사랑·회계 luser 일대 월날 0034 (ค)가·날씨 5.00 면 40100 상품애출 세우사랑·회계 luser 일대 월날 00134 (ค)가·날씨 50.00 발 계 55.000 55.00	H	1090	0 외상에	(\$ 7		세무사랑극	11/1	user 있다	월남	00134	(\$)20	124			55.0	00		. Set 625-7
변 40100 상품액을 세무사랑-회계 luser 일대 불답 00134 (8-1717-12-4) 50.00 합 계 55.000 55.00	10	2550	0 부가세	에수금		세무사람-1	1 11	user gicit	월납	00134	(中)가	TOTAL .						5,000
12 74 55.000 55.00	변	4010	10 상품에	8		세무사랑·	1 10	user 일대	월답	00134	(44)25	124						58,000
발계 55.000 55.00																		
길게 55,000 55,00							0.12								-			
						1	71								55,0	w		55,000

- 가. <F6 전표처리>
 - 작업 완료한 e세로 데이터를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전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표처리할 경우 e세로 데이터와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중복
 된 전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 전표처리(전송) 된 전표도 중복으로 전표처리(전송)
 가능합니다.
 - 중복된 전표는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으며, 중복된 전표도 전송할 경우 직접 선택 후 전송합니다. 전표 처리된 데이터는 [처리]란에 [0]으로 표시되며, 전표처리한 일자가 [처리일자]란에 반영됩니다.
- 나. <F8 유형일괄변경>
 - 유형을 51.과세 또는 54.불공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정해진 유형으로 변경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유형일괄변경은 매입자료만 가능하며 매출자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Shift+F8 분개일괄변경>

- e세로의 데이터를 불러올 경우 분개는 [외상] 또는 [현금]으로 적용됩니다. 적용된 분개를 [0.분개없음 1.현금 2.외상 3.혼합 4.카드 5.추가]로 수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분개유형으로 수정하여 전표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화물복지)신용카드

ELAT: 99	97 💿		127177-2012	H 01	- 9/	121 -	2012 14 1	2 + 90	31.92	(2)第1	1.48	• 1	21: 0.3	9세 -	
2101	ALRALCI	22.23.7108	M 7Lul	34	u el		5629 78.52		2100104	0.54	34.00 0111	-	+121	-	
10.50	9900 SARA	10.182	1.018	DUDUE	-	10165	신문		포케	9121	06-27	E.	44	지디교지	ï
06-27	99601 주상회사	3,455	345	00102 #	1유여의 5	E 0146	상품		공제	바리	06-27	910			7
06-28	99602 주식회사	26,730	2.673	00103 *	(트립과공	0146	상景		불공체	일반재표	06-28	310			
06-28	99600 주식회사	10,909	1.091	00104 9	동손감구	8 0146	상품		불공제	알반전표	06-28	310			
06-28	99601 주식회사	5,455	545	00105 2	12141	0145	상풍		불공제	일반전표	06-28	915			
06-28	99603 주식회사	40,000	4,000	00106 2	1 41	0146	상품		불공제	일반전표	06-28	카드			
06-28	99600 주식회사	17,455	1,745	00107 5	= 프레	0146	상품		물공제	일반전표	06-28	카드			
06-28	99603 주식회사	10.636	1,064	00108	-성플레이	1.0146	상품		불공제	일반전표	05-28	카드			
06-28	99605 (주) 국민	178,455	17,845	00206 4	1년개발	(0146	상중		불공체	일반전표	06-28	카드			
06-28	99606 (주) 국민	8.636	864	00115	(주) 스E	1 0146	상품		공체	312)	06-28	카드			
05-28	99606 (주) 국민	13.636	1,364	00207	(주) 파리	1 0146	상품		불공제	알반전표	06-28	카드			
06-29	99601 주식회사 :	9,545	955	00109 1	마일물리	0146	상품		불공제	일반전표	06-29	카드			
06-29	99603 주식회사	8,182	818	00110 \$	란다	0146	상품		불공제	일반전표	06-29	카드			
06-29	99604 주식회사	11.818	1,182	00111 3	[날김치찌	0145	상품		불공체	일반전표	06-29	카드			
카드번: 여입이	E: 4539-3471-325 18전표/일반전표	36-1033 공급 거래차 동록(급대가(합계) 정보		11,20	0 8	A}显:		3	3표유制:	매입애출	전표	거래구	분:	
분	계정과목		적요			거래처	부서	현장	PJI	차변()	승 금)	t	내변(입	금)	
면 (253 미지급금				99600	우식회	1 2				1			11,200	
면	비30 루가세데쉽림				00101	반목성!	2.0				1,018				
122 1	1140 3338				00101	248	¥8				10, 182				

- 가. <F6 전표처리>
 - 전표처리할 데이터를 선택하여 '매입매출전표' 및 '일반전표'로 전송합니다.
 - 이미 전표처리한 데이터는 체크에서 제외되지만 직접 선택하여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 중복된 데이터는 대사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나. <F7 가맹점등록>
 - 가맹점별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분개설정에 자동 반영이 가능합니다.
 - 직접설정 또는 전표처리시 현재 데이터 일괄설정 가능합니다.
 - 기존 회사코드의 '국세청사업용(복지)신용카드' 메뉴<F7 가맹점등록>에 기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자동 반영합니다. 본 기능은 연동하여 사용합니다.
- 다. <F8 분개설정>
 - 계정과목 및 적요를 입력하여 분개에 자동 반영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전표일자는 승인일자를 반영하나 2. 전표처리일자를 변경 후 적용 가능합
 니다.
 - 데이터를 선택하여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
 - 본 기능은 해당회사의 <F8 분개설정>과 연동하여 사용합니다.

4) 현금영수증

- 가. 사업용(화물복지)신용카드와 툴바 기능이 동일합니다.
- 나. 현금영수증은 사업용신용카드와 다르게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스크래핑하지 않으
 므로 거래처 자동 생성이 불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 기 등록된 거래처와 거래처명
 이 동일한 경우도 거래처 코드를 자동 반영합니다.



5) 통장거래

21 20	13 H	1 월- 2	13 년 5	5월 계정	과목: 10	300 💽 보통예	킁	· 금융2	1관:	98101	◎ 경남은행					
			1	통장입출권	글내역							분개	내역			
월/알	71	재내용	의퇴인((TAG) 3	L으신금액	말기신금액	거래	* 잔액	구분	코드	계절과목	코드	거래처명	금액	1.1	연송
01/01	(의)	 12 N	(의) 롸	2 N		4		4	대변	0101	현금				4	0
01/02	(읙)	型2N	(의) 퇴	2 N		- 4		4	대빈	0115	미수수익	00101	가가상사		4	X
01/02	(의)	512 N	(의) 퇴	2 N		4		4								X
01/02	(의)	퇴2 N	(의) 퇴	2 N		4		4				-	-		-	X
01/03	(의)	至12 N	(의) 퇴	2 N		6		4				-			-	X
01/03	(4)	型 2 N	(今) 朝	2 N	- 5	1		- 4							-	X
01/03	(=1)	SI2N	(의) 의	2.10		0		4	-						-	Å.
01/04	(=)	SI2 N	(의) 되	2 N		D			-						-	<u>х</u>
01/04	(9)	412 N	(中) 위	2.0	5			4							-	A
01/04	(4)	#1.2 N	(2.11		0		- 7							-+-	÷.
01/04	(01)	41.6.16	(01) #1	2.14	0	E										A .
01/04	(4)		1-17 34	- N	000	1 700										*
		2354			300	1,709										
에금 3	역요							3	5	2						
oi	0															
*1	ulles -						T1 10 M	ul. u ot								
				+144			ALC: C	개내적				rilati				
36	21	7171.52		312	pil to Dit	30		ac		20.75 21.5	2 90		NUMBER	1 2	108	
80103	日期06	금	99101	3420	101/12	87	4	0101	히글	12440	W. allows		NICE AS	c	3.95	-
0.00			001101					0.01	~~			-				
														-		
			(inter				4				8tal					- 1

가.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거래처등록-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F3 환경설정>

- 자동태그분개, 자동거래처등록 및 입력방식을 선택할 경우 사용합니다.

- 다. <Shift+F3 태그등록>
 - 태그분개 할 경우 미리 태그등록을 합니다.
 환경설정에 자동태그분개 체크한 경우 자동으로 태그등록 가능합니다.
- 라. <F11 전송>
 - 작업 완료한 계좌거래 데이터를 일반전표입력 메뉴로 전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할 경우 계좌거래 데이터와 일반전표입력에 입력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중복된
 전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 전표처리(전송) 된 전표도 중복으로 전표처리(전송)
 가능합니다.
 중복된 전표는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으며, 중복된 전표도 전송할 경우 직접 선택 후 전송합니다.





6) 스크래핑 내역조회

	2154	22.75	211	1 225	Pag .	TI APAT	人口別員	0100											
	8 AND	人口別別の	a Lin	2019/0	8/12 10	1:21:086		18. 1	10 X	10430	9141-	2019/03	71.4 1.4·F	6		are of T	201	9/09/19	ē.
	스크레핑	한왕	1770	adding a	A 16. 19		8 C	14.00				LOT UT OC	14 141	~			1.160	E	い 利1回
							08	안						DB	ģ			21	Eł
	구분	스크래핑	회자	el	12	친금?	148	1121	루카드	복지	카드	e4	1豆	현금9	경수중	카드	매출	뵹	2
		48-15		성공	실패	설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매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력
	스케뉼	2013-03-13	1	.1								1							
	스케쥴	2013-03-12	7	1					1			1							
	스케쥴	2013-03-12	6		1.				1				<u>_1</u>						
	스케츌	2013-03-12	.5				1		2						1				
	스케쥴	2013-03-12	4				1		2						1				
	스케쥴	2013-03-12	Э				1		2						1				
	스케쥴	2013-03-12	2				1		2					1	1				
	스케쥴.	2013-03-12	1				1		2						1				
	스케쥴	2013-03-01	2	1								1	1						
0	스케쥴	2013-03-01	1		- T								1						
1	스케쥴	2013-01-01	6		1								1						
2	스케쥴	2013-01-01	5	1															
3	스케쥴	2013-01-01	4						1										
1	스케쥴	2013-01-01	3				1	1	2						- 1				
5	스케중	2013-01-01	2			1	1		5					1	1				
6	스케슐	2013-01-01	1				1	-1	2			-			1				
												-							
												-							

- 가. 전체 결과
 - 일자별스크래핑 내역이 누적되어 조회됩니다.
 - 결과는 회사개수로 표시되며, 더블클릭 시, [전체 결과상세]탭으로 이동하여 결과에 해당하는 회사가 조회됩니다.
- 나. 전체 결과상세
 - 스크래핑 일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조회됩니다.
 - 성공 : 각 메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료 건수가 표시됩니다.
 - 실패 : 0표시에 클릭하면, 하단 [실패사유]에 내용이 표시됩니다.
- 다. 회사별 스트래핑 이력
 - 회사별 스크래핑 이력을 조회하거나, 회사별 실시간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 회사별 스크래핑 이력 조회
 - ' 조회할 기간 및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 ' 성공 : 각 메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료 건수가 표시됩니다.
 - '실패 : 0표시에 클릭하면, 하단 [실패사유]에 내용이 표시됩니다.
 - 실시간 스크래핑
 - [F12조회]를 클릭하여, 회사목록을 불러옵니다. 스크래핑 할 회사를 클릭하고, [F3실시간 스크래핑]을 클릭합니다.



7) 전표미처리현황

회사는 9947 📿	0CT테스트회사	2013 년	121 .	조회기간	2013/01/01-201	3/06/30	
		매인			야중		
메뉴말	스플래핑컨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스크래핑견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01] \hr]
州星	48	48		120	100	20	e세로 비로가기
8금영수증	92		92	19	5	14	현금영수증 바로가기
나업용카드	20		20				사업용카드 바로가기
복지카드	37		37				복지카드 바로가기
카드매술							카드매출 바로가기
					21Eł		
	: 계좌2	시려		074		07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 처리, 미치리	1건수 : 각 메뉴에 중북 전표 처리 및 미	서 전표처리 여러 처리 및 전표처리 처리건수가 상(#를 통해 단순히 비 후 매입매출전: 비할 수 있습니다.	9/4 처리건수와 미처리 표입핵에서 삭제하	· 건수를 집게합니 거나 직접입력한	9/3 [다. 경우	1151/100 0132/1/1
※ 처리, 미처리	1건수 : 각 메뉴에 중북 전표 처리 및 미 조회기간 마치막일지	서 전표처리 여기 처리 및 전표처i 처리건수가 삶(\$71 속한 기수되	#를 통해 단순히 의 후 매일배출전 비할 수 있습니다. 1년치 건수를 집	9/4 처리건수와 미처리 표인핵에서 삭제하기 계합니다.	건수를 집계합니 거나 직접입역한	973) 김우 김우	

◉ 참고

각 메뉴에서 전표처리 여부를 통해 단순히 처리건수와 미처리건수를 집계합니다. 중복 전표처리 및 전표처리 후 매입매출전표입력 / 일반전표입력에서 삭제하거나 직접입력한 경우 처리 및 미처리건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 [메뉴] 바로가기
 - e세로, 현금영수증, 사업용(복지)카드, 카드매출, 계좌거래 메뉴를 바로 실행합니다.
 로그인한 회사와 선택하여 조회한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 메뉴바로가기 실행 시 현재
 로그인한 회사를 유지하거나 조회한 회사로 메인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실행한 메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나. <F3 상세보기>
 - 원하는 메뉴 라인을 클릭한 상태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라인에 대한 미처리
 현황을 월별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조회기간 기준으로 반영되며, 1년치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 상세설명>

	대상기간	년도 및 구분	조회기간
	2013.01.01~2013.01.25	2012년 2기	2012.07.01~2012.12.31
자동반영	2013.07.01~2013.07.25	2013년 1기	2013.01.01~2013.06.30
	2013.01.26~2013.06.30	2013년 1기	2013.01.01~2013.06.30
	2013.07.26~2013.12.31	2013년 2기	2013.07.01~2013.12.31



8) 전표대사현황

토[A]: 9947 😋	007테스트회사	2013 년	1.1기예정 🔹	조회기간:	2013/01/01-2013/	03/31		
45®	대사.e세로	대사,현금영수중	미사,사업용카드	대사_해지카드	대사,카드레율			
		매입			매중			
메뉴명	스크래핑견수	전표건수	미전표건수	스크래핑컨수	전표건수	미전표건수		
네로	62	2	60	26	15	Н		
금영수증	10 - 2222 - 10							
입용카드								
지카드								
드대술								
·전표건수 : 직접입력한 ·미전표건수	각 메뉴에서 전표차 전표를 집계하여 반 : 단순히 스크래필	4리 및 중복전표 영하기 때문에 스 건수 중 전표건4	처리하거나 매입마 크래핑 건수와 상 +를 제외하여 집계	H송전표입력 또는 이할 수 있습니다 I합니다.	일반전표입력 메	뉴어 <i>.</i> 서		
전표건수 : 직접입력한 미전표건수	각 메뉴에서 전표초 전표를 집계하여 반 : 단순히 스크래필	니리 및 중북전표 영하기 때문에 스 건수 중 전표건의	처리하거나 매입며 크래필 건수와 상 -를 체외하여 집거	1출전표입력 또는 이할 수 있습니다 I합니다.	일반전포입액 메	₩olW		

◉ 참고

각 메뉴에서 전표처리 및 중복전표 처리하거나 전표입력 메뉴에서 직접 입력한 전표를 집계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스크래핑 건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 건수
 - 스크래핑 건수 : 조회기간 안에 스크래핑 한 총 건수입니다.
 - 전표건수 : 전표처리(중복전표처리 포함) 및 매입매출전표입력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 뉴에서 직접 입력한 전표를 집계하여 반영합니다.
 - 미전표건수 : 스크래핑 건수 중 전표건수를 제외하여 집계합니다.
- 나. 집계
 - <F3 월별집계> : 원하는 메뉴 라인을 클릭한 상태에서 월별집계를 클릭하면 해당 라 인에 대한 총 건수, 총 금액을 월별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회기간 기준으로 반영되며, 1년치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4 거래처별집계> : 대사_e세로 탭에서만 활성화 되며, 거래처별로 e세로 데이터 및 전표 데이터를 비교하여 반영합니다.
- 라. <중복전표 처리기준>
 - 작성일자, 거래처코드, 금액 기준으로 중복전표를 비교하여 반영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사업용(복지)카드는 거래처코드가 없으면 거래처명으로 비교합니다.
- 마. <상태 상세설명>
 - = : 스크래핑한 데이터와 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한 전표와 동일
 - =2 : 중복처리
 - X : 스크래핑한 데이터 또는 전표입력 메뉴에 처리된 전표가 없는 경우



기타-2 세무사랑 단축키 안내

1. 기본 공통

	0	0		×	0	A	▼ 일반전표입력
9	ESC	F1	F2	F5	F9	F12	
F3 7	금관	님	F4] 복	사	F	6 검색 ┯ F7 카드매출 F8 적요┤
2012	년	12	•	월	2	2012]년 12 월 현금잔액:

- · ESC : 메뉴 종료
- · F1 : 실행된 메뉴의 매뉴얼 보기
- · F2 : 코드도움
- · F5 : 삭제
- · F9 : 인쇄
- · F12 : 조회

2. 시스템 공통

• 검색



• 형광펜 표시



• 엑셀 등 다른 작업 중 세무사랑 메인화면 활성 시

단축키 Ctrl + Shift + Enter	
--------------------------	--



• 메뉴검색



• 데이터 간편백업



· 실행된 메뉴 화면캡쳐

단축키	Ctrl + 마우스 휠 클릭
설명	캡쳐이미지 저장경로 : 설치드라이브\NewGen\Rebirth\Capture

• 입력 포커스 맨 하단으로 이동

|--|

• 엑셀로 데이터 변환

단축키	Ctrl + E
-----	----------



• 최근 실행메뉴 조회 및 실행

단축키	Alt 4	F Q
	2032	퇴직소득자료입력
	2026	일용직사원등록
	1001	일반전표입력
	1034	거래처원장
시키키키머	1009	거래처등록
열행와면	1002	매입매출전표입력
	1060	합계잔액시산표
	200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3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497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왼쪽 상단 메뉴 실행



• 직전년도 실행, 다음연도 실행

실행방법	실행메뉴명 앞 ▼	
실행화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전표
	520, 169, 870 5	73,008,160 1.유 동
	459, 723, 021 5	i12,561,311 <당 좌
	-10, 326, 000	20,060,000 현
	9.455.565	14.783.565 보통



3. 메인화면

• 회사 및 사용자 변경



· 기수 및 작업년도 변경

단축키	F4
실행화면	◇ 기수변경 × 기수 4 ÷ 기 회계기간 2012 년 1 월 1 일 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원천 작업년도 2012 ÷ 부가세작업년도 2012 ÷ 확인(Tab)

4. 회사등록

• 회사코드재생성

단축키	F4	

· 회사명되돌리기

단축키	F6
-----	----

5.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

• 적색계정과목 수정

단축키	Ctrl + F2	(관계코드 활성화)		

• 고정자산 추가등록

단축키 F6 (471~500 코드범위 사용가능)



• 세무사랑 기본계정으로 초기화

단축키	Ctrl + F12
설명	컨버트 후, 계정과목 성격이 달라져 데이터 상이할 때

5. 일반전표입력

· 거래처등록

단축키	거래처코드란에서 00000 또는 +키 입력 후, 거래처명이나 사업자번호 입력
-----	--

• 입력방식 변경

단축키	Ctrl + F2
실행화면	입력방식 × 입력방식 ○ 년월일 ● 년월 ~ 년월 확인(Tab) 취소(Esc)

• 전표라인 삽입

단축키	Ctrl + F9			
	● ● ● ★ 금 勇 = 일반전표입력 실정 ····································	(7777) 수정 🏭 번호수정 🐮 삭제한데이타 1,000,000 대차차액:	(주)뉴캔솔루션 4기 2012년 01월 01일 개인전 (현 전기분전표 (현 전표삽입 (현종)) (현 전기분전표 (현 전표삽입 (현종))	- 2012년 12월 31일 _
실행화면	월 일 번호 가군 계 경과 목록 1 20 00003 차변 0103 보통예금 1 1 20 00003 차변 0217 비품1 국고보조금 1 1 20 00004 차변 0817 세금과공과금 2 1 20 00004 반변 0103 보통예금 1 1 20 00004 반변 0103 보통예금 1 1 20 00004 반변 0103 보통예금 1 1 20 00004 차변 0171 세금과공과금	거 래 쳐 00109 거래처9	적 요 비품구입 거울구입 비품구입 비품구입 거울구입	금 액 ^ 1,000,000 1,000,000 200,000 200,000 300,000
	1 1 1 1 25 00003 대변 0103 보통예금 1 1 25 00004 차변 0998 법인세동 1 1 25 00004 차변 0108 보상매출금	00120 거래처20	비품구입 거울구입 매출E	300,000 1,542,283 2,521,974

• 적요내용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 [복사] Ctrl + C [붙여넣기] Ctrl + V	단축키 [복사] Ctrl	+ C [붙여넣기] Ctrl + V	
-----------------------------------	---------------	---------------------	--

· 전기분 전표 조회

단축키	Ctrl + F8	
실행화면	(1) 가지(수))(전철 주신 이 101/2 11 년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	· 2011년 12월 31일 - 경제 미사정 철전에서 월월241일(11) - (13) 월월241일(11) - (13) 월월241(12)(11) - (13) 월월241(12)(11) 월월241(12)(11) 월월241(12)(11) 월월241(12)(11) 월월241(12)(11) 월월241(12)(11) 월월241(12)(11)(11) 월월241(12)(11)(11)(11)(11)(11)(11)(11)(11)(11



· 자동분개전표 삭제



• 메모삽입

단축키

Shift + F12

• 마우스우측 버튼 기능 및 환경설정

	찾 기 Ctrl+F	환경설정 ×
	이전으로 Ctrl+U 다음으로 Ctrl+D	입력옵션 ⑦계정과목인력시 대차차액 자동계사
	모든 책갈피 이전 책갈피 Ctrl+B 다음 책갈피 Ctrl+N	- 엔터 자동입력시 거래처코드 포함 - 엔터 자동입력시 거래처명 포함안함 - 거래처코드 삭제시 거래처명도 같이 삭제함
	책갈피 설정/해제 Ctrl+A 책갈피 전체 해제 Ctrl+Z	적묘설정1 ⓒ 순차적 입력시 적요사용(기본)
실행화면	적갈피 읽기 Ctrl+O 적갈피 저장 Ctrl+S 적갈피 초기화 Ctrl+I	 순차적 입력시 적요 건너템 적요설정2 적요명 항상 수정(순차입력시 적요명에 커서감) 적묘번호 있으면 적묘명 수정못함
	형광펜 표시/취소 Ctrl+F3 전표번호 재생성	◎적요명 항상 수정(순차입력시 적요명 자동건너뜀) 화면구성
	데 이 타 정렬방식 ▶ 전 표 건 수 조 회 데이타변환(액셀-간편) 데이타변환(액셀-전제)	 ●계정과목→거래처→적요→금액 ●계정과목→거래처→금액→적요 ●거래처→계정과목→적요→금액 ●계정과목→적요→거래처→금액
	형광팬데이타 별도표시 복 사 Ctrl+C 붙여넣기 Ctrl+V	형광펜 데이타 보여주기 [[전표단위로 불러오기
	환경설정	확인(Tab) 취소(Esc)



7. 매입매출전표입력

· 거래처등록

· 입력방식 변경

단축키	Ctrl + F2						
실행화면	TAB 화면설정	×					
	TAB	입력방식		부가세유형	합계옵션		
	1. 전체입력	2.년월~년월	•		5.전체합계	¥	
	2. 전자입력	1.연월일	•		5.전체합계	¥	
	3.매출 첫번째	2.년월~년월	+ 11	1.매출과세 ▼	3.전체합계	¥ 1	
	4.매출 두번째	2.년월~년월	+ 15	7.매출카과 👻	3. 전체합계	¥	
	5.매입 첫번째	2.년월~년월		1.매입과세 👻	3. 전체합계	¥	
	6.매입 두번째	2.년월~년월		7.매입카과 👻	3.전체합계	¥	
	7.가산세	2.년월~년월	+		4.전체합계(대상도 포함)	¥	
	8.의제류	1.연월일	+		4.전체합계(구분없음도 포함)	¥	
	9.종이	1.연월일	•		5.전체합계	¥	
					확인(Tab) 취소(Esc)		

• 예정신고누락분 설정

단축키	Shift + F5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 🛛 🗙
실행화면	선택 : [1]건 []건 : 예정신고누락분 기 체크분 [1]건 : 예정신고누락분 아닌것 []건 : 확정기간데이타(수정못함) []건 : 알마감 데이타(수정못함) 확정신고 개시년월: [년 월 일 예정신고 누락분을 위의 기간에 반영하여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4제(F5) 확인(Tab) 취소(Esc)

· 가산세입력 및 수정

단축키 Shift + F8
단축키 Shift + F8 가산세 입력 및 수정 × 가산세 고 분 : 0:27산세 없음 [1물 0.1%] [2물 0.3%] [3물 1%] [4:물 2%] 1 : 지면전송(다음달 16일 후 전송) 2 : 0건송(고세기간 중료일 다음달 16일 후 전송) 2 : 0건송(고세기간 중료일 다음달 16일 후 전송) 3 : 지연필습(고세기간 중료일 다음달 16일 후 전송) 3 : 지연별급(다음달 10일 후 월급환 전후) 4 : 미별급(고세기간 경과하여 발급 - 2012.1.1.가래분부터적용) 국세청건송일자 : 보 을 일 대 상 금 액 : 200 가 산 세 약 : 1 : 100 · · · · · · · · · · · · · · · · · · ·



• 수정세금계산서 설정



• 전기분 전표 조회

Г



• 마우스우측 버튼 기능 및 환경설정

실행화면	찾 기 Ctrl+F	환경설정 ×			
	이전으로 Ctrl+U 다음으로 Ctrl+D	《화면구성》			
	모든 책갈피 이전 책갈피 Ctrl+B	◎ 움푹(수당,단가) -> 금액 -> 농업저운으로 구성 ◎ 공급처 -> 품목(수량,단가) -> 금액순으로 구성			
	다음 잭갈피 Ctrl+N 책갈피 설정/해제 Ctrl+A	<설정사항>			
	책갈피 전체 해제 Ctrl+Z	□수량, 단가 입력하지 않음			
	책갈피 읽기 Ctrl+O 책갈피 저장 Ctrl+S	 '+'키로 신규사업자번호로 거래처등록시 거래처코드 수정가능하게 참 띄움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화면에 표시 ''금액변경시 현금잔액 구함(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질 수 있음) ''수량, 단가 수정시 공급가액 계산 안함 ''거래처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감추기 ''일반전표(매입매출 하단) 거래처코드 삭제시 거래처명도 같이 삭제함 ''하단분개 : 계정코드 입력후 적요로 이동(미체크시 금액으로 이동) ''분개유형 혼합선택시 바로 추가 입력 할 수 있게 이동 ''거래처선택시 과거데이타 참 띄우기 			
	책갈피 초기화 Ctrl+I				
	Excel로 저장 Ctrl+E				
	형광편표시/취소 Ctrl+F3 전표 번호 재생성 데 이 타 정렬 방식 → 전 표 건 수 조 회 간이과세.면세사업 -> 일반과세 데이타변환 (역셀-간편) 데이타변환 (역셀-전제)				
	환 경 설 정	확인(Tab) 취소(Esc)			



8. 거래처원장

• 잔액탭/내용탭 이동 : Ctrl + 1 , Ctrl + 2

9. 전기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데이터 초기화 : Ctrl + F3 (컨버트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데이터 상이한 경우)

10. 부가세신고서

- 납부서출력 : Shift + F8
- · 신고구분별 조회 및 마감여부 확인 : F2
- 마감/마감해제 키 활성화 : Ctrl + F12

11. 급여자료입력

- 엑셀자료 업로드 : Ctrl + F4
- 조회화면 엑셀저장 : Shift + F4

12. 일용직급여자료입력

• 엑셀자료 업로드 : Ctrl + F4